

발간등록번호  
11-1340400-000069-10

[www.mest.go.kr](http://www.mest.go.kr)

201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2011. 3.

교육과학기술부

## <활용 안내>

- ◆ ‘201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은 교원정책과-211(2011.03.07)로 등록된 교원자격검정 관련 업무 시행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입니다.
- ◆ 모든 대학 및 시·도교육청의 교직업무 담당자는 편람을 숙지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되, 특히 굵은 글씨로 표기된 부분은 민원 문의가 많은 내용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입력·정정·박탈 등의 교원자격 관련 업무나, NEIS 인증서의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 등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helpsys.mest.go.kr ⇒ ‘공지사항’ ⇒ ‘1628번’의 NEIS 사용자 설명서(대학용)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NEIS 콜센터’(☎02-6321-13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교직정원(교육대학, 4년제 대학의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과 전문대학의 교직과정 및 실기교사 표시과목 운영학과) 입력 등 ‘맞춤형업무정보시스템’(http://bizinfo.mest.go.kr/NewBis/main.jsp)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02-2100-618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차 례

○ 교원자격 및 양성 관련 법령

<b>I. 교원의 자격종별과 자격기준</b> .....	1
1. 교원의 자격기준 관련 법률 .....	3
가. 교(원)장 및 교(원)감 .....	3
나. 교사 .....	3
2. 교원의 자격종별 .....	3
3. 교원의 자격기준 .....	4
가. 교원자격기준 관련 법률 .....	4
나. 교장·교감 자격기준 .....	4
다. 교사 자격기준(유치원 외) .....	6
라. 유치원 원장·원감 자격기준 .....	10
마. 유치원 교사 자격기준 .....	10
<b>II.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b> .....	11
1. 교원자격검정 .....	13
가. 교원자격검정의 종별 .....	13
나. 교원자격증 수여권자 .....	13
다. 교원자격기준별 검정기관 .....	13
2. 관련 위원회 운영 .....	17
가. 교원자격검정위원회(교과부) .....	17
나. 교원양성위원회(교원양성기관별) .....	17
3. 대학에서의 업무 처리 .....	18
가. 교원자격 검정업무 담당 부서 .....	18
나. 교원자격 검정업무 처리 요령 .....	18
다. 교원자격 검정업무 처리절차 .....	19
라. 교원자격 검정서류의 편철 .....	19
마. 교원자격 검정서류의 보관 .....	19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 작성 .....	19
사. 기타 행정사항 .....	20
4. 교원자격증의 서식 .....	21

가. 교원자격증의 규격 및 용지	21
나. 권한의 위임 근거 명시	21
5.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22
가.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	22
나. 표시과목의 표기방법	22
다. 부전공 과목 표기방법	23
라. 표시과목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	24
6. 교원자격증 작성요령	28
가. 교원자격증 번호 부여	28
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28
다. 기타 행정사항	28
7.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 및 처리	29
가.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비치 의무	29
나.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서식	29
다.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제출	30
8.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31
가.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사유	31
나.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업무	31
다.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 사실의 보고	32
9. 교원자격증의 박탈	34
10. 영문 교원자격증 발급	35
[서식예시 : 영문 교원자격 증명서]	37
[서식예시 : 시·도교육청용]	38
[서식예시 : 대학(교)용]	39
[서식예시 : 교원자격유효확인서(교육과학기술부용)]	40
<b>III. 교원자격 무시험검정</b>	<b>41</b>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일반 기준	43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원칙	43
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대상	47
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기간	47
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신청	47
마.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요건	48
바. 성적기준 적용 및 산출방법	49
2.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51

가. 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	51
나. 연계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	53
다.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	54
라. 복수·부전공 자격기준의 적용 .....	55
마. 복수·부전공 자격증의 발급 및 명부작성 요령 .....	56
3. 전공과목의 이수 .....	57
가. 적용 대상 .....	57
나. 표시과목별(자격종별) 기본이수과목 .....	57
다. 산업체 현장실습의 이수 .....	59
4. 교직과목의 이수 .....	60
가. 교직과목의 이수학점 .....	60
나. 교과교육영역의 이수 .....	63
다. 교육실습 .....	64
라. 기타 행정사항 .....	66
<b>IV.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b>	<b>67</b>
[관련근거] .....	69
1.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71
2. 전적 대학 이수학점의 인정 범위 .....	72
<b>V.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b>	<b>73</b>
[관련근거] .....	75
1.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	78
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78
나. 평균성적 산출방법 .....	78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7호에 의한 무시험검정 .....	80
가. 7호기준 대상자의 합격기준 .....	80
나. 기타 행정사항 .....	81
3. 교직과정 운영 .....	82
가. 교직과정 신규설치 신청 .....	82
나. 교직과정 승인내역 재승인 신청 .....	84
다. 교직과정 승인내역 변경보고 .....	85
라. 기타 행정사항 .....	86
4.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및 명부 관리 .....	87

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87
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명부 관리	89
<b>VI.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b>	91
[관련근거]	93
1.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96
가. 주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96
나. 부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96
다. 학부에서 취득한 전공 및 교직학점의 인정	97
라. 교직과목 이수	98
마. 자격종별 세부기준	101
바. 선수과목의 이수	104
사. 표시과목의 표기방법	104
2.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무시험검정	106
가. 부전공 무시험검정의 대상	106
나. 현직교사의 범위	106
다. 부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07
3.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운영	108
[관련근거]	108
가.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109
나.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 대상자	109
다.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설치 신청	110
라.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세부 운영 사항	111
마.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성적 처리 방법	113
<b>VII. 특수학교 교사 무시험검정</b>	117
[관련근거]	119
1.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21
가.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121
나.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121
2. 양성과정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22
가.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졸업자	122
나. 교직과정 이수자	125
다. 교육대학원 졸업자	126


3.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	131
가. 복수전공 무시험검정 .....	131
나. 부전공 무시험검정 .....	132
<b>VIII.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b>	<b>135</b>
[관련근거] .....	137
1.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대상 .....	138
2.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기관 .....	138
3.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기준 .....	138
4.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 .....	139
5. 실기교사 표시과목 결정(변경) 신청 및 승인 .....	140
가. 실기교사 표시과목 결정 신청 .....	140
나. 실기교사 표시과목 변경 신청 .....	140
다. 학과명칭 변경 보고 .....	141
라. 기타 행정사항 .....	141
<b>IX. 시험검정 .....</b>	<b>143</b>
1. 시험검정의 대상 .....	145
2. 시험검정의 시행 .....	145
3. 시험검정의 방법 .....	145
4. 시험검정의 내용 .....	145
5. 시험검정의 합격기준 .....	147
6. 시험검정의 응시자격 .....	147
7. 응시 구비서류 .....	147
<b>X. 질의응답 .....</b>	<b>149</b>
1. 자격기준 .....	151
2. 교원자격검정 .....	153
3.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원자격검정 .....	155
4.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의 교원자격검정 .....	157
5. 교원자격증 .....	160

<b>XI. 부 록</b> .....	163
1. 각종 서식 .....	165
2. 교원자격증 기관부호 .....	198
가. 시·도교육청별 교원자격증 기관부호 .....	198
나. 학교별 교원자격증 기관부호 .....	198
3. 관련 법령 모음 .....	207
가. 「초·중등교육법」 (발췌) .....	207
나. 「유아교육법」 (발췌) .....	208
다. 「교원자격검정령」 .....	209
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222
마. 「임시교원양성소규정」 .....	240
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	242
사. 「교(원)장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 .....	245
4. 관련 고시 .....	248
※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15호(2011.03.02) .....	248
※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5호 .....	269
※ 교육부고시 제2000-1호 .....	279
※ 교육부고시 제1997-11호 .....	288
※ 실기교사 표시과목 해당 국가기술 자격종목(예시) .....	298
5. [예시] 연계전공 교육과정 .....	302
<b>[참고자료1] 2009학년도 교원자격검정 관련 주요 변경사항</b> .....	305
<b>[참고자료2] 2009학년도 교원자격검정 관련 주요 공문</b> .....	309

## 교원자격 및 양성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법률)
- 「유아교육법」 (법률)
- 「고등교육법」 (법률)
-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교원자격검정령」 (대통령령)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임시교원양성소 규정」 (대통령령)
-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규칙」 (대통령령)
-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자격종별 세부 이수기준 및 기본이수과목 등」 (고시)
  -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15호(2011.03.02)[구 제2008-119호]
  -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5호(2004.6.9)
  - 교육부고시 제2000-1호(2000.1.28)
  - 교육부고시 제1997-11호(1997.12.9)

# I. 교원의 자격종별과 자격기준



---

1. 교원의 자격기준 관련 법률

---

2. 교원의 자격종별

---

3. 교원의 자격기준

---

# I. 교원의 자격종별과 자격기준

## 1. 교원의 자격기준 관련 법률

### 가. 교(원)장 및 교(원)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 “교장 및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교원자격검정령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교원자격검정령

### 나. 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보건교사(1급·2급)·영양교사(1급·2급) 및 실기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2. 교원의 자격종별

※ 다음 표에 나열된 자격종별은 모두 다른 자격종별임

근거 학교별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유치원	원장, 원감	정교사(1, 2급)	준교사			
초등학교	교장, 교감	정교사(1, 2급)	준교사		사서교사(1, 2급)	
중등학교	교장, 교감	정교사(1, 2급)	준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1, 2급)	
특수학교	교장, 교감	중 등	정교사(1, 2급)	준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1, 2급)
		초 등				
		유치원				

※ 실기교사 ⇒ 준교사(대학원 2급 취득) ⇒ 2급정교사(2년후 2급연수 없이) ⇒ 2급을 받으면 과원으로 운영하다 결원시 정원으로 인정

### 3. 교원의 자격기준

#### 가. 교원자격기준 관련 법률(자격 취득일 기준)

- 1953. 4.18 ~ 1972.12.15 「교육공무원법」 제4조(교사), 제6조(교장·교감)
- 1972.12.16 ~ 1998. 2.28 「교육법」 제79조제1항(교사), 제2항(교장·교감)
- 1998. 3. 1이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교장·교감), 제2항(교사)  
(※ 2005.1.30 이후 취득한 유치원장·원감 및 유치원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

#### 나. 교장·교감 자격기준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8852호, '08.2.29) 제21조 제1항 관련 [별표 1]

##### 1) 교장

자 격 학 교 별	교 장
중 등 학 교	1.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3. 교육대학·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
초 등 학 교	1. 초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3.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
고 등 기 술 학 교	1. 중등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 2. 실기교사자격증을 가지고 9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특 수 학 교	1.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3.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2) 교감

학교별 자격	교 감
중등학교	1. 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3.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4.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자
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3.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자
고등기술 학 교	1.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자 2. 실기교사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재교육을 받은 자
특수학교	1. 특수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비 고

1. 이 표 중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각종학교를, 중등학교는 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들과 동등정도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 연수로 볼 수 있다.
3. 이 표 중 전문대학의 학장에는 종전의 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의 교장과 교감을 포함한다.

**TIP : 특수학교 교사가 일반교감자격연수를 받아 일반교감자격증을 취득한 후 '특수교감 2호'에 의거 특수학교교감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변경'으로 처리함**

**다. 교사 자격기준**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8852호, '08.2.29)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

**1) 중등·초등·특수학교 정교사(1급)\* \*현직교원만 취득 가능(기간제 불가)**

자 학 교 별	정 교 사(1급)
중 등 학 교	1.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3.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4.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초 등 학 교	1.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 3.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특 수 학 교	1.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TIP : 특수(1급) 4호의 경우 2급을 받지 않아도 시·도교육청에 바로 1급 신청 가능**

2) 중등·초등·특수학교 정교사(2급)

학교별	자격	정 교 사(2급)
중등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범대학 졸업자</li> <li>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li> <li>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li> <li>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자</li> <li>5. 대학·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자</li> <li>6.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li> <li>7. 초등학교의 준교사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li> <li>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li> </ol>
초등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대학 졸업자* *교원대 초등교육과 포함</li> <li>2.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자** **이화여대 초등교육과</li> <li>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초등교사만 선발</li> <li>4.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li> <li>5.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li> <li>6.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li> <li>7.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li> </ol>
특수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자</li> <li>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li> <li>2의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li> <li>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li> <li>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li> <li>5.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li> <li>6.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li> </ol>

**Tip : 관련학과는 전공과목 38학점 이상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학과를 말함**

**3) 준교사/실기교사/전문상담교사(1·2급)**

학교별	자격	준 교 사* *82학년부터 폐지	실 기 교 사	전문상담교사					
				(1급)	(2급)				
중등학교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의 공업·수산·해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자 2.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3. 중등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학사학위 과정에 한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	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란에서 같다) 졸업자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이수한 자,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자 (개정, 2007.12.14)	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개정 , 2007.8.3) 2. 전문상담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신설 2004.1.20)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자 ( 신설 2004.1.20)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신설2005.12.7, 개정'07.8.3)				
						초등학교	1.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2.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3.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졸업자	2.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예능, 체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이수한 자 3.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의 졸업자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4) 사서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학교별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중등학교	1.사서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1.대학·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1.보건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양호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1.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자	1.영양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1.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면허증을 가진 자(신설 2003.7.25)
초등학교	2.사서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경력이 있는 자	2.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사서교사양성강습을 받은 자		2.전문대학의 간호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자		2.영양사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신설 2003.7.25)
특수학교		3.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자*				

비 고

1. 이 표 중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각종학교를, 중등학교는 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또는 이들과 동등정도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원·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3. 이 표 중 전문대학에는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4. 실기교사란 중 실업계 실기교사는 국가기술자격종목이 있는 과목은 해당종목의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TIP 1 : 교육대학원에서 보건교사 1급 취득 불가**

**TIP 2 : 공주대만 사서교사에 부전공이 불고 교육대학원 입학 가능함**

**라. 유치원 원장·원감 자격기준**

※ 「유아교육법」(법률 제8676호, '07.12.14)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 1]

종 별	자 격 기준
원 장	1.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원 감	1.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비고 : 1. 원장·원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장·교감, 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 연수로 볼 수 있다.

**마. 유치원 교사 자격기준**

※ 「유아교육법」(법률 제8676호, '07.12.14)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 2]

급 별	자 격 기준
정교사 (1급)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정교사 (2급)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산업대학 포함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준교사	1.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비고 : 1. 원장·원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장·교감, 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 연수로 볼 수 있다.  
2. 이 표 중 전문대학에는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TIP : 유아교육과 졸업자 중 성적미달로 정교사(2급)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제21조 2항 실기교사 1호에 의거 실기교사(보육) 자격증 부여**

##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

1. 교원자격검정
2. 관련 위원회 운영
3. 대학에서의 업무 처리
4. 교원자격증의 서식
5.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6. 교원자격증 작성요령
7.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 및 처리
8.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9. 교원자격증의 박탈
10. 영문 교원자격증 발급

## II.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 1. 교원자격검정

#### 가. 교원자격검정의 종별

- 무시험검정
- 시험검정
- ☞ 시험검정은 교원의 수급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80년 이후 미 실시)

#### 나. 교원자격증 수여권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및 위탁받아 '시·도교육감' 및 '대학의 장'이 수여
- ☞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교장자격 인정기준 대상자)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기타 검정대상자)

#### 다. 교원자격기준별 검정기관

##### ♣ 검정대상별 검정 실시기관의 원칙

- 자격기준 중 **교육경력**이 포함되는 무시험검정은 **시·도교육감**이 실시
- 자격기준 중 **학력**만 필요로 하는 무시험검정은 **출신대학의 장**이 실시

자격종별	검 정 대 상	검정기관	자격기준
중등학교 정교사 (2급)	1. 사범대학 졸업자	대학의 장	21-2-1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대학의 장	21-2-2
	3.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교육 감	21-2-3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자	대학의 장	21-2-4
	5. 대학·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과목과 학점을 취득한 자	대학의 장	21-2-5
	6.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교육 감	21-2-6
	7.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대학의 장	21-2-7
	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교육 감	21-2-8

자격종별	검정대상	검정기관	자격기준
중등학교 준교사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의 공업, 수산, 해양 및 농공계학과를 졸업한 자	<b>(’82년 입학자부터 정지됨)</b> 교육감 교육감	21-2-1
	2.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21-2-2
	3. 중등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학사학위 과정에 한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		21-2-3
초등학교 정교사 (2급)	1. 교육대학 졸업자	대학의 장 대학의 장 대학의 장	21-2-1
	2.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자		21-2-2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21-2-3
	4.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교육감	21-2-4
	5.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교육감	21-2-5
	6.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자격으로 하는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교육감	21-2-6
	7.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	교육감	21-2-7
초등학교 준교사	1. 초등학교 준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교육감	21-2-1
	2.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자격으로 하는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교육감	21-2-2
특수학교 정교사 (2급)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자	대학의 장 대학의 장	21-2-1
	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21-2-2
	2의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대학의 장	21-2-2의2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교육감	21-2-3

자격종별	검정대상	검정기관	자격기준
특수학교 정교사 (2급)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대학의 장	21-2-4
	5.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교육감	21-2-5
	6.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대학의 장	21-2-6
특수학교 준교사	1.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교육감	21-2-1
	2.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교육감	21-2-2
유치원 정교사 (2급)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대학의 장	22-2-1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이상의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대학의 장	22-2-2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대학의 장	22-2-3
	4.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교육감	22-2-4
유치원 준교사	1.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교육감	22-2-1
사서교사 (2급)	1. 대학·산업대학졸업자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과를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대학의 장	21-2-1
	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사서교사 양성강습을 받은 자	교육감	21-2-2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대학의 장	21-2-3
	4.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자	대학의 장	21-2-4

자격종별	검정대상	검정기관	자격기준
보건교사 (2급)	1. 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	대학의 장	21-2-1
	2. 전문대학의 간호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	대학의 장	21-2-2
전문상담교사 (2급)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대학의 장	21-2-1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대학의 장	21-2-2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대학의 장	21-2-3
영양교사 (2급)	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면허증을 가진 자	대학의 장	21-2-1
	2. 영양사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대학의 장	21-2-2
실기교사	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난에서 같다) 졸업자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이수한 자,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대학의 장	21-2-1
	2.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예능·체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이수한 자	교육감 대학의 장	21-2-1 21-2-2
	3.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의 졸업자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교육감	21-2-3
	4. 실업과, 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교육감	21-2-4

## 2. 관련 위원회 운영

### 가. 교원자격검정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 「교원자격검정령」 제12조~제17조
- 목적 : 교원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 설치
- 조직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상 11인 이내
- 직능
  -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 자격증의 표시과목의 결정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 나. 교원양성위원회(양성기관별)

-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2
- 목적 :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육감(이하 “교원양성기관의 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교원양성위원회’를 설치
- 대상 :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16개 시·도교육청 및 모든 대학(2년제 대학 포함)
- 규모 : 시·도교육청 및 대학 전체에 1개의 위원회 설치
- 시기 : 2008년 2월 29일까지 설치 완료 후 2008년 3월 1일부터 운영
- 조직 : 위원장을 포함한 9명 내외의 위원(위원 중 최소한 1명 이상의 외부인사 포함)
  - 위원장 : 부교육감(시·도교육청), 교무담당 부서의 장(대학)\* \*교무처장, 부총장
  - 위 원 : 다음 각 호의 자 중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임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직능 : 교육과정의 개발·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실시**,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결정 등
  - ☞ 반드시 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회에 회부 가능
- 기타 : 그 밖에 교원양성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함

### 3. 대학에서의 업무 처리

#### 가. 교원자격 검정업무 담당 부서

- 교원자격검정 업무를 위임받은 대학의 장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학 전체의 교직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운영(교원양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는 부서)하여야 하며, 교직업무 부서의 장은 대학 내 관련 기관간의 업무분담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함
  - 자격검정 업무 총괄 : 교무처(과) 또는 사범대학 등 대학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
    -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 최종 확정
    - 교원자격증 발급 및 발급대장 보관·관리(전산자료, NEIS관리)
    - 자격검정업무 조정·통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대학 내 관련 기관
    -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 자격검정
    - 교원자격증 발급 의뢰
    - 기타 자격검정 업무에 관한 사항
- 교원 자격검정 업무 담당자 및 관계관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함
  - 담당자는 학사행정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보임하고, 지나친 단기간의 순환 보직을 지양하며, 업무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것
  - 담당자는 자격증 발급대장의 DB자료를 당해 학교의 전산실에 보존

#### 나. 교원자격 검정업무 처리 요령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로부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졸업사정과 함께 확정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함

- 교원자격 자격검정 시기
  - 졸업예정자 : 졸업 10일 전까지 검정 완료(단, 교사자격증 발급일은 졸업일 이후)
  - 졸업자 : 대학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한 시기(연 2~4회)
- 학교에서 작성하는 서류
  - 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 서식) ⇒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 작성 요령 참조
  - ②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총괄표(서식 8)
  - ③ 교원자격증 발급대장(「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④ 학적부 사본 1부

☞ 학적부 사본의 교직과목 아래에는 적색, 기본이수과목 아래에는 청색, 전공과목 아래에는 흑색으로 밑줄이나 V표기를 하여 식별하기 용이하게 하여야 함

### 다. 교원자격 검정업무 처리절차

심사 시에는 심사내역표(서식 9)를 작성하여 상단에 첨부하되, 자격종별에 따른 심사 사항을 확인

○ 구비서류 검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서류 및 기타 구비서류 확인

○ 자격요건 확인

졸업 여부, 학위등록 여부, 각종 자격증 취득여부,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 학점평균 성적\* 등 \* 우리 대학에서 받은 것만 해당함

○ 교직과정 설치 등 확인

사범계학과, 교직과정, 실과계학과 지정, 교육대학원, 전문대 졸업 등 확인

○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포함) 및 교직과목의 학점 취득 여부 확인

○ 복수전공, 부전공 학위 및 소정의 학점 취득 여부 확인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등재 여부 확인

○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의 표기방법 확인

○ 인적사항 확인\*\* 등 \*\*개명시 명부를 정정하고 정정발급

### 라. 교원자격 검정서류의 편철

○ 결재공문, 심사내역표, 무시험검정 신청 총괄표, 무시험검정 신청자 및 무시험검정자 명단 순으로 철함

○ 검정원서, 학적부 사본은 별도로 철하여야 함

### 마. 교원자격 검정서류의 보관

○ 접수한 교원자격검정 원서 및 기타 첨부서류는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관

·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 30년(실체는 영구보존)

· 교원자격증 발급심사서류 : 3년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 3년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 30년

· 복수 및 부전공 이수예정자 명부 : 30년

###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 작성

○ 별지 제7호의3 서식에 의하여 인쇄 또는 프린트(가로 또는 세로 서식)하여 사용하며, 문자는 한글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 동일 학교 내에 교육대학원, 사범대학, 교육과, 교직과정 및 실과계 준교사, 특수학 교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유치원교사, 실기교사 양성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이 가능하도록 작성하되,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일련번호로 부여하고 자격종별란에는 자격종별을 구분하여 기재**
- 명부는 각 학과별로 별지에 작성하고 매장마다 날인하여야 하며, 각 학과별 명부 마지막 명단 다음에는 반드시 '이하빈칸'이라 표기하고, 신청인원수를 기재
- 명부 맨 앞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총괄표(서식 8) 및 심사내역표(서식 9)를 첨부·비치하여야 함
- 평균성적란은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별도로 산출하여 각각 기재하되, 각 대학별로 등급 또는 평점기준이 다르므로 100점을 만점으로 한 취득점수를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 교부번호는 작성 시 기재하지 말고 자격검정 및 발급이 확정된 후 최종적으로 발급대장의 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합격여부 난에 기재)

#### 사. 기타 행정사항

- 교사자격증 발급일은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일 또는 졸업일 이후로, 졸업자의 경우는 실제 발급일로 하되,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경우 간호사 및 영양사 면허 시험 합격일 이후로 함(3월중순 합격 발표 → 신체검사통과→면허증사본 제출)**
- 교직과정 이수자에 대한 무시험검정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교직과목을 이수하여 무시험검정 신청을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이수성적 및 학점관리를 철저히 하고, 검정서류의 작성에 정확을 기하여 착오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이미 대학을 졸업한 자의 무시험검정 요령】

- ♣ 이미 대학을 졸업한 자가 교사자격 무시험검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무시험검정을 실시함(**82년부터 교직과정 30% 운영, 이전 제한 없음**)
  - ☞ **무시험검정의 순서** : 졸업 당시 해당학과에서 교사자격증을 부여하였는지의 여부 확인 ⇨ 당시 해당학과에서 누구에게 교사자격증을 부여하였는지 확인 ⇨ 당시 교사자격증 무시험검정 기준과 합격기준(관련 법령 및 고시 등) 충족 여부 확인 ⇨ 충족 시 현재 대학의 장이 교사자격증을 부여 ⇨ NEIS에 입력
  - ☞ **발급 시 유의사항**
    - 교사자격증 미발급 사유를 확인하여 민원인이 발급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것(당시 미신청 또는 신청누락의 경우에 한하여 발급함을 원칙으로 함)
    - 당시 문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교사자격증을 발급한 경우라도 **현재 대학의 장이 신규로 교사자격증을 발급함**
    - 발급 시에는 당시의 관련 법령과 표시과목을 그대로 적용하고, 발급권자와 발급일은 현재를 기준으로 부여하며, **발급번호도 현재의 일련번호를 부여함**

#### 4. 교원자격증의 서식(「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가. 교원자격증의 규격 및 용지(「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규격 : 210mm×297mm(A4 용지)
- 용지 : 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 나. 권한의 위임 근거 명시

☞ 2008.3.1 이후 발급되는 모든 자격증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로 발급

※ 발급기관장 명의의 상단에 다음과 같이 인쇄

##### ○ 국·공립대학(교)

교육과 학 기 술 부 장 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권한의 위임을 받아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권한의 위임을 받아(유치원)

※ 국군간호사관학교 : 제22조 제2항 제5호

##### ○ 사립대학(교)

교육과 학 기 술 부 장 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권한의 위탁을 받아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권한의 위탁을 받아(유치원)

##### ○ 시·도 교육청

교육과 학 기 술 부 장 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호에 의한 권한의 위임을 받아

※ ○ → 교(원)장, 교(원)감은 '4', 교사는 '5'호, 유치원교사 '6'호 규정 적용

##### ○ 시·도 교육청 : 교장 자격기준 2호의 경우

교육과 학 기 술 부 장 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 2에 의한 권한의 위임을 받아

## 5.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 가.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 \*가르칠수 있는 교과영역(국어, 문법, 화법)

- 1) 중등학교·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관련 [별표 1]
- 2) 실기교사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관련 [별표 2]

구 분	표 시 과 목
(1) 무시험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산업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 포함) 및 고등기술학교 전공과 졸업자</li> <li>○ 교육대학원(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li> <li>○ 임시교원양성기관 수료자</li> <li>○ 보수교육 이수자</li> <li>○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표시과목 또는 전공한 학과와 관련되는 담당과목</li> <li>○ 위와 같음</li> <li>○ 양성기관에서 이수한 과목</li> <li>○ 보수교육에서 이수한 과목</li> <li>○ 담당과목</li> </ul>
(2) 시험검정	○ 시험검정에 합격한 과목

### 나. 표시과목의 표기방법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함

자격종별	표 시 방 법	비 고
유치원 교사	유치원 정교사(2급)	(표시과목 없음)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정교사(2급)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초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중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2급) 역사 부전공 한문	※부전공이 없으면 주전공만 표시
중등학교 준교사	중등학교 준교사 역사 부전공 한문	
사서교사	사서교사(2급)	※2004년부터 1·2급 구분
보건교사	보건교사(2급)	(표시과목 없음)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2004년부터 학교급 폐지
영양교사	영양교사(1급), 영양교사(2급)	
실기교사	실기교사(미용)	자격종별:실기교사, 표시과목:미용
특수학교교사	실기교사(재활복지)	※중전에 표시하던 장애영역은 표시하지 아니함(「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 2000.1.28) ※'직업교육', '이료', '재활복지'는 특수학교(중등)의 표시과목임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재활복지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다. 부전공 과목 표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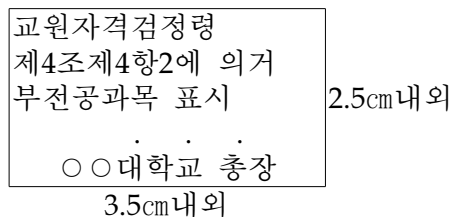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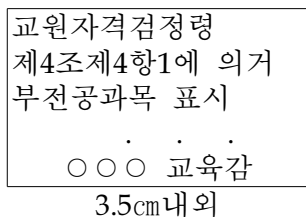
**1) 사범대학(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 포함) 졸업자**

- 주전공 자격증에 부전공 해당 과목을 표시(영 제4조 제4항)하고, 자격증의 하단에 부전공 자격기준을 명시함
- **중등학교 정교사와 특수학교 정교사(중등)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허용됨**
  - (예)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부전공 한문
  -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부전공 유치원 정교사(2급)
  - (×) 보건교사(2급)  
부전공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 교원자격증의 하단부에 부전공 자격 취득기준을 명시(개정된 서식 참조)
  - 사범대학 학생이 사범대학(또는 사범계학과)에서 부전공 이수 : 21-2-1
  - 사범대학 학생이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부전공 이수 : 21-2-5
  - 교직과정 이수자가 사범대학 또는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부전공 이수 : 21-2-5
- ※ 특수학교(중등)의 경우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격기준을 적용함

☞ 2008학년도 대학 입학자(2010학년도 편입학자 포함)부터 학부에서 부전공을 통한 교사자격 취득 제도를 폐지하며, 2006~2007학년도 입학자의 경우도 부전공 자격취득과정의 운영을 지양함. 단, 현직교원의 부전공 자격연수 및 교육대학원에서의 석사학위 취득을 통한 부전공 자격 취득 제도는 계속 유지함(공문서 참조 : 교원양성연수과-111, 2007.3.26)

**2) 교원자격증 소지자(대학에서 교원자격증을 처음 발급받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 부전공과목 자격표시자는 전공과목 밑에 부전공과목을 표시한 후
  - 공란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찍고 발급기관장 직인 날인(교원자격증 구 양식)
  - 교사자격증의 하단부 부전공 자격기준란에 관련 자격기준 명시(신 양식)
- 중등학교 현직교사의 부전공 과목표시에 있어서는 준교사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에는 준교사 자격증에, 2급과 1급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2급 자격증에 표시함(교양 81835-167, 1995.3.2)
- ※ 단, 1급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에는 1급 자격증에 표시하나, 부전공 표시과목 뒤에 2급에 해당함을 명시하여야 함



라. 표시과목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

1) 최근 표시과목 변경 내역

- **1994년 표시과목 변경**(「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 제655호, 1994.9.26)
  - 부칙 제3조 :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은 다음의 표의 구분에 따라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1. 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

종 전	변 경	종 전	변 경
과학(지학)	과학(지구과학)	작 물	농 업
국민윤리	윤 리	농산제조	식품가공
외국어(독어)	외국어(독일어)	식품공업	식품가공
외국어(불어)	외국어(프랑스어)	수산가공	식품가공
외국어(일어)	외국어(일본어)	염 색	섬 유
환경설비	환경공업	방 직	섬 유
중 식	양 식		

2.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

종 전	변 경	종 전	변 경
전산기기	전자계산기	어 로	어 업
수산증식	수산양식	수산가공	식품가공
계측제어	제어계측	장 식	디 자 인

- **2000년 표시과목 변경**(「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 제761호, 2000.1.28)
  - 부칙 제3조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중 이 규칙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종 전	변 경	종 전	변 경
과학(물리)	공통과학, 물리	외국어(독일어)	독일어
과학(화학)	공통과학, 화학	외국어(프랑스어)	프랑스어
과학(생물)	공통과학, 생물	외국어(중국어)	중국어
과학(지구과학)	공통과학, 지구과학	외국어(스페인어)	스페인어
사회(일반사회)	공통사회, 일반사회	외국어(일본어)	일본어
사회(역사)	공통사회, 역사	외국어(러시아어)	러시아어
사회(지리)	공통사회, 지리	외국어(아랍어)	아랍어
윤리	도덕·윤리	전자계산	정보·컴퓨터
외국어(영어)	영어	상업	상업정보

- 부칙 제4조제2항 : 종전의 규정에 의해 발급된 표시과목의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보되, 이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 통합 표시과목 >

종 전 표 시 과 목	변 경 표 시 과 목
농업, 원예, 임업, 조경 축산, 잠업 농업토목, 농업기계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공업,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공업, 화공, 섬유 자원, 환경공업 공업, 건축, 토목 수산업, 어업, 양식 항해, 기관 디자인, 공예	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수산·해양 항해·기관 디자인·공예

- 부칙 제5조 :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사 중 통합 표시과목의 관련교과에 대한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 부칙 제5조 : 종전 규정의 표시과목 중 폐지된 '전자기계'와 '공업'은 개정규정의 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재교부할 경우(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다음 표에 따라 각각 택일하도록 한다.

종전표시과목	통폐합된 표시과목	비 고
전자기계	전기·전자·통신	본인이 택일하도록 함
	기계·금속	
공 업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건설	

○ 2007년 표시과목 변경(「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 제916호, 2007.10.26)

- 부칙 제2조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표시과목이 '치료교육'인 자격증의 소지자는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종 전 표 시 과 목	변 경 표 시 과 목
치료교육	재활복지

## 2) 신규교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 시·도교육감이 변경된 표시과목의 교원을 임용하기 위한 공개전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종전의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함

## 3) 교원자격증 재발급 시의 표시과목

-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경과조치는 종전 표시과목을 변경된 표시과목으로 간주하는 규정임. 교원자격증을 단순히 재발급할 경우에는 당초에 발급한 표시과목으로 발급해야 함(발급자명만 변경하고 나머지는 예전대로 기록)

## 4) 표시과목 변경을 위한 연수

- 정교사(1급) 자격연수
  - 2000년도부터 실시하는 정교사(1급) 자격연수부터는 개정된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5호(2004.6.9)의 기본이수과목 중 5과목 이상을 전공교과에 포함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새로운 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발급  
[예시] 정교사(2급) 과학(물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물리' 과목 연수를 받도록 하고 표시과목 '물리'로 발급함
- 종전의 규정에 의해 발급된 표시과목의 자격증(2급)을 소지한 자가 변경된 표시과목의 정교사(1급) 자격연수를 이수한 경우 직무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경된 표시과목의 자격증 부여
- 통합 표시과목 연수 : 실업계 표시과목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통합 표시과목 연수 이수자에 한하여 변경된 표시과목 자격증 재교부
- 특수학교 '치료교육'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현직 교원은 소정의 연수를 이수한 경우에 변경된 표시과목('재활복지') 자격증을 재교부하며, 현직 교원이 아닌 해당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종전의 표시과목으로 재교부함

## 5) 재교부 요령

- 시·도교육청에서는 변경된 표시과목이 기재된 자격증을 재교부하는 경우 구 자격증을 회수하고
- 자격증 용지의 발급기관장 아래 여백에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찍고(또는 인쇄) 직인을 날인

표시과목 변경(통합표시과목 부여)으로 인하여 재교부함.

( 기 관 장 )

- 표시과목 변경(통합 표시과목 부여)에 따른 교사자격증 재교부 발급대장은 시·도 교육청별로 작성·비치

6) 개정된 표시과목의 담당교과

**[예시자료 1]**

표시과목	담 당 교 과
공통사회	국민공통기본 교과 '사회'(7~10학년) 담당 자격증
일반사회	선택과목 교과 '일반사회'(11, 12학년) 담당 자격증
공통과학	국민공통기본 교과 '과학'(7~10)학년 담당 자격증
물리	선택과목 교과 '물리'(11, 12학년) 담당 자격증
기술·가정	국민공통기본 교과 '기술·가정'(7~10학년) 담당 자격증
가정	선택과목 교과 '가정'(11, 12학년) 담당 자격증
기술	선택과목 교과 '기술'(11, 12학년) 담당 자격증

**[예시자료 2]**

주전공 표시과목	부전공 표시과목	담당교과
기술	-	선택과목 '기술' 교과(11, 12학년) 담당
가정	-	선택과목 '가정' 교과(11, 12학년) 담당
기술	가정	'기술·가정' 교과 담당 선택과목 '기술', '가정' 교과(11, 12학년) 담당
가정	기술	'기술·가정' 교과 담당 선택과목 '기술', '가정' 교과(11, 12학년) 담당
기술·가정	-	'기술·가정' 교과 담당 선택과목 '기술', '가정' 교과(11, 12학년) 담당
여타 표시과목	기술·가정	'기술·가정' 교과 담당 선택과목 '기술', '가정' 교과(11, 12학년) 담당
여타 표시과목	기술	선택과목 '기술' 교과(11, 12학년) 담당
여타 표시과목	가정	선택과목 '가정' 교과(11, 12학년) 담당

## 6. 교원자격증 작성요령

### 가. 교원자격증 번호 부여

- 교원자격증 번호는 교원자격증 발급대장의 번호와 일치되게 기재하여야 함
- 교원자격증 번호 앞에 기관 부호를 기재함  
⇒ X. 부록 ‘교원자격증 기관부호’ 작성 방법 참조
- 번호 숫자에 무의미한 0 또는 한글을 쓰지 않아야 함  
(예시) : 강원대 제 13호(○), 강원대 제 0013호(×)
- ※ 대학의 교명이 변경된 경우 ‘기관부호’를 대학에서 결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관부호 정정 요청을 하고, ‘NEIS 총괄센터’(☎02-6321-1300)에 통보하여 NEIS 시스템에서 변경을 받아야 함

### 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성명은 한글로, 주민등록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함

### 다. 기타 행정사항

- 졸업예정자의 교원자격증 발급일은 졸업일로 하며, 졸업 후 검정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급일로 기재함  
※ 단,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자격증 발급일은 각각 간호사 및 영양사 면허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 함
- 법정 해당 자격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유아교육법」 제22조의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 해당 호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함  
⇒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 검정기관의 직인 날인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자격증의 자격종별, 인적사항 등의 기재내용은 전산 처리할 수 있음
- 자격증 용지는 규격을 준수하여 인쇄해야 함
- 자격증 서식의 중앙에 위치한 교육과학기술부 엠블렘은 종전의 교육인적자원부 엠블렘이 아닌 현행 교육과학기술부의 엠블렘을 사용하되, 법정 서식은 아니므로 색상(컬러 또는 흑백)은 대학에서 정함
- 자격증 용지에 추가되는 장식은 대학에서 자유롭게 정하되, 대학의 상징(마크, 엠블렘 등)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엠블렘을 대체할 수는 없음

## 7.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 및 처리

### 가.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비치 의무

- 교육감과 대학의 장은 교원자격증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자격증 발급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함
- 교원자격증 발급대장의 관리 요령
  - 영구 보존하여도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한 표지 사용
  - 자격종별(교장, 교감, 원장, 원감,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정교사, 사서·보건·전문상담·영양교사, 실기교사)로 작성하되 발급 연도별로 통합 관리

### 나.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서식

#### 1) 작성 서식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규격 : 210mm×297mm
- 용지 : 보존용지(1종) 70g/m<sup>2</sup>

#### 2) 작성 시 유의사항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유아교육법」 제22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교원자격종별로 연속적인 일련번호를 부여

#### 【교원자격증 발급번호 부여 시 유의사항】

##### ♣ [예시]

- ☞ A대학의 2008년 2월 졸업자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 취득자가 30명, 보건교사(2급) 자격증 취득자가 30명,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취득자가 30명이고, 2007년 8월까지 자격증 발급번호가 A대학-1000호까지 부여되었을 경우
-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 취득자는 A대학-1001호부터 A대학-1030호까지, ‘보건교사(2급)’ 자격증 취득자는 A대학-1031호부터 A대학-1060호까지,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취득자는 A대학-1061호부터 A대학-1090호까지 부여함

- 매 장마다 쪽수를 기재
- 발급대장을 전산 처리할 수 있으며, 대장용지는 A4로 대체
- 자격기준(‘조’, ‘항’, ‘호’)의 기재요령
  - ‘조’ : ‘21’ 또는 ‘22’를 기재(‘21’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2’는 「유아교육법」 제22조를 뜻함) ※ 실기교사(보육) : ‘21’
  - ‘항’ : [별표 1] 해당자의 경우는 ‘1’로, [별표 2] 해당자의 경우는 ‘2’로 표기
  - ‘호’ : 교원자격종별로 [별표 1] 및 [별표 2]에 표기된 해당 호수를 기재

## 다.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제출

###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제출 관련 유의사항】

♣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의 교육부 제출 규정 폐지 : 별도 제출 요구 시에만 제출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878호, 2006.4.12)의 개정예 따라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를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NEIS에 입력하며, 별도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함

○ 제출서류 : 별도 제출 요구 시에 한함

#### [대학]

- ① 교원자격증 발급자 총괄표 1부(서식 8)
  - ② 교원자격증 과목별 발급 내역 1부(서식 8-1)
  - ③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1부(「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 ④ 교원자격증 발급자 인적사항 변동조서 1부(서식 8-2)
  - ⑤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자 명부 1부(서식 13)
- ※ ④의 서식은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의 인적사항이 변동되었을 경우에 한하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는 각 대학에서 보관함
- ※ ⑤의 서식은 현직교사 부전공 표시과목을 부여한 교육대학원에 한함

#### [시·도 교육청]

- ①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1부 (서식 8-3)
  - ②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자 명부 1부 (서식 13)
- ※ ②의 서식은 현직교사 부전공 표시과목을 부여한 경우에 한함
- 행정사항
- 추천검정(자격인정)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부관이 설정된 교장, 원장 자격 취득자는 자격취득 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입력하고 부관이 삭제된 후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수정·입력한 후 반드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부관 삭제 여부를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 관련 법령의 개정예 따라 상급자격 취득자 발급 현황을 발급 후 20일 이내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입력하여야 하되,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는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만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 함

## 8.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 가.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사유

- 1) 재교부 :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 2) 정 정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 나.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업무

- 1) 재교부 및 정정 업무 담당 기관 : 시·도 교육감 또는 자격증 발급 대학의 장  
 ☞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자격증 분실에 따른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정정 요령에 따라 처리
  - 신청서
    - 재교부 신청 :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기재사항 정정 신청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재교부 요령
    - 자격증 발급번호, 자격종별, 표시과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기준 등 **최초 발급 당시의 기재사항대로 발급**
    - 교사자격증 재교부 발급대장은 재발급 기관별로 작성 비치
    - 자격증용지의 발급기관장 아래 여백에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찍고 직인을 날인

분실로 인하여 재교부함.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 재교부 업무 처리(영 제11조)
  - 수수료 : 1부당 500원(사립은 안받아도 되나 국·공립은 받아야함)
  - 발급기한 : 접수일을 포함하여 2일 이내에 교부
  - ※ 1996.6.10부터는 민원우편으로 재교부 신청이 가능함
  -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수수료 면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별표 6] 개정, 2004.9.3)
- 정정 방법 :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로 신청을 받아 내부결재로 심사 후 정정

○ 정정 요령

- 자격증 원본의 정정 부분 좌측 여백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찍어 직인을 날인

○○자 정정함.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 정정 후 자격증을 재교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찍어 직인을 날인

정정으로 인하여 재교부함.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 발급대장에는 '2차 정정' 담당자 도장 또는 서명

※ 기재사항 정정으로 인한 재교부 시 재교부 수수료는 면제 가능

- 발급대장 원부의 해당자 우측 여백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찍고 담당자가 날인

○○○○과- (  년  월  일)  
○○를 정정함                  인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대장은 해당 기관별로 작성 비치

**다.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 사실의 보고**

- 1)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동 내용(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 번호, 표시과목, 최초발급일, 정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및 최초 발급기관에 기재사항 정정 사실을 보고**해야 함(관련자료 대학 보관)
- 2) 교원자격증 최초 발급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할 것
- 3) 발급대장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 **NEIS의 기재사항을 정정한 후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보고'**를 할 것

※ **NEIS 정정 방법**

- 대 학 : NEIS 접속 → 교원자격 → 학교 → **신청서 확인(정정)** → 교원자격(전공)관리/교원자격(부전공)관리
- 교육청 : NEIS 접속 → 교원자격 → 시도교육청 → 자격증관리 → 자격증전공수정관리/자격증부전공수정관리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보고' 양식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기관	자격종별	발급번호	최초발급 년 월 일	정정 전	정정 후	정정사유

**【교원자격증 재교부 관련 유의사항】**

- ♣ 교원자격증 재교부는 최초 발급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직 교원은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속 시·도교육청에서 재교부할 수 있음
- ♣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기 이전에 문교부(또는 교육부)에서 교원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인하여 대학에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가 없더라도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대상자 명부' 등 관련 서류를 참고로 NEIS에서 확인하여 대학에서 발급 가능(※국립 사범대학은 1981년, 사립 사범대학은 1983년, 교직과정은 1988년 8월 부터 대학에서 발급하였음)
- ♣ 출신대학에 발급 관련 서류가 없어 재교부 등이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시·도교육청이 재교부 및 정정 업무를 담당함
- ♣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시에는 반드시 자격증 발급대장 및 NEIS에서 자격증 박탈 여부를 확인 후 재교부 등을 실시하여야 함
- ♣ 기재사항 정정보고 시에는 NEIS에서 정정을 완료한 후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정내역을 별도의 붙임자료가 아닌 공문의 본문에 포함하여 문서를 작성할 것
- ♣ 재교부 시 최초 발급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교원자격증 서식의 기관명은 최초 발급 당시의 기관명을 기재한 후(직인은 날인하지 않음), 하단에 고무인을 찍어 현재 발급 기관장 명의로 재발급임을 명시하고 현재 발급기관의 직인을 날인하되, 기타 모든 기재사항(관련법령, 표시과목 등)은 이전의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재교부할 것

## 9. 교원자격증의 박탈

### 가. 박탈 대상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교원자격검정령」 제6조, 1997.12.5)

☞ (사례) 교육실습을 실제로 하지 않고 교육실습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논문 표절로 인하여 대학원의 졸업이 취소된 경우, 무시협검정 합격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가 고의로 합격사정을 한 경우 등

- 종전의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임용된 자로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제150조 제1항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1991.1.1 이후 임용된 자는 해당 없음)

### 나. 박탈권자 : 시·도 교육감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0호(2010.2.18)

### 다. 자격증 박탈처분의 통지

- 자격증 박탈권자가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라. 자격검정의 결격 사유

- 「교원자격검정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가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음
- 행정사항
  - 교원자격증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교원자격증을 박탈하였을 경우 박탈권자는 발급대장에 박탈사항을 기재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박탈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 교원자격증의 박탈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현직교원 중 대학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의 박탈 사유가 발생 시, 출신 대학의 장은 현직교원의 소속 시·도교육감에게 교원자격증의 박탈을 요청하여야 함

#### 【대학에서 발급한 교사자격증의 취소 요령】

- ♣ 대학의 장은 당해 대학에서 이미 교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무시협검정 합격요건 미비, 입력오류, 행정착오 등의 사유로 교사자격증 발급 취소요인이 발생 시에는 본인에게 통보한 후 교사자격증을 취소하고, 자격증 발급대장을 정정하며, NEIS에서 삭제한 후 그 결과를 시·도교육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 10. 영문 교원자격증 발급

### 가. 발급기관 : 시·도교육감, 대학의 장

※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제22조 제2항 2~3호, 제45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

### 나. 발급대상

- 당해 시·도에서 발급했거나 교원자격증 발급대장에 수록된 자 : 시·도교육감
- 당해 대학에서 발급한 자로서 발급대장에 기재된 자 : 대학의 장

### 다. 신청서 접수 및 발급기한

- 영문교원자격증명서 교부원을 비치하고 신청자로 하여금 해당사항을 기록 제출 받음
- 수 수 료 : 1부 당 200원
- 발급기한 : 접수일을 포함하여 2일 이내에 교부
- ※ **‘교원자격증 유효확인서’**(영문 서식 p.40 참조)는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외국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써 민원인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직접 신청 하도록 안내할 것
- ☞ **‘교원자격증 유효확인서’** 는 영문교사자격증과는 다르며, 외국의 기관에서 교과부로 직접 요청하여야 함(민원인이 중개자 역할 가능함)

### 라. 영문자격증 서식 및 기재요령

- 용지 : A4
- 내용기록사항
  - ① 교원자격증 발급번호 : ‘본 제12450호’의 경우 → 12450
  - ② 증명서 발급 연월일 : ‘2002. 6. 19’의 경우 → June 19, 2002
  - ③ 성명 : ‘윤지희’의 경우 → Yoon, Ji Hee
  - ④ 생년월일 : ‘1975. 6. 20’의 경우 → June 20, 1975
  - ⑤ 자격종별 영문표기
    - 교장 : Principal
    - 교감 : Vice Principal
    - 중등학교 정교사(1급) : Secondary School Teacher(Grade I )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Secondary School Teacher(Grade II)
    - 초등학교 정교사(1급) : Elementary School Teacher(Grade I )
    - 초등학교 정교사(2급) : Elementary School Teacher(Grade II)
    - 유치원 정교사(1급) : Kindergarten Teacher(Grade I )

유치원 정교사(2급) : Kindergarten Teacher(Grade II)  
특수학교 정교사(1급) : Special School Teacher(Grade I)  
특수학교 정교사(2급) : Special School Teacher(Grade II)  
전문상담교사(1급) : School Counselor(Grade I)  
전문상담교사(2급) : School Counselor(Grade II)  
사서교사(1급) : School Librarian Teacher(Grade I)  
사서교사(2급) : School Librarian Teacher(Grade II)  
보건교사(1급) : School Health Teacher(Grade I)  
보건교사(2급) : School Health Teacher(Grade II)  
영양교사(1급) : School Nutrition Teacher(Grade I)  
영양교사(2급) : School Nutrition Teacher(Grade II)  
실기교사 : Training Teacher  
준교사 : Assistant Teacher

⑥ 표시과목

[예] 중등학교 정교사(2급) 철학  
부전공 영어

→ The Secondary School Teacher(Grade II) of Philosophy & English(minor)

[예]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철학  
부전공 영어

→ The Special School(Secondary) Teacher(Grade II) of Philosophy & English(minor)

☞ 표시과목별 영문표기는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2009.9.23)에 의한 표기를 기준으로 함(pp.254~269)

⑦ 당초 교원자격증 발급일자 : '1992년 2월 9일'의 경우 → February 9, 1992

⑧ 발급자 성명 : 교원자격증 발급 결재(전결)권자 영문 서명

⑨ 영문자격증 발급기관 : 현재 발급하는 시·도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

[서식예시 : 영문 교원자격 증명서]

영문 교원자격 증명서 교부원

주 소 :

성명(국문) :

(영문) :

생년월일 :

자격증의 표시

가. 자격증 종별 :

나. 표시 과 목 :

다. 자격증 번호 :

라. 발급 일자 :

사 용 처 :

위와 같이 영문 교원자격증명서 부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입 인(증)지
-----------------

위원인 : (인)

연락처 :

(전 화)

귀하

담 당	사무관	과 장	년결 월 일재

[서식예시 : 시·도교육청용]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REPUBLIC OF KOREA  
Teacher's Certificate

Serial No. of Certificate : \_\_\_\_\_ ①      Date of Issuance : ②

This is to certify th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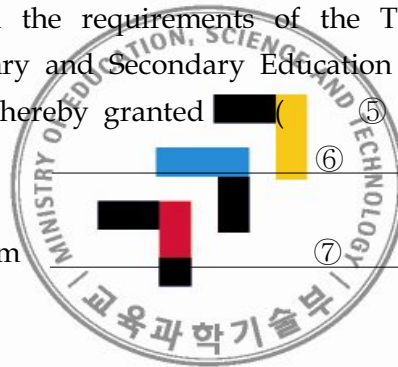
\_\_\_\_\_ ③

born on the \_\_\_\_\_ ④

having fulfilled all the requirements of the Teacher Certification Regulations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s hereby granted \_\_\_\_\_ ( ⑤ ) of

valid from \_\_\_\_\_ ⑦



With the delegation of authority  
from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_\_\_\_\_ ⑧

Head, Secondary Education Division  
\_\_\_\_\_ ⑨      Office of Education

It has not been revoked, suspended, or sanctioned for misconduct since it was issued on (자격증 취득일자) and is not pending disciplinary or adverse action.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00 (Metropolitan/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issues this certificate with a copy of this certificate duly having the same force as the original.

\* 서울교육청 : Seoul Metropolitan, 기타 : 00 Provincial

[서식예시 : 대학(교)용]

MINISTRY OF EDUCATION , SCIENCE & TECHNOLOGY  
REPUBLIC OF KOREA  
Teacher's Certificate

Serial No. of Certificate : \_\_\_\_\_ ①                      Date of Issuance : ②

This is to certify that

\_\_\_\_\_ ③

born on the \_\_\_\_\_ ④

having fulfilled all the requirements of the Teacher Certification Regulations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s hereby granted the ( \_\_\_\_\_ ⑤ ) of

valid from \_\_\_\_\_ ⑥

with the delegation of authority  
from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_\_\_\_\_ ⑧

Academic Dean

\_\_\_\_\_ ⑨                      National University

It has not been revoked, suspended, or sanctioned for misconduct since it was issued on (자격증 취득일자) and is not pending disciplinary or adverse action.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대학명) University issues this certificate with a copy of this certificate duly having the same force as the original.

[서식예시 : 교원자격 유효확인서(교육과학기술부용)]

Name : 신청자명(#주민등록번호)

Certificate/File Number:(외국 현지 기관에서 부여한 번호)

November 24, 2009

To Whom It May Concern:

(신청자명) holds a lifetime teacher certificate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we assure the following information:

Type of license: CERTIFICATE OF TEACHING

Status of license: Secondary School Teachers Certificate[Grade II of (표시과목)]

Registration date: (자격증 취득일자)

Registration number: (자격증 발급번호)

THE CREDENTIAL IS IN GOOD STANDING.

It has not been revoked, suspended, or sanctioned for misconduct since it was issued on (자격증 취득일자) and is not pending disciplinary or adverse action.

A copy of this certificate shall have the same force as the original and all of the information provided on this letter is true.

Sincerely,

(확인자명)

Director of Teacher Education and Development Divisio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 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일반 기준
2.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3. 전공과목의 이수
4. 교직과목의 이수

## 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Certification without Additional Testing)

###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일반 기준

####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원칙

- 교원자격검정 중 시험검정은 교원의 수급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 무시험검정의 검정기관
  - 자격기준 중 교육경력이 포함되는 무시험검정은 시·도교육감이 실시함
  - 자격기준 중 학력만 필요로 하는 무시험검정은 출신대학의 장이 실시함

♣ 자격기준 중 학력만 필요로 하는 무시험검정 대상자 중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시점에 문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검정하였다더라도, 무시험검정의 권한이 대학의 장에게 위임(탁)된 이후에 무시험검정 원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신대학의 장이 실시함

☞(예시1) 1978년에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은 자가 2008년 2월에 대학의 장에게 무시험검정을 신청한 경우 출신대학의 장(현재 대학의 장)이 무시험검정을 실시함

☞(예시2) 위의 (예시1)에서 무시험검정 신청일 현재 출신대학의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통폐합된 경우 현재 대학의 장이 검정을 실시함

- 교(원)장, 교(원)감,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정교사(1급),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1급),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제6호, 초등학교 정교사(2급) 제4호, 특수학교 정교사(2급) 제4호 및 제6호, 중등학교 준교사 제3호, 특수학교 준교사 제2호에 대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학교에 근무하는 **현직 교원(기간제 교원은 전문상담교사1급만 해당)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며, 기간제 교사는 재교육(자격연수)을 통한 1급(정)교사 무시험검정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자격연수를 이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관련근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 타 법령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준하는 학교(기관)에 근무 중인 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소년원학교 근무 교원 등)도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자격연수를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의 졸업 학력으로 무시험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교(원)장 자격기준 1호 및 교(원)감 자격기준 1호(자격연수 이수자)에 대한 무시험검정은 현재 재직 중인 학교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부여함(특수학교 교사 → 특수학교 교감, 특수학교 교감 → 특수학교 교장, 전문직 → 전직 직전의 학교급)
- 교(원)장 자격기준 중 중등학교 제2호, 초등학교 제2호, 특수학교 제3호, 유치원 제2호(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및 중등학교 제3호에 대한 검정은 반드시 임용예정자

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며, 동 기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관련 [별표]에 규정되어 있음

☞ 관련근거 : 「교(원)장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00호) 참고

♣ **교(원)장자격 인정기준에 의한 무시험검정 절차(사립학교의 경우)**

-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인정기준 해당자를 학교(원)장으로 임용 결정(임용 예정학교, 임용예정일 및 임용기간 등을 명시) →
- ②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학교 소재 시·도교육감에게 교(원)장자격 인정 검정원서 제출(제출은 임용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 ③ 시·도교육감은 교(원)장자격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 ④ 시·도교육감은 무시험검정 합격자에 대하여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부관을 설정하여 교(원)장자격증을 부여하고, NEIS의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에 등록 →
- ⑤ 임용예정일에 교(원)장자격증 취득자를 임용 후 시·도교육감에게 임용 완료 보고 →
- ⑥ 부관의 이행 완료 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시·도교육감에게 부관의 삭제를 요청 →
- ⑦ 시·도교육감은 부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부관을 삭제하고, NEIS 상의 부관을 삭제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 **부관의 설정 및 이행과 관련한 유의사항**

- ▶ 교(원)장 자격인정 기준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자격인정 신청 시의 임용 예정학교가 아닌 타 학교(또는 동일한 재단 소속 학교)에 임용되거나 중도에 전보되는 경우 수여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임
- ▶ 계속근무조건 기간 중 학교(유치원)가 폐교(원)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에 상관없이 수여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임
- ▶ 계속근무조건 기간 중 학교(유치원)가 휴교(원)되는 경우 그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여조건을 1년간 연장할 수 있음
- ▶ 계속근무조건 기간 중 학교(유치원)가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학교(유치원)명이 동일하고, 소속 시·도교육청이 동일한 경우에만 수여조건을 이행하는 것이며, 학교(유치원)명이 다르거나 소속 시·도교육청이 다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도 수여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임
- ▶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 이수를 수여조건으로 부관의 경우 교(원)장자격연수 시기가 맞지 않거나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최초 설정한 부관 종료일에 추가로 1년을 연장할 수 있음(제8조제1항제3호)
- ▶ 자격인정에 의한 교(원)장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연수를 이수하였으나, 기타 수여조건 미이행으로 자격증이 취소된 자가 다음 해에 재차 자격인정에 의한 교(원)장자격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연수를 면제함
- ▶ 사립학교 교장직무대리는 1년만 인정하고 초과시 임금 지원 중단 등 조치 필요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와 「유아교육법」 제22조 관련 [별표 1]의 '교원의 자격기준'에 따른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관련 [별표]의 '교장(원장) 자격 인정기준' 중 '교육행정경력의 범위'에 **사립학교 행정실에 근무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음**
  -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2004.4.26) 참고
- 교장자격 자격기준 중 중등학교 제4호, 초등학교 제3호, 고등기술학교 제1호에 대한 검정은 해당학교의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실시함
- 교감자격 자격기준 중 중등학교 제3호 및 제4호, 초등학교 제3호, 고등기술학교 제1호에 대한 검정은 해당 학교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실시함
- 특수학교 교장 자격기준 제2호 및 특수학교 교감 자격기준 제2호에 대한 검정은 교원수급 상황에 따라 특수학교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실시함
- 교장 자격기준 중 중등학교 제3호, 교감 자격기준 중 제3호, 정교사(1급) 자격기준 중 중등학교 제4호,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중등학교 제8호에 대한 검정은 교육대학·전문대학·기능대학의 현직 전임교원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실시함
- 교(원)장 과 교(원)감 및 모든 1급 (정)교사 자격기준 중의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의한 '교육경력의 범위'를 적용하되,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동일한 표시과목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며,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중 제1호에 대한 검정 시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표시과목으로 발령을 받아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에 무시협검정을 실시함
 

- ☞ (예) 중등학교 정교사(2급) 사회(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반사회' 교과로 발령을 받은 자가 교육대학원의 '공통사회전공'을 졸업한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1급) 공통사회' 무시협검정을 신청할 수 없음
-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중 제2호,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중 제1호,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중 제3호,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중 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검정 시의 교육경력에는 **교육대학원의 재학기간을 제외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교육경력만을 합산하여 인정**하고, 휴학기간이나 논문 작성기간(수료 후 졸업까지의 기간)은 교육대학원의 재학기간으로 간주하며, 반드시 관련 전공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됨
  - ☞ 관련 전공 : 유치원은 유아교육전공, 초등학교는 초등교과교육 관련 전공, 중등학교는 현재 임용된 표시과목 관련 전공, 특수학교는 현재 임용된 학교급에 해당하는 특수교육전공을 의미함
-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2의2**에 의하여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 취득은 자격연수를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의 특수교육전공에서 추가로 석사학위를 받아야만 가능함**
-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중 제4호에 대한 검정 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의 범위에는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포함) 또는 현재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교육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경력을 합산하여 포함함

☞ 2007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는 특수학교 정교사(1급) 4호에 의한 무시협검정 시 1년의 교육경력에는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포함)에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 3월 18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일반학교에 근무한 경력'도 인정함. 이에 따라 특수학교 정교사(1급) 4호기준에 의한 무시협검정 요건을 갖추었으나, 2007년도 지침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무시협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검정을 실시함

-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및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8호의 무시협검정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08.11.18)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
  - 교육대학·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의 부교수로 3년 이상(1급의 경우) 또는 전임강사로 2년 이상(2급의 경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비현직 교원 포함)
  - 소지한 최종학위 분야와 강의한 과목 및 취득하고자 하는 표시과목이 일치하거나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높아야 함(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심의)
  - 위에서 '강의한 과목'이란 1급의 경우 총 3년 이상, 2급의 경우 총 2년 이상 강의한 경우에 한함(비연속인 경력인 경우 합산 가능)
- ☞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협검정원서, 경력증명서, 강의증명서, 최종학위사본
- ※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 제4호

☞ 200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제4호 및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제8호의 무시협검정은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현직교원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 11월 18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비현직 교원도 포함함(교직발전기획과-5538, 2008.11.25)

- 영양교사(2급)와 보건교사(2급) 자격검정 시 졸업 후에 취득한 영양사 또는 간호사 면허증도 인정이 되나,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2호에 의한 검정은 반드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영양사 면허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므로 교육대학원 입학 시 영양사 면허증 취득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3호에 해당하는 현직 실기교사가 준교사 자격검정을 신청하였으나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표시과목으로 검정을 실시하며, '관련분야의 학위'에 관한 인정 범위는 소지한 실기교사 자격증과 취득하고자 하는 준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의 학문 영역이 유사한 경우에 인정함
  - ☞ (예) 실기교사(속기, 부기, 상업계산, 타자) 자격증 소지자가 '경영학과' 등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자격검정을 신청한 경우 → 준교사(상업정보) 자격증 부여 가능
-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3호의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대학원'의 범위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중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 및 동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만 포함되며, '방송통신대학'이나 '학점은행제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시험'을 통한 학사학위 및 타 법령에 의하여 4년제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학사학위 등은 포함되지 않음

- 현재 임용된 직위(실기교사, 준교사, 정교사)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 외에 직위가 다른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재직 중 개별적으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음
  - ☞ (예) ‘특수학교 실기교사(재활복지)’와 ‘특수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수학교 실기교사로 임용된 자를 전직을 통해 특수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중등학교 교감 자격증과 중등학교 정교사(1급 및 2급)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경우 중등학교 교감 자격증을 인정할 수 없음. 또한 특수학교 실기교사가 재직 중 개별적으로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음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제6호, 초등학교 정교사(2급) 제4호, 특수학교 정교사(2급) 제5호 및 유치원 정교사(2급) 제4호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증 취득일을 기준으로 승급하여야 함**

#### 나. 교원자격 무시시험검정의 대상(「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의한 교장, 교감, 원장, 원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 2]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정 중 「교원자격검정령」 제24조에 규정한 시험검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는 자

#### 다. 교원자격 무시시험검정의 기간

- 검정시기
  - 졸업예정자 : 졸업 10일 전까지
  - 졸업자 : 수시(학칙이나 지침 등으로 연 2~4회 검정 시기 명시 가능)
-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와 「유아교육법」 제22조 관련 [별표 1] 및 [별표 2]의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검정을 실시함

#### 라. 교원자격 무시시험검정의 신청(「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 1) 대학의 장이 검정하는 경우

- 신청대상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학위취득이 확정된 자 포함)
- 신청방법 : 대상자가 소속 대학의 장에게 교원자격 무시시험검정원서를 제출
- 제출서류
  - ① 교원자격 무시시험검정원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4호 서식)
  - ② 간호사면허증 사본 또는 합격증 사본(원본 대조필, 보건교사 신청자에 한함)
  - ③ 영양사면허증 사본 또는 합격증 사본(원본 대조필, 영양교사 신청자에 한함)

- ④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합격증(실기교사 무시험검정 신청자에 한함)
- ⑤ 교원자격증 사본(원본 대조필, 해당자에 한함)

2) 교육감이 검정하는 경우[상급 자격증 취득 및 교(원)장 자격인정의 경우 제외]

- 신청대상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3호, 6호, 8호 대상자/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4호, 5호, 6호 대상자/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3호, 5호 대상자/실기교사 자격기준 3호 대상자
- 신청방법 : 대상자가 교육감에게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를 제출
- 제출서류
  - 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4호 서식)
  - ②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③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④ 교원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마.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요건

1) 주전공 자격 취득의 경우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까지**
  -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포함)
    - ☞ 단, 특수학교는 전공과목 72학점 : 특수교육(공통) 42학점 + 표시과목 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30학점(☞ p.119 VII. 특수학교 교사 무시험검정 기준 참조)
  - 교직과목 20학점 이상(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의 경우 16학점 이상)
    - ☞ 특수학교의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4학점은 표시과목에 대한 과목임
  - 간호사 면허증, 영양사 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4주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 ☞ 특수학교는 전공과목 80학점 : 특수교육(공통) 42학점 + 표시과목 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38학점 이상(표시과목에 대한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4학점, 교직소양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간호사 면허증, 영양사 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4주
  -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 위의 기준은 사범대학 졸업자, 교직과정 이수자, 임시교원양성소 수료자에게 모두 적용하고,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며,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이수자는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함

## 2) 부전공 자격 취득의 경우

- **대학 졸업자 :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만 부전공 자격 취득 가능**
  -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4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 ※ 일정기간 미복학시 통보후 종료처리(근거 서류 구비)
- **교육대학원 졸업자 : 중등 및 특수(중등)학교 현직교원에 한함**
  -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 전공과목 24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4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전공과목 30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 이상 포함)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부전공 연수 이수자(현직 교사)**
  - ※ 2008학년도 부전공 자격연수까지
    -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 포함)
  - ※ 2009학년도 부전공 자격연수부터
    - 전공과목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3)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의 경우 : 성적 기준 없음

- **'08학년도 입학자('08학번을 부여받는 편입학자 포함)까지**
  -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교육학개론(2학점), 실기교육방법론(2학점)
  - 국가기술자격증(해당 표시과목에 한함)
- **'09학년도 입학자('09학번을 부여받는 편입학자 포함)부터**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6학점 이상, 2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4학점 이상(교육학개론 2학점, 실기교육방법론 2학점)
  - 국가기술자격증(해당 표시과목에 한함)

## 바. 성적기준 적용 및 산출방법

### 1) 적용대상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는 교직과정 이수자만 적용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모든 교사자격증 취득예정자(실기교사 제외) 대상

### 2) 산출방법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의 산출방법 : V.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참고**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의 산출방법**
  - 성적기준은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대학 또는 교육대학원의 최종성적표에 기재된

- 졸업성적을 적용하되, 이수구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수과목을 대상으로 함. 다만, **편입학 이전의 전적 대학 성적이나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 성적은 포함하지 않음**
- 졸업전체 평균성적이 성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전공뿐만 아니라 복수전공(연계전공 포함)이나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도 취득할 수 없음

[대학에서 무시험검정 시 유의사항]

♣ 무시험검정 합격 요건의 충족

- ☞ 무시험검정 합격을 위한 요건은 반드시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에 정규과정을 통하여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며, **졸업 후 시간제 등록이나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과목 및 학점은 인정 불가함(졸업전 타대학 교류는 인정)**
  - \* 단, 간호사 및 영양사 면허증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은 졸업 후에 취득한 것도 인정되므로 대학이 정한 무시험검정 신청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면 됨.

♣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자격 무시험검정

- ☞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자격검정일은 ‘간호사 면허시험’ 또는 ‘영양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에 실시하여야 함(단, 3월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임용시험에서는 2월 졸업예정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자격 무시험검정 시 제출하여야 하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 면허증 사본’ 또는 ‘합격증 사본’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이 발행한 ‘국가시험합격 사실증명 사본’ 또는 ‘인터넷 합격자 공고 출력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최종 합격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면허증 발급과 동시에 면허증 사본을 제출받아야 함

♣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의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 ☞ 전적대학 또는 제적 이전에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인정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졸업학점으로 인정되는 과목 전체에 한하여 전적대학의 성적표를 무시험검정 서류에 첨부한 후 가능하며,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자 중에서 편입학을 통하여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함. 이 경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편입대학에서 인정하는 과목 일람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성적표에 구분이 가능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재의 전공과 일치하는 전적대학의 전공과목(성적표의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시된 과목)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함.** 단, 기본이수과목의 경우 이수구분이 전공이 아닌 경우라도 인정이 가능하나, 전공 전체학점('08학년도 입학자까지 42학점, '09학년도 입학자부터 50학점)의 범위에는 포함할 수 없음

## 2.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시험검정

### 【복수(연계)전공 및 부전공 무시시험검정 시 유의사항】

#### ♣ 복수(연계) 전공 및 부전공 자격 무시시험검정의 합격 요건

첫째, 반드시 주전공 학위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학위를 취득하여야 복수(연계) 전공 및 부전공 자격 취득 가능

둘째, 부전공 이수자가 복수전공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부전공 표시과목만 부여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복수전공 및 부전공 자격 무시시험검정에 합격

☞ 보건의료계열에 해당하는 모든 학과에서는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할 수 없음

※ 간호학과 학생은 식품영양학과에서 복수전공이 가능하나 반대 상황은 불가

#### ♣ 신설된 사범계학과 또는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의 복수전공

☞ 신설된 학과(사범계학과 또는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신입학한 학생이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 의하여 졸업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타 학과의 학생이 해당 학과에서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 가. 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시험검정

- **검정대상** : 사범대학 졸업자(대학의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 포함)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과 또는 전공분야를 복수로 전공한 자
- **복수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교육대학원에서는 복수전공 자체가 불가하며, 학부에서 복수전공을 한 자가 교육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한 전공에 대한 교사자격만 부여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편입학하여 중등학교 교사 자격기준 제7호에 의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는 복수전공 불가(**사범대, 사범계학과 편입은 가능**)
  - 편입대학의 전공과 다른 분야를 졸업하고 사범계학과나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편입한 경우, 전적대학에서 졸업한 복수전공에 대한 교사자격증 부여 불가
- **복수전공 설치 및 운영 대상학과 또는 전공분야**
  -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은 사범대학의 학과나 일반대학의 교육과, 또는 일반대학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서만 가능
  - ‘초등교육과’에서의 복수전공은 「초·중등교육법」의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2호에 따라 사범대학 재학생만 가능
  - ☞ 교육부고시 제1999-5호(1999.4.14)인 “복수자격수여 또는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학과 또는 전공분야 지정에 관한 규정”은 폐지함
- **검정기준**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
  - 전공과목 42학점 (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이상
    - ※ 단, 1999학년도 입학자까지 기본이수과목은 9학점(교육부고시 제1997-11호, 1997.12.9)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졸업자 포함
  -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 이상

※ 단, 복수전공 분야가 비교과교사(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에 해당하는 경우 교과 교육영역은 이수하지 않으며,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교육실습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교육실습만 2학점 이수 : 2008년 2월 졸업자까지 적용

☞ 2008년 3월 이후 졸업예정자부터는 자격종별이 다른 학과(전공)에서 복수전공을 하더라도 교육실습은 주전공으로 한번만 실시함

-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검정기준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 전공과목 50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2008년 8월 졸업자부터는 자격종별이 다른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하더라도 교육실습은 주전공에 해당하는 자격종별로 한번만 실시함

-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인원제한 : 복수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의 입학정원 기준**

- 사범계학과 : 입학정원의 100% 이내

- 한국교원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 입학정원의 40% 이내(2008학년도 입학자)

※ 연차별로 10%씩 감축하여 2009학년도 입학자는 입학정원의 30%, 2010학년도 입학정원의 20%, 2011년도 입학정원 10%이내 운영  
(공문서 참조 : 교원양성연수과-721, 2007.9.17)

- 교직과정 설치학과 : 입학정원의 20% 이내(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

☞ 적용 연도 : 2006학년도 입학자(2008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적용(단,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입학 당시 학칙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운영)

**【복수자격 부여 관련 유의사항】**

♣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한 학과에서 2개 이상의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운영이 불가하며, 하나의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을 운영하여야 함(특수교육과는 제외)

▶ 1학과가 2이상의 자격증 표시과목의 관련학과로 되어 있더라도 복수전공(또는 연계전공)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하나의 학과에서 2개의 교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없음**

☞ (예)교육학과는 '교육학', '상담' 및 '도덕·윤리'의 관련학과이나 연계전공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1인에게 2개 이상의 자격증을 동시에 수여할 수 없음

☞ (예)가정학과 내에 '가정'과 '조리' 교직과정을 2007년까지 동시에 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자가 동일학과 내에서는 복수전공 불가

▶ '특수교육과'로 승인된 학과가 학과 내에 특수학교(초등·중등·유치원)의 교육과정을 각각 별도의 트랙으로 운영하는 복수 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복수전공 이수 인원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타과에서 복수전공 100% 가능)

♣ 고시된 동일계열 내 복수전공의 경우 전공과목 15학점까지 중복인정 가능(고시3조5항)

♣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명부'를 작성한 후 명부에 등재된 자에 한해서만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실시(서식4-2 참조)

**나. 연계전공(교직 복수전공과정) 이수자의 무시협검정**

- 연계전공의 설치 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여 교육과정 및 전임 교원을 제공하는 연계전공을 개설할 수 있음
- 연계전공 대상 표시과목 : 공통과학, 공통사회, 도덕·윤리, 기술·가정

**▶연계전공 설치 가능 학과◀**

표시과목	관련 학과(전공)	표시과목	관련 학과(전공)
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기술·가정	기술, 가정
공통사회	일반사회, 역사, 지리	도덕·윤리	교육학, 철학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전공 설치(연계전공 포함)와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하여야 함. 그러므로 반드시 대학의 학칙에 교원자격 수여와 관련하여 설치될 연계전공 및 연계전공 허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관련규정 및 교육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계전공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정을 거치도록 함
- ☞ 연계전공 이수예정자는 연계전공 표시과목 관련학과를 전공하는 교직 이수자(사범대학, 일반대학의 교육과 재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포함) 중에서만 선발이 가능하며, 연계전공 표시과목 관련학과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연계전공 이수자로 선발이 불가함(연계전공의 이수인원은 제한 없음)
- 연계전공이 개설되지 않은 단일학과에서 연계전공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하더라도 연계전공에 의한 표시과목인 「기술·가정」, 「공통과학」, 「공통사회」, 「도덕·윤리」 교사자격증을 부여할 수 없음
- 연계전공 교육과정 예시 참고(부록4)

**【연계전공 운영 시 유의사항】**

**♣ 연계전공의 개설 및 운영**

- ☞ 「기술·가정」의 연계전공의 경우 「기술」 표시과목의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가 없다 하더라도, 「기술」 관련 전공과목을 제공할 수 있는 2~3개 학과(기계과, 금속과, 전기과, 전자과 등)와 연계하여 연계전공의 구성이 가능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연계전공 설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함
- ☞ 「공통과학」, 「공통사회」 연계전공의 경우 관련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가 2개 이내인 경우 나머지 영역의 전공과목을 제공할 수 있는 학과와 연계하거나, 필요한 전공과목을 일반선택 등으로 이수하게 하되, 동 과목의 학점을 제외한 전공학점이 42학점 이상(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50학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 운영함

**♣ 연계전공의 경우 주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을 15학점까지 중복인정이 가능함**

TIP : 물리전공자의 경우 물리15, 화학9, 생물9, 지구과학9학점을 이수해야 공통과학 연계전공 가능

## 다.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 ○ 검정대상

- 사범대학, 대학의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로서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이수한 자(2007학년도 입학자까지만 한함)
- 중등·특수(중등)의 현직교사로서 교육대학원 졸업자 또는 부전공 연수 이수자

### ○ 부전공 과정 운영 대상학과(또는 전공분야)

-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 사범대학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 : 2007학년도 대학 입학자까지

-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4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 중등 및 특수(중등)학교 현직교사로서 교육대학원 졸업자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28학점 이상(교과내용 24학점 이내 + 교과교육 4학점 이상)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30학점 이상(교과내용 24학점 이내 + 교과교육 6학점 이상)

#### - 중등 및 특수(중등)학교 현직교사로서 부전공 자격연수 이수자

- 2008학년도 이수자까지 : 30학점 이상(교과내용 26학점 이내 + 교과교육 4학점 이상)
- 2009학년도 이수자부터 : 38학점 이상(교과내용 30학점 이내 + 교과교육 8학점 이상)

### ○ 인원제한 및 적용개시 연도

- 인원제한 : 복수전공 제한인원의 50% 이내(2006~2007학년도 입학자에 한함)
- 적용 개시 연도 : 2006~2007학년도 입학자(2009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 2008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10학년도 이후 편입학자부터는 학부에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불가

### 【부전공 운영 시 유의사항】

- ♣ 2001.12.19 이전에 학부에서 부전공을 이수중인 자의 무시험 검정기준은 종전규정 적용(전공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 ♣ 교직과목의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도 교직과목의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교과교육론」을 제외하고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 주전공으로 초등·유치원·특수학교(초등, 유치원) 정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은 복수전공으로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나, 부전공을 통한 교사자격증 취득은 불가함. 단, 보건교사 자격증은 복수전공을 통한 취득이 불가함
- ♣ 반드시 '교직 부전공 이수예정자 명부'를 작성한 후, 명부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여야 함(서식4-3 참조)

**라. 복수·부전공 자격기준의 적용** : 부전공 자격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 적용년도 : 2007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

※ 중등학교 정교사(2급) 5호 기준 대상자의 무시시험검정 합격 기준 : 이수학점(전공 42학점 또는 부전공 30학점, 교직 4학점) + 전체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각각 평균성적(2005년 9월 이후 이수한 과목에 한함) 80점 이상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사범대학 학생이 사범대학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 21-2-1
  - 사범계학과 학생이 사범계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 21-2-4
  - 사범대학 또는 사범계학과 학생, 교직과정 이수자가 중등학교 교직과정 개설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 21-2-5
  - 교직과정 이수자가 사범대학, 사범계학과, 중등학교 교직과정 개설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 21-2-5
- 특수학교 정교사(2급)
  - 사범대학 또는 사범계학과 학생이 특수교육과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 21-2-1
  - 사범대학 또는 사범계학과 학생이 특수학교 교직과정 개설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 21-2-2
  - 교직과정 이수자가 특수교육과 또는 특수학교 교직과정 개설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 21-2-2
- 유치원 정교사(2급)
  - 사범대학 또는 사범계학과 학생이 유아교육과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 22-2-1
  - 사범대학 또는 사범계학과 학생이 유치원 교직과정 개설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 22-2-2
  - 교직과정 이수자가 유아교육과 또는 유치원 교직과정 개설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 22-2-2
- 사서교사(2급)
  - 사범대학 또는 사범계학과 학생이 문헌정보교육과(공주대학교에 한함)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 21-2-4
  - 사범대학 또는 사범계학과 학생이 사서교사 교직과정 개설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 21-2-1
  - 교직과정 이수자가 문헌정보교육과 또는 사서교사 교직과정 개설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 21-2-1
- 전문상담교사(2급)
  - 사범대학 또는 사범계학과 학생이 전문상담교사 교직과정 개설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 21-2-1

- 교직과정 이수자가 전문상담교사 교직과정 개설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 21-2-1
- 영양교사(2급)
  - 사범대학 학생 또는 사범계학과 학생이 영양교사 교직과정 개설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 21-2-1
  - 교직과정 이수자가 영양교사 교직과정 개설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 21-2-1

**마. 복수·부전공 자격증의 발급 및 명부 작성 요령**

- 주전공, 복수전공(연계전공 포함) 모두 교원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는 전공한 과목에 대해 각각 자격증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각각 자격증을 수여함
- 부전공의 경우 별도의 자격증 발급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자격증 발급대장에는 주전공 자격증 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부여함

**[ 예시 ]**

단과대학명/교육대학원	학과(전공)	학위등록번호	자격증번호	표시과목	전공구분(주/부/복수전공)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연월일	자격기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명부 작성 연월일
									조	항	호	
사범	국어교육과	국-1	1	국어	주전공	홍길동	○○○	2008.2.9	21	2	1	
인문	지리학과	-	1	지리	부전공	홍길동	○○○	2008.2.9	21	2	5	2006. 2. 28
인문	영문학과	국-2	2	영어	복수전공	홍길동	○○○	2008.2.9	21	2	5	2006. 2. 28

**【전공학점 중복인정 관련 유의사항】**

♣ 전공학점의 중복인정이 가능한 표시과목의 범위

- ▶ 공통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공통사회⇔일반사회, 역사, 지리
- ▶ 기술·가정⇔기술, 가정                              ▶ 가정⇔조리, 영양교사
- ▶ 도덕·윤리⇔교육학, 철학                            ▶ 교육학⇔심리학⇔상담⇔전문상담교사

- ☞ 상기 표시과목 간에는 5과목(15학점)이내에서 중복 인정 가능
- ☞ 과목명이 동일해도 이수구분이 교양 또는 일반선택인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
- ☞ 동일학과 내에서는 복수전공 불가

♣ 복수전공 시 학점의 중복인정

- ▶ 특수학교(중등) ⇔ 특수학교(초등) ⇔ 특수학교(유치원)
  -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전체(42학점) 상호 인정 가능
    - ⇒ 대신 초등42, 중등42, 유아42학점을 이수해야 함 : '09부터는 50학점
- ▶ 중등학교 ⇔ 특수학교(중등), 유치원 ⇔ 특수학교(유치원), 초등학교 ⇔ 특수학교(초등)
  - ☞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 전체 상호 인정 가능
    - ⇒ 대신 초등42, 중등42, 유아42학점을 이수해야 함 : '09부터는 50학점

※ 사범계학과인 초등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등에서 특수교육과 표시과목의 전공과목을 결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과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으로 최대 15학점까지 중복 인정(☞ p.119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참조)

### 3. 전공과목의 이수

#### 가. 적용 대상

- 정교사(2급) 또는 교사(2급) 자격증 무시험검정 대상자 중 전문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원 졸업자, 교직과정 이수자, 임시교원양성소 수료자, 보수교육 이수자 등
-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대상자 중 전문대학·각종학교 졸업자

#### 나. 표시과목별(자격종별) 기본이수과목

##### 1)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 기본이수과목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이나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표시과목별(또는 자격종별)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전공과목
-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로 정하며, 교원양성기관은 고시된 기본이수과목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수과목을 지정하여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되, 무시험검정 시 대학에서 정한 과목만을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할 것인지, 또는 국가에서 고시한 과목 전체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대학별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결정함
- 고시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중 하나의 과목(또는 분야)를 둘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하는 경우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를 작성하여 대학의 장이 결재 후 대학에 비치하여야 하며, 기본이수과목의 충족을 위하여 분리된 과목을 모두 이수하도록 하거나 그 중 하나만 이수하도록 하는지의 여부는 대학별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결정함
- 교원양성기관별 기본이수과목은 고시된 기본이수과목 내에서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기본이수과목의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자나 재입학자가 교사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여야함
- ☞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가 전적 대학 또는 제적 이전에 이수한 기본이수과목 인정 여부는 대학에서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지정

##### 2) 기본이수과목의 이수학점 적용기준

구분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	2000학년도부터 2008학년도 입학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 고시	제1997-11호 (1997.12.9)	제2000-1호(2000.1.28) 제2004-5호(2004.6. 9)	제2007-161호(2008.1.8) 제2009-29호(2009.7.13) 제2009-37호(2009.9.23)
정교사(2급) 또는 교사(2급)	9학점 이상 (3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5과목 이상)	21학점(7과목) 이상 ※교육대학원 : 14학점(5과목) 이상
실기교사	6학점 이상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 (2과목 이상)

**3) 고시의 적용 대상 및 주요내용**

- **제1997-11호(1997.12.9)** : 1999학년도 이전 대학 입학자(2001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및 교육대학원 입학자(9학점 이상)
  - 공통과학, 공통사회의 기본이수영역은 각각 과학일반, 사회일반을 이수하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과 ‘일반사회, 역사, 지리’를 각각 별도의 과목(영역)으로 모두 이수하여야 함
- **제2000-1호(2000.1.28)** : 2000학년도~2004학년도 대학 입학자(2001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및 교육대학원 입학자
  - 공통과학 및 공통사회 표시과목 : 기본이수학점(14학점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을 공통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분야에서, 공통사회는 ‘일반사회’, ‘역사’, ‘지리’의 분야에서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함
  - 표시과목 ‘역사’의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중 ‘역사학개론’,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현대사’의 경우 각 영역에서 1과목 이상 이수하면 됨  
(예) ‘고대사’ 영역 중 ‘한국고대사’, ‘동양고대사’, ‘서양고대사’ 가운데 1과목 이수
  - 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2급)의 기본이수과목(분야)이 신설됨
- **제2004-5호(2004.6.9)** : 2005학년도~2008학년도 대학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및 교육대학원 입학자
  - 일반사회, 지리, 역사의 기본이수과목 중 ‘공통사회과교육론’ 삭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기본이수과목 중 ‘과학교육론’ 삭제, 공통과학 기본이수과목의 ‘(공통)과학교육론’을 ‘공통과학교육론’으로 수정
  -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기본이수과목 설정
- **제2008-119호(2008.8.1)/제2009-29호(2009.7.13)** : 2009학년도 대학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및 교육대학원 입학자부터
  - ☞ **교원자격 무시시험검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규정을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부령)에서 ‘고시’ 수준으로 하향함**
    - 교사자격 무시시험검정 합격기준의 강화에 따라 자격종별 또는 표시과목별로 최소 **7과목** 이상 기본이수과목을 편성하여 고시함을 원칙으로 추진
    -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위한 기본이수과목 이수 기준은 14학점(5과목) 이상으로 함
    -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5호에 의한 기본이수과목의 재조정 : 제7차 교육과정에 적합한 기본이수과목의 편성 및 시의에 적절한 기본이수과목으로 개정
    -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본이수과목(21학점 이상) 및 심화과정의 운영기준 신설
    - 중전 특수학교의 기본이수과목을 특수교육(공통)과 특수학교(초등)·특수학교(유치원)·특수학교(중등)으로 세분화하여 개정 및 신설
    - 특수학교(중등)의 ‘재활복지’, ‘직업교육’, ‘이료’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 신설

【기본이수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 기본이수과목을 ‘전공’으로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의 자격검정 업무 처리

☞ 기본이수과목은 원칙적으로 전공으로 개설하고 이수해야 함.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개설하여 이수한 경우 이 과목을 기본이수과목의 이수로 인정은 가능하나 전체 전공학점의 합계(42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음

▶(예) ‘일반사회’ 표시과목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인 행정학과 학생이 ‘일반사회’의 기본이수과목인 ‘경제학개론’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나, 경제학과와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어 전공이 아닌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경제학개론’(3학점)을 이수한 경우,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에는 포함되나, 전공과목 42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음. 그러므로 42학점 외에 3학점을 추가로 전공과목을 더 이수해야 함

※ 교육대학원에서의 검정 시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의 인정 여부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함

다. 산업체 현장실습의 이수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산업체의 범위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해 노동부장관과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대학의 장과 교육실습이나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또는 대학의 장이 현장실습을 요청하여 동의서를 받은 산업체

○ 산업체 현장실습 해당 공업계 표시과목

- ‘교육부고시 제1997-11호’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 공업, 기계, 건축, 토목, 전기, 전자, 통신, 화공, 섬유, 금속, 자원, 공예, 자동차, 요업, 조선, 인쇄, 전자기계, 전자계산기, 환경공업, 중기

- ‘교육부고시 제2000-1호’,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5호’,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19호(구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161호’)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을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산업체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 산업체 현장실습의 시기, 학점부여 방법 등은 대학의 장이 결정하여 시행하며, 대학에서 별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중복인정이 가능함

○ 대학 졸업자의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시 대학 입학 전의 산업체 근무경력도 현장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교사자격 무시험검정의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산업체에 근무경력은 현장실습으로 인정이 가능함(관련 서류 제출자에 한함)

## 4. 교직과목의 이수

### 가. 교직과목의 이수학점

#### 1) 교직과목의 이수기준

- 2008학년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
  - 유치원, 초등·중등·특수학교 : 20학점 이상
  - 사서·보건·전문상담·영양교사 : 16학점 이상
  - 유치원 정교사(2급) 중 전문대학 졸업자 : 16학점 이상
  - 보건교사 중 전문대학 졸업자 : 12학점 이상
  - 실기교사 : 4학점(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 2009학년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취득예정자 : 22학점 이상
    - ※ 전문대학 졸업자도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실기교사 : 4학점(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 2) 교직과목의 영역별 구성

- 2008학년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
  - 교직이론 :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육학 하위영역
    - 4년제 대학 :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 전문대학 : 10학점 이상(7과목 중 5과목이상)을 선별 또는 통합하여 이수
  - 교과교육(4학점 이상) : 표시과목별 지도내용, 지도방법 등
  - 교육실습(2학점 이상) : 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 등
    - ※ 교직과목의 이수학점은 과목당 2학점 이상으로, 'A' 및 'B'로 되어있는 교과는 'A'와 'B'를 1과목으로 통합하여 이수시켜야 하며, 'A'나 'B'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이수시켜서는 안 됨
    - ※ 교직과목명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과목의 성격이 동일한 경우 '교직과목 일치증명서'(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대학의 장이 결재한 후 해당 서류를 대학에 보관하고 운영할 것(예 : '교육심리' → '교육의 심리학적 기초')
- 2009학년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 교직이론(14학점, 7과목 이상) :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직이론 영역(교과목명 일치)
    - ※ 법령에 규정된 교직이론 과목 중 14학점(7과목) 이상을 선별 또는 통합하여 이수
  - 교직소양(4학점 이상) : 교직실무(2학점),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 교육실습(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 등), 교육봉사활동 2학점(P/F제 가능) 이내 포함 가능

□ 교직과목과 이수학점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영역	과목	소요최저이수학점	
		대학	전문대학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에 관한 과목)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4학점이상 (7과목이상)	10학점이상 (5과목이상)
교과교육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는 제외)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 기타 교과교육에 관한 과목	4학점이상 (2과목이상)	4학점이상 (2과목이상)
교육실습	교육실습	2학점(4주)	2학점(4주)

□ 교직과목과 이수학점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준교사	실기교사
교직이론	○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교직소양	○ 4학점 이상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단원) 포함 -교직실무(2학점 이상)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합계	총 22학점	총 10학점	총 4학점

3) 교직과목의 교수요목

① 교직이론 영역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1) 교육학개론	·교육학 전반에 대한 기초적 이론, 교직윤리, 특히 교사론에 역점을 둔다.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의 철학적 기초, 교육의 역사적 기초,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교육사 내지 교육철학에 역점을 둔다.
3)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특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및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등 교육현장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4) 교육평가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및 평가방법, 특히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능력과 평가기법의 향상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5)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수 - 학습의 이론과 실제, 특히 교육기자재 활용방법에 중점을 두며,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관한 과목을 포함한다
6) 교육심리	·학습자의 이해, 학습 및 발달이론, 생활지도에 역점을 둔다.
7) 교육사회	·교육의 사회적 기능, 특히 학교 내의 사회구조에 중점을 둔다.
8)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제도 및 조직, 교원인사, 장학 및 학교행정, 학급경영 등에 역점을 둔다.
9)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육학의 세부 영역으로서 위의 8개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을 교원양성기관별로 선정하여 이수한다.(예 : 교수-학습이론, 교사론, 교육법 등)

② 교과교육 영역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1) 교과교육론	·교과교육의 역사적 배경, 교과교육의 목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분석 등 교과교육전반에 관하여 연구한다.(수업의 실제 부분에 중점을 둠)
2)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의 성격, 중·고등학교 교재의 분석, 수업안의 작성, 교수방법 등 교과지도의 실제경험을 쌓게 한다.
3)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논리적 사고의 근본 법칙 및 논술에 관한 교육에 역점을 둔다.
4) 기타 교과교육 영역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교수법, 교육과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학습한다.

③ 교육실습 영역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대학에서 교육실습 이론교육을 이수한 후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에서 직접 교육실습을 실시한다. ※운영형태 : 참관실습, 수업실습, 실무실습(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는 직무 중심의 실무실습을 주로 하되, 참관 및 수업실습도 병행 가능)
교육봉사활동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학교 교사, 등하교지도, 장애아 복지시설 자원봉사 등을 실시하며,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최소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인정, 졸업 시까지 일정 시간 이수

## 나. 교과교육영역의 이수

-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2001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
  -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범교과로 4학점 이상 이수
  - 복수전공자 및 부전공자는 주전공에서 범교과로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이수한 경우 별도로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할 필요 없음
- 2000~2008학년도 입학자(2003~2010학년도 편입학자 포함)
  - 주전공자는 표시과목별로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4학점 이상 교직과목으로 반드시 이수
  - 복수전공자(연계전공 포함) 및 부전공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4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함
  -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하거나 이수한 경우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전공과목 42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으며, 동일과목을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으로 중복 인정이 불가함
  - ☞ 주전공에서 범교과적인 성격의 교과교육영역 과목을 이수했다라도 이와 별도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의 교과교육영역(4학점)을 추가로 반드시 이수하여 함
  - 표시과목별로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8학년도부터 교원양성기관의 형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과목에 한하여 계열별로 교과교육영역의 과목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음(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
    - ☞ 동일 계열 내에서 복수전공(연계전공 포함)을 하는 경우 교직과목의 교과교육영역으로 중복인정이 가능함
    - ☞ 범교과로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경우 기존에 이수한 교과교육영역 과목의 인정이 가능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교직과목에서 전공과목으로 전환
    - ☞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가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경우에도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학점을 4학점(2과목) 이상에서 8학점(3과목) 이상으로 상향
    - ☞ 단,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의 교과교육영역은 6학점(2과목) 이상
  - 표시과목별로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원양성기관의 형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과목에 한하여 계열별로 교과교육영역의 과목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음(고시 제3조제5항 참조)
    - ☞ 계열별로 교과교육영역의 과목을 이수한 자가 동일 계열 내에서 복수전공(연계전공 포함)을 하는 경우 중복인정이 가능하나, 전체 중복인정 학점(15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음

**다. 교육실습**

**1) 교육실습 이수학점**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 2학점(4주 이상)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4학점(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 교육실습 학점 당 기준시간 :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80시간 이상,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 단, 전일제로 실시하는 학교현장실습의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점 당 기준시간 적용 제외(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도 상관없음)

**2) 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 2008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부터 적용**

- ☞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161호(2008.1.8)의 부칙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함. 단, 교과외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과목으로 실시 가능함
-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 가능함. 단, 표시과목이 다른 경우의 교육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심의 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
- 실기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정규교원(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포함)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음
- 산학겸임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 포함)의 경우 동일분야에서 1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면제 가능
- '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사서-공공도서관, 영양-교육청소속기관만 해당함) 또는 청소년상담기관(상담-민간기관은 슈퍼바이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할 수 있는 자와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유치원설립자로서 1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에 한함)을 대체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속 학교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 분야 자격증**

- 사서교사 : 사서, - 영양교사 : 영양사
- 전문상담교사 : 청소년상담사, 민간자격 소지자(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영양교사의 교육실습 면제 관련 참고사항**

: 영양교사의 경우 교육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서식 5-1)를 제출하여야 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실시되는 교육봉사활동은 면제가 불가하며,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학에서 정함

- ☞ 교육실습 면제 대상자가 이미 교육실습 수강신청을 완료한 경우,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교육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적은 부여하지 않고 이수 여부만 성적표에 표기할 수 있음

### 3) 교육실습 실시 시기

-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의 실시 학년 및 시기 등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교육실습 대상학교의 방학기간 중 실시는 양교의 협의에 따라 실시가 가능함
- 교육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실시 학년 및 시기 등의 제한이 없으나,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을 하여 이수 여부만 성적표에 표기함

### 4)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 선정

-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 선정
  -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의 선정은 대학이 책임지고 해야 하나,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선정 가능함
  -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는 실습 대상 인원 및 협력학교의 규모를 감안하여 선정함으로써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 실제수업 또는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교육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의 경우 초·중등·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가 가능함
  - 보건교사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 사서교사는 도서관이 있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각각의 해당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에 의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함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 학교 급에 맞는 학교만 가능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학교현장실습 불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시도교육청에 문의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타 법령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 외국의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대학이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이 지정한 학교 또는 해당 국가대사관에서 정규학교임을 공증 받을 수 있는 학교

### 5)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의 운영

- 교육봉사활동 대상학교는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학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가능
- ☞ 전제 :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유·초·중·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교육봉사활동은 이수학점을 부여하고, 교원자격 무시협검정 시에 이수 여부만을 확인하며, 성적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함
- ☞ 2009학년도 대학 및 교육대학원 입학자부터 적용

#### 6) 시·도교육청 및 교육실습 대상학교와의 협력

-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법령(「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 제6항, 2007.12.20)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실습 협력부서를 지정·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실습 대상 학교의 선정에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과 상호 협의할 것
- 대학은 교육실습 대상학교와 교육실습 일정, 내용, 인원 등 교육실습계획에 대하여 교육실습 시작 14일 전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교육실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 라. 기타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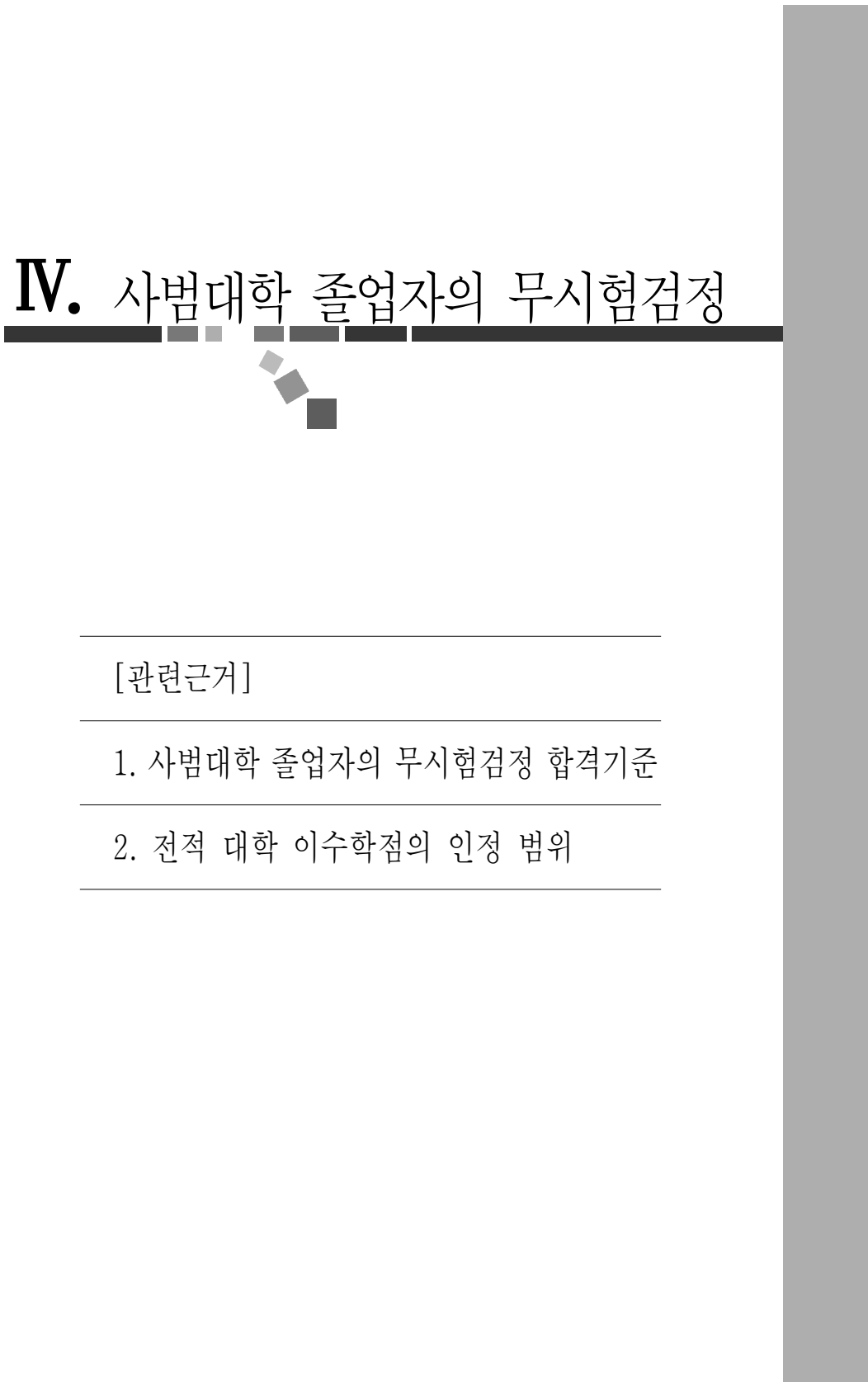
- 교직과목 중 '교직이론과목'과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의 명칭은 관련 법령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대학에서 교육과정 편성 시 과목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고시 적용으로 인하여 대학에서 과목명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동일한 과목임을 인정할 수 있는 과목에 한하여 대학의 장이 결재한 후 근거서류로 보관하고 운영하되,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지는 않음

☞ 대학 편입학자(재입학자 포함)나 교육대학원 입학자가 전적 대학 또는 입학 전의 대학에서 이수한 '교직이론과목'과 '기본이수과목'의 명칭이 본교와 다른 경우의 무시협검정 방법

-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과목에는 포함되나 본교에서 정한 과목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본교의 기본이수과목 또는 교직이론 과목을 확대
- ▶ 본교에서 정한 과목 중에 포함되나 명칭이 다른 경우 해당 학생의 무시협검정 서류에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를 첨부

- 대학의 '교육학과' 또는 교육대학원의 '교육학전공'의 경우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직이론 과목(14학점)을 전공 50학점 내에 중복 인정이 가능하나(단, 교과목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한함) 전공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의 교직이론 영역 중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목명이 제시된 9과목을 기본적으로 개설한 후 대학의 장의 결재를 받아 개설하고 관련서류를 대학에 보관하여야 함
-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있어서 교육실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 대학은 사전에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습 학생에 대한 충분한 예비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실습을 시행하고, 실습기간 중에는 해당 학과 교수의 출장지도를 통해 교육실습을 내실화 하여야 함
- 교육실습 소요경비는 관련 법령(「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별표3])에 의거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IV.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

[관련근거]

- 
1.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2. 전적 대학 이수학점의 인정 범위
-

## IV.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졸업자의 자격기준’

자격종별	자격기준
중등학교 정교사(2급)	1. 사범대학 졸업자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자
특수학교 정교사(2급)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자
사서교사 (2급)	4.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자
유치원 정교사(2급)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 「교원자격검정령」

♣ 제3조 (자격증의 수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 (자격증표시과목) ①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재학 중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42학점 이상 : '08학년도 입학자까지)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만,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을 받으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0>

♣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② 교육대학의 졸업자 및 사범대학의 졸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자격종별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0>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수 [42학점 이상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20학점 이상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3.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 외에 해당 기관의 무시험검정 대상자에 대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2.20>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2조 (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②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과 검정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의 정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6.19>

❖ 제12조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① 검정령 제4조제3항·제1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사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31>

② 검정령 제19조제7항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는 무시험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 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
3.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개정 2007.12.31>

❖ 제13조 (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이나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표시과목의 관련 학과와 그 기본이수영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4.12>

❖ [별표 3]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pp.48~49 '입학년도별 적용기준' 확인

♣ ‘교육학’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교육학과 또는 교육대학원의 교육학 관련 전공

❖ ‘교육학과’를 주·복수전공으로 졸업한 경우에는 전공으로 이수한 과목과 교직과목이 중복되는 경우 전공으로 이수한 과목을 교직과목으로 중복하여 인정이 가능함. 단, 교육학과에서 부전공을 이수한 경우에는 중복 인정이 불가하며,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을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1.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입학자의 경우

※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편입학하는 경우 포함

구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 ※ 특수학교의 경우 7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의 경우 특수학교(공통)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각각 14학점(5과목) 이상 총 28학점	○ 50학점 이상 ※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의 경우 특수학교(공통)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각각 21학점(7과목) 이상 총 42학점 -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교직과목	○ 20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기준	○ 없음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기타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교직 적·인성검사 - 일정 수준의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편입학하는 경우

※ 2010학년도 편입학자까지

-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이상
- 교직과목 4학점(교과교육영역)

☞ 2008학년도 3월 이후 교사자격증 취득예정자부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적용

※ 2011학년도 편입학자부터

-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이상 21학점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6학점(교직소양 4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2. 전적대학 이수학점의 인정범위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전공 및 교직과목 중 학칙에 따라 편입대학의 졸업요건에 포함되는 과목에 대하여 인정 가능함.
- 전공과목은 전적대학과 편입대학의 전공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이 가능하며, **편입대학의 전공과 다른 전공과목을 전적대학에서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교직과목은 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취득한 해당 과목 전체에 대하여 인정이 가능함
- 개설된 과목이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인 경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인정 또는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이수하도록 할 수 있음
  - ☞ 반드시 학칙으로 과목별 인정 여부를 명시하여야 함

### 【사범대학 졸업자의 검정기준 관련 규정】

- ♣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범대학 졸업자도 반드시 전공과목 42학점 이상(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 교육부 공문서인 ‘전공 및 교직과목 철저 이수 안내’(교양 81830-853, 1999.7.14)에 따라 교사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해 교직과정 이수자와 동일하게 **교직과목 20학점 이상(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22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함**
  - ☞ 사범대학 졸업자도 교직과정 이수자나 교육대학원의 졸업자와 동일한 자격검정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운영하여야 함
- ♣ 사범대학 졸업자가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 복수 및 부전공을 이수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복수 및 부전공의 자격기준은 반드시 제5호(교직과정 이수자의 자격기준)에 의한 무시험검정 기준을 적용함(2007년 2월 졸업자부터)**
  - ☞ pp.51~54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기준’ 참조

### 【사범대학(사범계학과 포함)의 정원 운영 규정】

- ♣ 사범대학(사범계학과 포함)의 입학정원 : 사범대학(사범계학과 포함)의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승인된 학과별 입학정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사범대학(사범계학과 포함)의 정원 운영 : 사범계학과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편입·재입학과 정원의 입학 및 전과 등을 합한 수는 학과별 승인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승인정원에서 결원이 발생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예 : 승인인원이 40명인 학과의 경우 정원의 입학이나 편입학 및 전과 등을 포함하여 재적인원이 총 44명을 초과할 수 없음)

## V.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

### [관련근거]

---

1.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7호 규정에 의한 무시험검정
  3. 교직과정 운영
  4.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및 명부 관리
-

## V.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교직과정 : Teacher Education Course in General University)

※ 교직과정 이수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입학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재학 중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한 자

###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 2]

#### ❖ '교직과정 이수자의 자격기준'

자격종별	자격기준
중등학교 정교사(2급)	5. 대학·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자
특수학교 정교사(2급)	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유치원 정교사(2급)	2.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 포함)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사서교사 (2급)	1. 대학·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보건교사 (2급)	1. 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자 2. 전문대학의 간호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자
전문상담 교사(2급)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영양교사 (2급)	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자

♣ 「교원자격검정령」

❖ 제3조 (자격증의 수여)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 (자격증표시과목)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재학 중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42학점 이상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만,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을 받으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0>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② 교육대학의 졸업자 및 사범대학의 졸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자격종별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0>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수 [42학점 이상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20학점 이상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3.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각각 평균 80점 이상]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 외에 해당 기관의 무시험검정 대상자에 대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2.20>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제20조 (교직과정의 설치 등) ①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장이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4.6>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②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과 검정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의 정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9.6.19>

❖제11조 (교직과정의 설치기준) 검정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1996.8.30>

1.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2. 당해교직과정의 설치목적에 따른 교육실습을 위하여 병설 또는 협력하는 고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을 두어야 한다.

❖제12조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① 검정령 제4조제3항·제1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사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7.12.31>

② 검정령 제19조제7항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는 무시험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 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
3.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개정 2007.12.31>

❖ **제13조 (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이나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표시과목의 관련 학과와 그 기본이수영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6.4.12>

❖ **제14조 (교직과정 등의 설치신청)** ① 검정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직과정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3. 교육실습을 위한 병설학교의 설치 또는 교육실습을 행할 학교와 실습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15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중에 학교의 장에게 교직과정이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신청자중 인성, 적성 및 성적등을 고려하여 당해학년의 학과별입학정원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선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3.10.5, 1992.2.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비율은 교원수급상 필요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자격종별 및 과목별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별표 3]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pp.48~49 '입학년도별 적용기준' 확인

## 1.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 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전공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2학점 이상</li> <li>※ 특수학교의 경우 72학점 이상</li> <li>-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li> <li>※ 특수학교의 경우 특수학교(공통)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각각 14학점 이상 총 28학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학점 이상</li> <li>※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li> <li>-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li> <li>※ 특수학교의 경우 특수학교(공통)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각각 21학점 이상 총 42학점</li> <li>-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li> </ul>
교직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학점 이상</li> <li>-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li> <li>-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li> <li>- 교육실습 2학점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학점 이상</li> <li>-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li> <li>-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li> <li>- 교육실습 4학점 이상</li> </ul>
성적기준	○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 각각 80점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li> <li>○ 국가기술자격증[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취득자에 한함]</li> <li>○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li> <li>○ 국가기술자격증[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취득자에 한함]</li> <li>○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li> <li>○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li> <li>- 교직 적·인성검사</li> <li>- 일정 수준의 이상의 외국어능력(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li> </ul>

### 나. 평균성적 산출방법

####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 평균성적은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별도로 산출하되, 복수·부전공 자격검정의 경우 면제받은 과목은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한 취득점수를 기재하여야 함(A<sup>+</sup>, B<sup>0</sup>, C 등의 등급 또는 등급별 평점으로 기재하여서는 안됨)
- 평균점수의 산출은 담당교수의 학업성적 평가 시 등급평가에 실점수를 병행하여 기재토록 하여 그 실점수에 의해 산정(실점수 × 이수학점 단위수 ÷ 총 이수학점 단위수)하되,

-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공과목과 교직과목별로 각 과목의 A<sup>+</sup>, B<sup>0</sup>, C 등 각 등급별 평균 평점에 이수학점 단위수를 곱하여 산출된 총 평점을 총 이수학점 단위수로 나눈 최종 평균 평점을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함. 이때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여 기재해야 하고, 각 등급의 평균 평점이 아닌 최고 평점에 이수학점 단위수를 곱하여 처리하지 않아야 함

☞ 평균성적 산출 시의 전공과목은 교사자격증을 부여받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 과목 전체임(표시과목 관련 전공 + 기타 전공)

※ 평점으로 부여된 성적의 '점수환산 기준표'를 대학별로 학칙으로 정하여야 함

**[예시] : 점수 환산 기준표(만점 4.3인 경우)**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A+	4.3	99	B+	3.2	88	C+	2.1	77	D0	1.0	66
A+	4.2	98	B+	3.1	87	C0	2.0	76	D0	0.9	65
A+	4.1	97	B0	3.0	86	C0	1.9	75	D0	0.8	64
A0	4.0	96	B0	2.9	85	C0	1.8	74	D-	0.7	63
A0	3.9	95	B0	2.8	84	C-	1.7	73	D-	0.6	62
A0	3.8	94	B-	2.7	83	C-	1.6	72	D-	0.5	61
A-	3.7	93	B-	2.6	82	C-	1.5	71	D-	0.4	60
A-	3.6	92	B-	2.5	81	C-	1.4	70	D-	0.3	59
A-	3.5	91	B-	2.4	80	D+	1.3	69	D-	0.2	58
A-	3.4	90	C+	2.3	79	D+	1.2	68	D-	0.1	57
B+	3.3	89	C+	2.2	78	D+	1.1	67	F	0.0	56

☞ 위 표에서 평균평점은 A<sup>+</sup>=4.2, A<sup>0</sup>=3.9, A<sup>-</sup>=3.55, B<sup>+</sup>=3.2, B<sup>0</sup>=2.9, B<sup>-</sup>=2.55, C<sup>+</sup>=2.2, C<sup>0</sup>=1.9, C<sup>-</sup>=1.55, D<sup>+</sup>=1.2, D<sup>0</sup>=0.85, D<sup>-</sup>=0.4임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성적기준은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대학 또는 교육대학원의 최종성적표에 기재된 졸업성적을 적용하되, **이수구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수과목을 대상으로 함.** 다만, 편입학 이전 대학의 성적이나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 성적 등은 포함하지 않음
- 주전공으로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복수·부전공 과목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7호에 의한 무시험검정

※ '7호기준' 대상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관련 근거】

#### ♣ 「초·중등교육법」

##### ✦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 '7호기준 대상자'의 자격기준

자격종별	자격기준
중등학교 정교사(2급)	7.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범위

- 초등학교 :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 중등학교 :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 ☞ 7호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교사자격증

- 실기교사(전체), 유치원 준교사 이상,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2급) 이상

#### ♣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준함

### 가. 7호기준 대상자의 합격기준

구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및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교직과목	○ 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 ※교직이론 및 교육실습 면제	○ 교직소양 4학점 ○ 교육봉사활동 2학점 ※교직이론 및 학교현장실습 면제
성적기준	○ 해당없음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기타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교직 적성·인성검사 - 일정 수준의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나. 기타 행정사항**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한 경우에만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제7호기준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7호기준 대상자는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아도 되며, 교직과정 승인인원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졸업 시 무시험검정을 신청하면 됨
- 7호기준 대상자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주전공 외에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안내 및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 단, 연계전공을 구성하는 표시과목 관련학과에 편입학한 자는 연계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7호기준 대상자는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는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2009학년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졸업전체 평균성적이 75점 이상이어야 함
- ※ 단, 이미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사범대학에 편입한 경우에는 제7호기준 적용 대상자가 아님. 이 경우에는 사범대학 입학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자격검정(제 21-2-1호)을 실시하고,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도 가능함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7호에 의한 검정 시 유의사항]

♣ [예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가진 자가 '영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정이 설치된 영문학과에 편입하여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 무관하게 영어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다음의 경우에는 7호기준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하므로 편입학 시 철저히 안내해야 함

- 특수학교·유치원 준교사 이상, 사서·보건·전문상담·영양·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학한 경우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사서·보건·전문상담·영양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학한 경우

### 3. 교직과정의 운영

#### [교직과정 운영 관련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

- ▶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과정 승인인원의 재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입학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 관련근거 : 교원양성연수과-111, 2007.03.26
- ▶ 교직과정 승인인원과 학과명칭 변경보고 승인 절차 : 입학정원 및 학과명칭 확정 (학칙 개정 및 교육부 보고) → ‘맞춤형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입학정원 10%, 소수점 이하 반올림) 및 출력물 제출(7.1~7.31)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승인
- ▶ 1개의 학과에서 2개 이상의 표시과목(예 : 가정, 의상) 또는 자격종별(예 : 중등 ‘심리학’, 전문상담교사)을 운영 중인 학과는 하나의 표시과목 또는 자격종별로 재승인을 받아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여야 함

#### 가. 교직과정 신규설치 신청

- 1) 승인권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2) 신청대상
  - 일반대학 · 산업대학의 관련학과
  - 전문대학의 간호학과, 유아교육과(단, 2008년부터 신설되는 전문대학 유아교육과는 요건 충족 시 학과신설 승인과 동시에 교직과정 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 '09학년도 부터 전임교원확보율 100% 충족시 만 증원 및 신규 인가하며, 전임교원 충원계획 미 이행시 승인을 취소함
  - ☞ 유의사항 :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교직과정 설치승인 안내’ 공문에 따라 해당 학과에서만 신규설치 신청을 하여야 함
- 3) 신청기간
  - 일반대학 · 산업대학 : 매년 7. 1 ~ 7. 30
  - 전문대학 : 매년 5. 1 ~ 5. 31
  - ☞ 신규설치 신청은 당해 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청하여야 함
- 4) 신청서류(「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4조)
  - 교직과정 신규설치 신청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첨부서류
    - ①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 편성표
    - ② 교직 및 전공과목 전임교원 명단(부록 서식3)
    - ③ 교육 실습 병설(협력)학교 지정증명서(부록 서식2)
  - 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 시 교육과정 편성표에 기본이수과목은 붉은색으로 밑줄, 기타 전공과목은 청색으로 밑줄 표시

- 고시된 기본이수과목명과 당해 대학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명이 다른 경우에는 내용이 일치함을 증명하는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부록 서식 14]를 첨부(학과장 및 총장 확인)하여야 하나, 기본이수과목은 법으로 정해진 과목명이므로 부득이한 경우(기본이수분야로 고시된 된 경우 등)를 제외하고 명칭변경은 불가함
- 교육실습을 위한 병설 또는 협력학교 지정증명서는 학교장이 발급(중전의 시·군 교육장 또는 시·도 교육감 확인 규정 삭제)하며, 학과별로 구분·작성하여야 함

▶ 신규설치 신청 양식 ◀

대학교명	설립 구분	학과 (전공)	자격 종별	표시 과목	참여 학과	전공 전임 교원수	교직 전임 교원수	입학 정원	적용 입학 년도

5) 설치기준(「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1조)

- 전공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100%**(교수 1인당 학생 25명 기준) 이상과 교직과목 전임교원(교육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직과목을 담당해야 함) **2인 이상** 확보
  - ☞ 전임교원의 범위에는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정교수'만 해당되며, 그 외 '조교·겸임교수·명예교수·시간강사·강의전담강사' 등은 포함되지 않음
- 교육실습을 위한 병설 또는 협력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를 두어야 함
- 교직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또는 전공)의 교육과정 내에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모두 포함하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대학의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직과목은 타 학과와 통합하여 개설할 수 있음

6) 기타 행정사항

- **2007학년부터** 교원수급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교직과정의 신규 설치를 가급적 불허함(관련근거 : 교원양성연수과-8059, 2006.11.23)
- 「초·중등교육법」의 개정(2000.1.28)에 따라 4년제 대학 간호학과의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교직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보건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교직과목 이수와 상관없이 학칙에 따라 부여가 가능함
- 사범계 학과가 일반계 학과로 전환 시 신규 설치에 준하여 교직과정 설치신청을 해야 하며, 일반학과로 전환 후 최초 신입생부터 입학정원의 10%로 하향 적용함
- 학부제 실시 대학의 경우 학생정원을 모집단위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직과정 설치 신청 시에는 표시과목 관련 전공별로 정원을 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이전까지 전공별 정원을 정하기 어려운 대학의 경우 학부 전체 정원을 전공수로 나눈 인원수로 산출함

[교직과정 신규설치 승인의 제한]

- ♣ 매년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교직과정 설치신청 및 변경보고 안내' 공문을 통해 설치 가능한 표시과목 또는 자격종별에 한하여 교직과정 신규설치 신청을 해야 함
  - 교직과정은 예비교사 양성을 위한 보조통로로써 **1984년부터 가급적 신규설치를 억제**하고 있음
  - 1997년부터 사범대학 및 사범계 학과에서 양성되는 중등학교 표시과목에 대한 교직과정 신규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 ♣ 교육부고시에 따른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직과정 설치승인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학과 명칭은 다르나 그 학과의 교육과정이 표시과목 관련학과와 동일하거나 동일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함
  - 교직과정을 운영 중인 학과가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과명칭으로 변경한 경우 교직과정 설치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학과명칭 변경 이전에 교육부의 교직과정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나. 교직과정 승인내역 재승인 신청

- 1) 신청기간 : 매년 7. 1 - 7. 31
- 2) 신청대상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가 학칙 개정에 의하여 다음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재승인 신청을 한 후에 재승인을 받고 운영해야 함

○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재승인 신청

- 신청대상 :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제출서류 : 표시과목 변경 신청서(부록 서식 6)

▶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재승인 신청 양식 ◀

대학교명	설립 구분	학과 (전공)	현행 자격종별	현행 표시과목	신청 사유	변경 후		적용 입학년도
						자격종별	표시과목	

○ 교직과정 이수인원 재승인 신청

- 신청대상 : 입학정원의 증원으로 교직과정 이수인원을 증원하고자 할 경우
- ☞ '10년 3월입학자의 정원이 늘 경우 '10년에 재승인 신청
- 제출서류 :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학칙

▶ 교직과정 이수인원 재승인 신청 양식 ◀

대학교명	설립 구분	학과 (전공)	현행 자격종별	현행 표시과목	신청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적용 입학년도
						입학 정원	승인 인원	입학 정원	승인 인원		

**다. 교직과정 승인내역 변경보고**

- 1) 보고기간 : 매년 7. 1 - 7. 31
- 2) 보고대상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가 학칙 개정에 의하여 다음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보고를 한 후에 보고완료 통보를 받고 운영해야 함

○ **학과명칭 및 소속 변경보고**

- 신청대상 : 학과 명칭 변경, 대학 통합, 4년제 대학 승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종전의 '모집단위 및 단과대학 변경'은 2009년부터 보고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서류 :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학칙

▶ **학과명칭 및 소속 변경보고 양식** ◀

대학교명	설립 구분	학과 (전공)	현행 자격종별	현행 표시과목	보고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적용 입학년도

○ **입학정원 변경보고**

- 보고대상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입학정원이 증원 또는 감원된 경우
- 제출서류 : 증원 또는 감원 내역서 제출

▶ **입학정원 변경보고 양식** ◀

대학교명	설립 구분	학과 (전공)	현행 자격종별	현행 표시과목	보고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적용 입학년도

※ 입학정원이 감원된 경우 자동으로 승인비율에 따라 감원하여 운영하고 보고하여야 함

○ **교직과정 운영 폐지보고**

- 보고대상 : 교직과정이 승인된 학과를 폐과하거나, 타학과와 통합하는 경우,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하여 교직과정 운영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교직과정 운영 폐지보고 양식** ◀

대학교명	설립 구분	학과(전공)	현행 자격종별	현행 표시과목	폐지사유	적용 입학년도

☞ 각 대학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직과정 설치승인 및 변경보고'를 할 때 '재승인 신청'과 '변경보고' 대상 모두 공통적으로 먼저 개정된 학칙에 따라 '맞춤형 업무관리 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후 그 출력물과 변경된 학칙 및 위의 양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라. 기타 행정사항

- 교직과정의 신규 설치 신청 및 변경보고는 당해 학년도 1학년 입학생을 기준으로 함(예 : 2009년도 신규 설치 신청 시에는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여야 하며, 교직과정과 관련한 과목은 2학년(전문대학은 1학년)부터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함
- 교직과정 신규 설치는 과목별 교원수급 상황과 당해 학교 및 학과의 교수인력, 교육과정, 교육시설과 지역적 특수성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법령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선별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므로, 설치 승인을 받기 전에 재학생이나 신입생 모집요강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것으로 홍보해서는 안 되며,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되지 않은 학과의 학생에게 교직과정을 이수시키는 일이 없어야 함
- 교직과정이 신설된 경우 승인된 해에 입학한 학생들부터 교직과정 이수대상자이나, 승인연도 이후에 해당학과에 복학하거나 재입학한 자에 대한 교직과정 이수 자격 부여 여부는 대학에서 결정하며, 신설 승인을 받은 학과의 학생이 최초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타 학과 학생이 복수전공으로 신설 승인을 받은 학과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교직과정이 승인되어 있는 학과가 대학 간 통합 또는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직과정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완료된 후 통합 및 승격된 경우 교직과정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되, '소속 대학 변경 보고'를 '교직과정 설치신청 및 변경보고'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함
- 전문대학 유아교육과가 4년제 대학으로 승격 또는 4년제 대학과 통합 시에는 통합 이전에 교과부의 '교직과정 담당 부서'와 별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 전문대학 유아교육과는 교직과정 설치승인에 의하여 운영(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기준 : 제2호)되고 있으며,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는 사범계학과(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기준 : 제1호)이므로 사범계학과의 설치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미 승인된 교직과정이라도 그 운영이 부실하거나 교원 수급 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교직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고 각 대학별 교직과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직과정 운영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교육부 직원을 파견하여 확인하게 되며, 학교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 사범대학의 설치 운영 및 변경 등에 관련한 사항은 교직과정 신청 시(매년 7.1 ~ 7.31)에 함께 제출하며, 제출과 관련한 안내사항은 공문으로 알림

## 4.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및 명부 관리

### 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 1) 선발시기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자를 기준으로 **2학년(2년제 전문대학은 1학년, 3년제 전문대학은 1학년~2학년) 종료 시까지** 학교의 장에게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함(「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5조)
- 제적에 의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3학년 1학기 종료 전까지는 추가 선발이 가능하나, 반드시 기존의 신청자 중에서 순위대로 선발하여야 함
  - ☞ 단, 휴학으로 인한 결원은 보충할 수 없으며, 지원자 미달로 인하여 승인인원을 선발하지 못하였더라도 3학년 1학기가 개시된 후에 신청을 받아 추가선발을 할 수는 없음

#### 2) 선발인원

- 교직과정 설치 승인을 받은 학교의 장은 **승인 인원의 범위 안에서만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선발**하여야 함
- **전문대학 유아교육과는 정원 외 입학자도 교직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편입학자의 경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야 자격증 취득 가능
  - ☞ 종전에 사립유치원 설립자 중 직접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관할 감독청의 확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특별과정을 운영하여 유치원 원장 자격증을 발급한 사례가 있었으나 **2002년 시효 만료로 운영하지 않음**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인원은 교직과정 설치승인 당시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입학정원이 증가되더라도 변경승인이 없으면 승인시의 입학정원에 대한 선발인원을 적용하여야 하고, 입학정원이 감소되면 감소된 입학정원에 대한 선발비율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되, 반드시 감원 보고 및 재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3) 선발방법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과 관련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와 학과 게시판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홍보한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교직과정 이수희망 신청과 선발 결과 등은 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추후 이의제기 등에 대비하여 선발기준, 절차 등의 근거자료를 작성, 비치하여야 함
- 선발기준의 선정에 있어서 학과별로 상이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도록 '교원양성위원회'에서 타당도·신뢰도·객관도 높은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문서화하고 선발을 실시하되, 선발기준에 교직 적·인성검사를 포함하여야 함

4)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의 처리

- 편입생은 다음 경우 이외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이 불가함
  - 간호학과 **RN-BSN과정(편입생 과정)**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직과정 이수 정원이 승인 (RN-BSN과정 정원의 10%)된 경우, 3학년 초에 편입생을 대상으로 교직과정 이수 신청을 받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를 확정함
  - 다른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하였을 때,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있음(교양 81830-503, 1995.10.24)
  - ※ 편입을 위하여 전적대학을 자퇴함으로써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에서 삭제되었더라도 편입대학에 동일 표시과목으로 결원이 있는 경우 3학년 1학기 종료 전 까지 기 신청자 중에서 순위대로 추가선발이 가능함
- 3학년으로 복학·편입학·재입학한 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 불가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 중에 학교의 장에게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학·편입학·재입학 신청 시점이 2학년 종료 이전이라도 3학년으로 복학·편입학·재입학한 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 불가
  - 해당학과에 교직과정이 개설되기 전에 입학한 자가 복학이나 재입학한 경우에 선발 대상자에 포함 여부를 학칙이나 지침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 단, 입학 당시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었으나, 휴학 기간 중에 자격종별이나 표시과목이 변경된 경우 복학자나 재입학자에 대하여 현재 승인된 교직과정의 이수예정자 선발에 포함할 수 있음. 이 경우 최소한 변경된 표시과목의 기본이수 과목은 충족하여야 하며 미 충족시 이전 표시과목 부여
- 재입학생의 교직과정 이수 가능 여부는 복학생과 동일하게 처리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교직과정 이수가 가능함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제적 처리된 후 해당학과에 재입학한 경우 교직과정 이수가 가능함. 단, 해당학과의 표시과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함

4)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시 유의사항

-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이수신청 절차를 알지 못하여 선발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학생들에게 직접 안내하고, 대학신문,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학생들에게 충분히 주지시켜야 함
- 대학 내 동일한 학과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 모집을 하도록 학칙에 규정되어 있고, 주간학과만 교직과정 설치승인을 받았을 경우 야간학과에서는 교직과정 이수가 불가함. 단, 학칙 상 주·야간의 구분이 되지 않은 학과가 교직과정 승인 인원의 범위 내에서 야간강좌 학생을 포함하여 선발하는 것은 가능함

- 교직과정의 승인은 당해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승인이 되었으나, 이는 교직과정의 운영 실시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승인 입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라도 당해 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한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학생 및 복학생의 경우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함. 단, 이 경우 대학의 학칙이나 지침 등에 명시하거나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함

**【교직과정 운영 시 유의사항】**

**♣ 대학별 '교직과정 운영 관련 지침' 등의 작성**

- ☞ 교직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대학별로 '교직과정 운영 관련 지침' 등을 작성하여 학칙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내규로 마련하여야 함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에 관한 사항
  - 연계전공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복수(연계전공 포함) 및 부전공 이수예정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 교원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직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명부 관리**

- 명부 작성 시기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즉시 작성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가 확정되면 명부를 작성하여 대학에 보관함
- ※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명부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지 않음
- 작성요령
  - 서식은 A4용지를 세로로 하여 인쇄(부록 서식 4-1)
  - 문자는 한글로,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함
  - 명부는 각 학과별로 작성하여야 함
  - 각 학과별 명단의 마지막 아래 난에는 반드시 '아래빈칸'이라 표기하고 당해학과의 입학정원과 승인인원, 선발인원수를 기재하여야 함
  - 명단은 매장마다 간인과 작성자인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 학과명은 약자로 기재하지 말고 학칙에 의한 학과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작성 시 유의사항】**

-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및 작성에 있어서 명단의 누락 등 학교의 행정착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를 확정하기 전에 확보 또는 게시판을 이용하여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VI.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

[관련근거]

---

1.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2.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무시험검정
  3.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운영
-

## VI.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 [별표 2]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자격기준'

자격종별	자격기준
중등학교 정교사(2급)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초등학교 정교사(2급)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특수학교 정교사(2급)	2의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6.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유치원 정교사(2급)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사서교사 (2급)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전문상담 교사(2급)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개정, '07.8.3)
영양교사 (2급)	2. 영양사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6조)

- 서울대학교 대학원(교직 1017-9, 1978.01.06)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양성 25170-948, 1988.12.22)

♣ 「교원자격검정령」

♣ 제4조 (자격증표시과목) ④ 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4.6, 2007.12.20>

1. <생략>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③ 교육대학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2006.4.6>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학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법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동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상담에 관련된 과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동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상담·심리 관련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의 일부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4.6>

1.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 18학점 이상
2.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 42학점 이상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 외에 해당 기관의 무시험검정 대상자에 대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2.20>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2조 (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②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과 검정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의 정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6.19>

♣ 제12조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②검정령 제19조제7항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는 무시험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 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
3.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개정 2007.12.31>

♣ [별표 3]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p.96 '교육대학원 입학년도별 적용기준' 확인

♣ 교육대학원의 '양성' 및 '연수' 기능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

- 1996년 이전에 설립된 교육대학원은 2000년 이전까지 설치 인가된 전공에 한하여, 현직·비현직 교원에 상관없이 입학하도록 하여 교사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으나, 2001년 이후에 설치 인가된 모든 전공은 반드시 현직 교직원에 한하여 입학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으며,
- 1997년 이후에 설립된 교육대학원은 각 전공의 설치 인가된 시기와 무관하게 반드시 현직 교직원(기간제 교사 제외)에 한하여 입학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으므로 입학전형 시 이를 반드시 공지함. 다만, 표시과목과 관련이 없는 전공(교육행정전공, 평생교육전공 등)의 경우 현직교원이 아니더라도 입학할 수 있으며,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전공의 경우라도 동일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현직교원이 아니더라도 입학이 가능함

【교육대학원 입학 시의 현직 교직원 범위】

♣ 교육대학원의 신설 또는 전공 신설 인가 통보 시의 '현직 교직원의 범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직원(기간제 교원 제외), 교육행정·연수·연구기관 등의 정규 교직원(교양81830-59, 2002.02.01)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및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직원, 타 법령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학교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직원(기간제 교원 제외)

☞ 단, 조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제2조 제2항 제6호 및 「국립학교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속하는 자만 해당하며, 사립대학의 정규직 조교가 아닌 대학원에 재학 또는 일반학과에서 일정액의 대가를 받거나 무급으로 교수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정규직 조교는 정규교직원으로 볼 수 없음(교양81830-59, 2002.02.01)

## 1.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 가. 주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초등, 중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 : 42학점 이상</li> <li>-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li> <li>○ 특수학교 교사 : 63학점 이상</li> <li>- 특수교육(공통) : 21학점 이상</li> <li>- 표시과목 관련 : 42학점 이상</li> <li>※ 특수학교(공통)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각각 14학점 이상(총 28학점)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초등, 중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 : 50학점 이상</li> <li>-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li> <li>-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 유치원, 초등, 중등에 한함</li> <li>※ 사서, 영양, 전문상담은 교과내용영역으로만 50학점 이상</li> <li>○ 특수학교 교사 : 30학점 이상</li> <li>- 특수교육(공통) : 30학점 이상</li> <li>※ 특수학교(공통)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li> <li>- 표시과목 전공학점 면제(표시과목 관련 학과 주·복수전공 졸업자에 한함)</li> </ul>
교직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학점 이상</li> <li>-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li> <li>-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li> <li>- 교육실습 2학점 이상</li> <li>※ 사서·영양·전문상담은 교과교육 4학점을 제외한 16학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학점 이상</li> <li>-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li> <li>-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li> <li>-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li> </ul>
성적기준	○ 없음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li> <li>○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li> <li>○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li> <li>○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li> <li>- 교직 적성·인성검사</li> <li>- 일정 수준의 이상의 외국어능력(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li> </ul>

### 나. 부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중등학교 및 특수(중등)학교 현직교원에 한함

구분	'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학점 이상</li> <li>-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학점 이상</li> <li>-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li> <li>-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li> </ul>
교직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학점 이상</li> <li>-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li> </ul>	○ 면제(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영역 전체)
성적기준	○ 없음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다. 학부에서 취득한 전공 및 교직학점의 인정

### 1) 교육대학원에서의 교사자격증 취득의 일반원칙

-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 및 전공의 설치승인 시기에 따라 일부 신규교사 양성기능을 가지고 있음
-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또는 전공)를 졸업하고 취득한 일정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반드시 관련학과의 졸업자에 한하여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도록 하여야 함**

- 단,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의 현직교사는 소지한 교사자격증과 다른 전공에 입학한 경우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이 가능함

☞ **교육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성적기준의 적용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육대학원의 졸업전체 평균성적만 적용(75/100점 이상)하며,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취득하여 인정받은 과목이나 성적표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과목 등의 학점은 제외함**

### 2)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 : 특수교육 관련 전공은 제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 포함)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의** 관련학과에서 취득한 학점(「교원자격검정령」 개정, 2004.9.17)

**\*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일반·전문·특수대학원 졸업, ‘학점은행제’를 통한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취득,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사내대학 졸업 등

-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편입학을 하여 대학을 졸업한 경우의 학점 인정 : 졸업대학교와 동일한 전공으로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전공과목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의 학점은 인정이 가능함

☞ **학점인정 범위의 적용 :** 2004년 9월 17일 이전에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도 교육대학원 졸업 이전에 개정된 학점인정 범위에 속하는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인정범위의 소급 적용이 가능함. 단, 반드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학점이 인정되며, 교육대학원의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 외국대학(해당국가 대사관의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한함) 졸업자의 경우 외국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이수한 교육과정과 성적표를 검토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교육과정이 국내 대학과 상이하거나 현저히 질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입학을 불허해야 함
- 전공과목은 학점인정 대상 교육기관의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며, 일반선택이나 교양 등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함

- 초등학교 교사도 교육대학교에서 심화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을 전공학점으로 인정 받아 교육대학원의 관련 전공에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 가능
-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과 교육대학원에서 정한 전공과목의 명칭이 다를 때에는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전공과목의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함
- ☞ [서식 15]의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의 확인란은 현재 입학한 교육대학원의 전공학과에서 확인하여야 함

**【관련학과 판단 시 유의사항】**

♣ 교육대학원 입학자의 '관련학과' 판단 기준

- ▶ '관련학과' 판단 기준은 전공과목을 최소 38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학과로서, 전공 학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함.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을 어느 정도 까지 인정해줄 것인가는 사전에 학칙에 명시하여 운영하여야 함
- ☞ 2012.2월 학부 졸업생부터는 전공학점 38학점 취득 요건 반드시 적용
- ☞ 기본이수과목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제2004-5호, 제2008-119호 등)의 관련학과는 예시이며, 이를 토대로 각 대학에서 관련학과의 인정 범위를 결정할 것
- ▶ 교육대학원에서는 입학 상담 시에 지원자가 학부에서 취득한 성적표를 제출 받아 해당 전공 교수에게 관련 전공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을 판단하게 한 후, 석사 과정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과 과목을 제시함으로써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안내해 주어야 함
- ☞ 교육대학원 입학 시에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서식15)를 받아 인정 학점을 확정된 후 교육대학원에서 보관하고, 졸업 시 교원자격 무시협검정에 활용하여야 함
- ※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의 작성 및 제출은 교육대학원 입학과 동시에 학생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교육대학원에서 충분히 안내하여야 함

**라. 교직과목 이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3】**

**1) 이수영역 및 이수학점 기준**

구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주전공 취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학점 이상</li> <li>-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li> <li>-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li> <li>- 교육실습 2학점 이상</li> <li>※ 단, 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는 교과교육 4학점을 제외한 16학점 이상</li> <li>※ 보건교사 자격증은 취득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학점 이상</li> <li>-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li> <li>-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li> <li>- 교육실습 4학점 이상(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li> <li>※ 보건교사 자격증은 취득 불가</li> </ul>
부전공 취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학점 이상</li> <li>-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li> <li>○ 성적기준 :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직과목 : 면제(중전의 교과교육은 전공과목에서 6학점 이상 이수)</li> <li>○ 성적기준 : 75/100점 이상</li> </ul>

## 2) 교직과목의 이수

### ○ 1999학년도 교육대학원 입학자까지

- 주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범교과로 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학부에서 범교과로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이수하였더라도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하여야 함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현직교원으로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예정자는 교과교육영역을 면제함

### ○ 2000~2008학년도 교육대학원 입학자

- 주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표시과목별로 4학점 이상 이수
- 학부에서 범교과로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이수하였더라도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을 4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함
-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하거나 이수한 경우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전공과목 42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으며, 동일과목을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으로 중복 인정이 불가함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현직교원으로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예정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을 교육대학원에서 4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 ○ 2009학년도 이후 교육대학원 입학자부터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교직과목에서 전공과목으로 전환
- 주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과교육영역의 이수학점을 4학점(2과목) 이상에서 6학점(2과목) 이상으로 상향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현직교원으로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예정자는 교육대학원에서 교과교육영역을 6학점(2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
- ☞ 표시과목별로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8학년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표시과목에 한하여 대학의 형편에 따라 계열별로 교과교육영역의 과목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음(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

## 3) 교직과목의 면제

- **교직이론 및 소양 영역** :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면제(실기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이수한 「교육학개론」은 면제 가능)
- **교과교육 영역** : 면제 불가
- ※ 교원자격증이 없거나,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자격종별이나 표시과목이 다른 경우 반드시 이수

○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161호(2008.1.8)** 부칙 조항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부터 적용 여부를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음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포함한 교직과목 전체를 면제할 수 있음. 단, 표시과목이 다른 경우의 교육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

- 실기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정규교원(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포함)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교사자격증이 없으나 산학겸임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 포함)로 동일영역의 학교급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음

○ '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사서-공공도서관, 영양-교육청소속기관만 해당함) 또는 청소년상담기관(상담-민간기관은 슈퍼바이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할 경력이 있는 자와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유치원설립자로서 1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에 한함)을 대체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속 학교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 분야 자격증**

- 전문상담교사 : 청소년상담사, 민간자격 소지자(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사서교사 : 사서(공인자격증)
- 영양교사 : 영양사(국가자격증)

☞ **영양교사의 교육실습 면제 관련 참고사항**

: 영양교사의 경우 교육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 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면제가 가능함

- 학부에서 이수한 '교육실습' 과목을 인정하더라도 교직과목 전체 면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자격증을 받지 못한 경우) 교육봉사활동은 면제가 불가하며,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학에서 정함

☞ 교육실습 면제 대상자가 이미 교육실습 수강신청을 완료한 경우,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교육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적은 부여하지 않고 이수 여부만 성적표에 표기할 수 있음

**4) 교육실습 실시 가능학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평생학습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타 법령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준하는 학교
- 외국의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대학과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지정한 학교 또는 해당 국가대사관에서 정규학교임을 공증 받을 수 있는 학교

☞ 2008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부터 적용

### 5) 교직학점 인정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이수한 과목이 해당영역의 어느 교직과목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교육대학원에서 '교직과목의 교수요목'을 참조하여 판단하되,
-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입학 시에 [서식 15]의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인정학점을 확정 한 후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 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인정 불가)
- '교육학과'를 주·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졸업한 경우에는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을 교직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을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교원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 자에 대한 자격기준 요건을 자세히 안내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교직과목의 학점인정 시 유의사항】

##### ♣ 교직과목의 학점인정이 불가한 경우

-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 즉, 원격대학·학점은행제·독학사·일반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과목 중 교직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이를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불가
- ☞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과목 중 '교육학개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실기교육방법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불가함

## 마. 자격종별 세부기준

### 1) 중등학교 정교사(2급)

- **검정대상**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2호]
- 교육대학원에서 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1998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전공 42학점 이상과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전공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을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대학에서 이수한 심화과정과 관련된 교육대학원의 전공에 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경우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현재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부터 적용함
- 공업계 표시과목의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반드시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게 교육실습을 이수하도록 하여서는 안됨

## 2) 초등학교 정교사(2급)

- 검정대상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3호]
- 학부에서 취득한 전공 학점의 인정
  - 교육대학 또는 대학의 초등교육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은 인정학점의 범위에 포함되나 교육대학 졸업 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므로 현실적인 대상자는 없음
  - 교육대학원 초등교육전공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교사양성과정(전 교과 지도)으로 편성되지 않고, 초등교육 전문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어, **일반대학 졸업자가 교육대학원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여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함**
- ☞ 단, 국립 교육대학 졸업자로서 '의무복무 불이행' 사유로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이 박탈된 자가 교육대학원(국립 교육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함

## 3) 특수학교 정교사(2급)

- 검정대상 : 「초·중등교육법」 관련 [별표 2]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제2의2호)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의 범주】**

- ♣ **대학·산업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중 '1. 대학'과 '2. 산업대학'만 해당하며, 그 외의 학교(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독학시험 및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 학위 취득자 등)는 해당하지 않음
- ♣ **특수교육 관련학과**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학교(중등)의 표시과목(총 62개 : 일반중등 59개 표시과목 + 직업교육, 재활복지, 이료)에 해당하는 학과나 유아교육·초등교육 관련학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부전공 학위는 인정되지 않음)하고,
  - 부여받고자 하는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을 최소 30학점 이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교육 관련학과'의 범주에 포함함
-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p.103 참조)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제4호)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제6호)

**○ 자격기준별·입학연도별 무시험검정 기준**

- \* 제2의2호 자격기준 대상자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전공과목 : 특수교육 관련 21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및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42학점 이상
  - 교직과목 : 20학점 이상
- \* 제2의2호 자격기준 대상자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전공과목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이수
  - ☞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2의2호 대상자는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만을 입학하도록 하고,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학점은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관련 근거 :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161호)
- \* 제4호, 제6호 자격기준 대상자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 전공과목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21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교육실습 2학점
- \* 제4호, 제6호 자격기준 대상자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전공과목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자격증 부여방법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 주전공과 부전공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전공과 부전공 표시과목 표기
-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각각의 교사자격증 부여(단, 교육대학원에 설치된 전공에 해당하는 자격종별만 부여 가능)

☞ 복수로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복수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부여는 소급하여 적용하되, 반드시 교육대학원 졸업일을 기준으로 소지한 자격증에 대해서만 무시험검정을 실시하고 자격증을 부여하여야 하며, 비현직 교원의 경우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과목은 부여하지 않음

○ 자격증 표기방법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 유치원 및 초등·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중등학교) 준교사
- 유치원 및 초등·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소지자 ⇒ 유치원 및 초등·특수학교(중등) 정교사(1급)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표기 예시】

- ♣ [예시1]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육학(부전공 국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교육학(부전공 국어)’ 표기
- ♣ [예시2]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육학(부전공 국어)’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학교에 ‘국어’ 교사로 임용되어 중등학교 정교사(1급) 국어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표기 가능

4) 유치원 정교사(2급)

- 검정대상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자격기준 제3호)
- 학부에서 취득한 전공 학점의 인정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의 관련학과(유아교육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보육과 등)에서 유아교육 관련 전공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한 경우에만 인정
  -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의 경우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 취득 불가능

## 바. 선수과목의 이수

- 선수과목 이수 제도의 운영 :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에 대한 선수과목 이수는 석사 학위과정 수업 운영의 내실화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함
- 선수과목 이수 학기의 제한 : 선수과목의 이수 학기의 제한은 없으나, 교육대학원 재학 중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이 불가함
- 선수과목의 성적 합산 여부 :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과목을 졸업성적에 포함하는지의 여부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 ☞ 선수과목의 이수학점 허용 범위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학기당 3학점 이내(총 15학점 이내)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학기당 6학점 이내(총 28학점 이내)

## 사. 표시과목의 표기방법

- 교육대학원 졸업자에게는 전공 설치 승인 시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전공별 교시과목을 부여함
- 전공 설치 승인 시에 별도의 표시과목을 승인받지 않았으나 전공 명칭과 표시과목 관련학과(전공)가 일치하는 경우 전공별 표시과목을 부여함
- 전공 설치 승인 시에 별도의 표시과목을 승인받지 않았고, 전공 명칭과 표시과목 관련학과(전공)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교육대학원에서 자격검정 시 유의사항】

- ♣ **교사자격증 취득 가능 여부 사전 홍보 철저** : 교육대학원 입학 시 전공별로 취득할 수 있는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을 정확히 안내하고, 개인별로도 교사자격증 취득 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안내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 **하나의 전공과정을 이수하고 두 개의 자격증 취득 불가** : 대학에서는 하나의 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 ☞ (예) 상담심리전공을 졸업한 경우 '전문상담교사(1·2급)'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 또는 부전공 '상담' 자격을 동시에 수여할 수 없으며,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단, 특수교육전공의 경우 입학 전에 복수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복수의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음
- ♣ **동일한 교사자격증의 소지자** : 이미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동일한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검정을 요구할 경우, 자격기준이 다르므로 자격증 부여가 가능함
  - ☞ 단, 현직교원이거나 현직교원으로 임용된 후에 동 교육대학원의 졸업 학력을 상위 자격(1급) 취득에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하여야 함
- ♣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학점의 중복 인정** :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교육대학원의 유사 전공에 진학하여 다른 자격종별 또는 표시과목의 교사자격증 취득 시 학부에서 취득한 학점의 중복 인정이 가능함. 즉, 학부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사용한 전공 및 교직학점을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 ☞ (예) 대학의 철학과를 졸업하고 '중등학교 정교사(2급) 철학'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을 인정받아 교육대학원의 윤리교육전공에 진학하여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민윤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 **교육대학원의 편입학자에 대한 무시험검정** : 교육대학원에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도 해당 대학의 교육대학원 승인사항(양성 및 연수기능 관련)에 따라 해당자에 대하여 무시험검정을 실시할 수 있음
- ♣ **교육대학원의 정원외 입학 관련 규정** :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전공의 경우 정원외 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교사자격증을 부여하지 않은 전공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 정원외 입학이 가능함(외국인도 자격증과 무관할 경우 가능)

## 2.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무시험검정

- ♣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④ 중등학교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생략>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자(2001.12.19.)

### 가. 부전공 무시험검정의 대상

- **종전의 규정**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
- **변경된 규정**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이거나,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

☞ **변경된 규정의 적용** :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현직교원으로서 변경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년도와 상관없이 부전공 무시험검정이 가능하며, 이미 졸업한 자의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함

### 나. 현직교사의 범위

☞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

- **현직교사의 시점** :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현직교사이어야 하며, 석사학위 취득 후에 현직교사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현직교사의 신분** :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정규교원이어야 함
  - ※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자격 취득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부전공 자격연수’를 대체하는 과정이므로 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자가 아닌 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강사 등은 현직교사의 범위에서 제외함
- **현직교사로서 부전공 취득의 제외** :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특수학교(유치원·초등),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에는 부전공 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불가함

☞ 단,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교사자격증(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에게도 소지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가 가능함(이전 졸업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함)

## 다. 부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1)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

-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 전공과목 21학점
- **2002~2004학년도 전기 입학자**
  - 전공과목 24학점
  - \* 2002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교양81840-49, 2002.1.24.)
- **2004학년도 후기~2008학년도 입학자**
  - 전공과목 24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4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 \* 교직과목 4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교원양성연수과-1383, 2004.03.22)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 \* 전공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161호, 2008.1.85)

### 2) 기타 행정사항

- 부전공 과목 검정기관 : 각 대학의 장
  - \* 부전공 표시방법은 p.23 'II-5-다. 자격증 표시방법' 참조
- 교육과정 편성·운영 : 각 대학은 현직교사에게 부전공과목을 표시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주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관련학과 졸업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히 편성·운영해야 함
- ☞ **관련학과 졸업자의 경우 전공을 더욱 심화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야 함**

### 3.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운영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 [별표 2] '전문상담교사(1급)의 자격기준'

자격종별	자격기준
전문상담교사(1급)	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개정 2007.8.3)

♣ 「교원자격검정령」

✦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상담에 관련된 과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동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상담·심리 관련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의 일부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4.6>

1.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 18학점 이상
2.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 42학점 이상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12조의2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과목과 이수학점) 검정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4.9.3>

✦ [별표4]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제12조의2관련)(개정 2006.4.12)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이수학점
필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선택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정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비고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함

### 가.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 비학위과정(1년제) : 교육대학원의 상담심리전공이 있는 대학에 과정 별도 승인
- 석사학위 연계과정 : 교육대학원의 상담심리전공에 별도의 과정 승인

#### 【참고사항】

-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중 현직교원을 위한 비학위과정은 2009학년도까지만 운영하며, 2010학년도부터 운영을 폐지함. 단, 석사학위 연계과정은 계속 운영함 (교원양성연수과-4327, 2006.06.20)
- ♣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 3호에 의한 양성과정은 2006년과 2007년의 2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향후 추가 운영계획은 없음(※ 2005.12.7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 개정 시 입법 취지에 의함)

### 나.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 대상자

1) 비학위과정 : 현직교원으로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자격증으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비학위과정은 반드시 현직교사만 모집이 가능함)

- ☞ **현직교원의 범위** :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정규교원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학교(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교원
  - ※ 「초·중등교육법」의 개정(2007.8.3)에 따라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에 포함됨 :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교사, 2급 이상의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
- ☞ **기간제 교사(종일제 강사 포함)** : 기간제 교원의 경우 임명권자로부터 연수지명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비학위과정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제 교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간제 교원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 :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도 2008학년도부터 학교장의 연수지명을 받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가 가능함(공포 : 2007.1.3, 시행 : 2008.2.15)

♣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③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 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재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에 근무하는 교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164호, 2007.12.14)의 개정에 따라 재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에 근무하는 교원도 소속 학교장 및 교육원장의 연수지명을 받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가 가능함. 단, 재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근무 교원이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을 실

시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부서(현 재외동포교육과)와 특정 시·도교육청 사이에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소정의 협의서 또는 협의내용이 담긴 공문서 사본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에게 제출한 자에 한하여 양성과정 이수가 가능함)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교원 등의 연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외국인인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소년원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소년원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도 학교장의 연수지명을 받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가 가능함. 과정 종료 후 학교가 소재한 시·도교육감에게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0조 (교원 등)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2) 석사학위 연계과정

-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영양·보건·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초·중등교육법」의 개정, 2007.8.3)
- 현직 교원은 아니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다.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1급) 설치 신청

### 1) 대상기관

- 비학위과정 : 62개 대학(대학별 1개 과정 30명씩)
  - ☞ 비학위과정의 모집 대상에 학교급(유치원, 초등·중등·특수학교)을 구분할지의 여부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석사학위 연계과정 : 상담관련 전공이 개설된 교육대학원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전문상담교사(1급) 석사학위 연계과정 설치 승인을 받은 대학

### 2) 제출서류

- 설치계획서
  - 목적

- 설치과정(석사학위 연계과정)
- 선발방법
- 운영방법(야간제 또는 계절제)
- 교육과정 편성표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의2 관련 [별표4]에 의한 '전문상담교사 양성 과정의 이수과목과 이수학점'이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전임교원 명단
  -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담당하는 상담전공 전임 교원 2명 이상
  - 성명, 직급, 연령, 학력, 학위, 주요경력, 담당과목, 임용일자

**3) 신청기간 : 매년 7. 1 ~ 7. 31**

**라.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세부 운영 사항**

**1) 지정 기간**

- 비학위과정 : 2009학년도까지만(9월 모집 대학의 경우 2010년 8월 종료 시까지) 운영
- 석사학위 연계과정 : 상담관련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면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함

**2) 연수대상자 모집**

- 비학위과정 연수대상자는 1년에 1회만 모집할 수 있음

**3) 운영규정**

- 대학별로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비학위과정, 석사학위 연계과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4) 연수경비**

- 연수경비는 전형요강 공고 시 고지하고, 교재비나 실험실습비 등이 포함될 경우에는 동 사항도 포함하여 고지함

**5) 자격증 수여**

- 비학위과정 이수 후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본인이 시·도교육감에게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 검정합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05.5.26)
-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는 비학위과정 이수자 및 석사학위 취득자의 소속 시·도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시험검정 신청서는 개인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학에서 일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함(교원양성연수과-1607, 2006.03.06)

- 퇴직교원의 경우 인사서류가 보관된 시·도교육감이 발급, 비현직교사는 대학소재 시·도교육감이 발급

**6)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 및 명단보고**

- 자격증 양식, 발급대장, 자격증 발급자 명단 보고 등은 일반 교원자격 검정업무와 동일하며, 발급번호는 자격급별(1급, 2급)로 별도 부여함

**7) 양성과정 운영 시 유의사항**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이미 소지한 자는 비학위과정 이수가 불가함
  - ※ 관련근거 : 교육부예규 제259호 「교원연수·연구실적 학점화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II의3.다. (1) 계속연수는 인정치 않음
    - 모집요강에 명기하고 입학전형 시 반드시 확인할 것(교양81830-137, 2001.2.28)
    - 승진을 위한 성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동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1997년 이전에 취득한 교도교사 자격증 포함) 소지자의 비학위과정 중복 이수를 금지하며, 이를 위하여 2002년 3월 입학자부터 임용권자의 연수지명을 받도록 함(교양81840-83, 2002.2.6). 단, 시·도교육감이 연수지명 권한을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피위임권자의 연수지명은 유효함
- 적정 모집 인원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 과정 운영을 지양하며, 비학위과정은 양성과정이므로 휴학 등은 인정되지 않고 중도탈락으로 처리해야 함
- 석사학위 연계과정의 경우 법령의 이수과목과 일치하지 않는 이수과목명은 대학내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교육과정을 심의하여 이수 인정 여부를 결정함
- 석사학위 연계과정 이수자의 경우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무시험검정 요건인 3년의 교육경력에는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교육경력을 합산함
- 수업시간 편성 및 운영에 유의하여 수강생들의 불만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고, 상담실습 중심의 과정 운영으로 전문상담교사의 질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기간	전반기 안내 (3월초)	전반기교육 (7-8월)	후반기 안내 (9월)	후반기 교육 (12-1월)	종합평가
내용	과제부여	출석수업 (강의/사례발표)	과제부여	출석수업 (강의/사례발표)	평가
비고	강의안내 및 예비교육	강의(1일6시간, 시간당 50분) 사례발표(10시간)	강의안내 및 예비교육	강의(1일6시간, 시간당 50분) 사례발표(10시간)	학생평가 /강의평가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운영 대학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비학위과정 및 석사학위 연계과정의 지정을 취소함
  - 관련법령(「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교원수급 계획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비학위과정의 이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선발하여 운영한 경우

- 비학위과정의 이수자 성적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 양성과정의 운영이 부적절하거나 양성과정 운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검정 시 유의사항】**

- ☞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의 범위 :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의 경력만을 포함하며,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됨  
☞ (예)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급이 다른 대학이나 유치원 등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 교육대학원 입학 전 교육경력이 부족한 경우 : 석사학위 연계전공 이수자의 교육경력은 교육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교육경력을 합산하여 3년이 경과하면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이 가능함
-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또는 교도교사 자격증을 이미 소지한 경우 : 비학위과정을 통하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중복 취득하는 것은 불가하나, 석사학위 연계과정을 통하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함
- ☞ 석사학위 연계과정 이수자 중에서 이미 교육대학원 졸업 학력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동일한 교육대학원 졸업 학력으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 무시험검정 신청 서류 :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재직 중인 학교가 소재한 시·도교육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공통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경력증명서
  - 비학위과정 이수자 : 이수증명서, 이수자 전원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 석사학위 연계과정 이수자 : 졸업증명서, 이수증명서, 성적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 자격증 미검정 확인서
- ☞ 2005년 5월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검정을 신청한 경우 : 졸업 당시에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유를 출신대학 측에 확인하여 검정하되,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이 신설된 1998년 이후에 교육대학원 상담관련 전공을 졸업하고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함

**바.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성적 처리 방법**

**1) 비학위과정**

- 비학위과정의 성적처리는 반드시 교원연수 성적처리방법에 의해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되 평가방식은 객관적으로 규정하여 사전에 고시
  - 2007학년도부터 이수성적은 2학기까지 등록된 인원을 대상으로 하며, 2학기 등록 후 최종 미이수자는 이수인원에 포함하여 최하위의 순위를 부여하되 이수성적은 부여하지 않으며, 시·도교육청에서는 미이수자로 간주함
  - 2007학년도 전문상담교사(1급) 비학위과정 이수자부터 성적산출은 아래의 분포표에 의함
- ☞ '교원연수 성적 산출방식 개선방안'(교원양성연수과-945, 2006.02.06) 참조

**2) 석사학위 연계과정**

-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을 취득한 자가 「교육공무원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자격연수 성적으로 평정 받을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정함.
- ☞ 단, 자격연수성적평정은 동 양성과정의 이수과목 성적만을 별도 분리하여 평정하지 않고 교육대학원 성적 전체를 자격연수성적으로 환산 처리함. 이 경우 학위취득실적 평정대상에서 제외됨(「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6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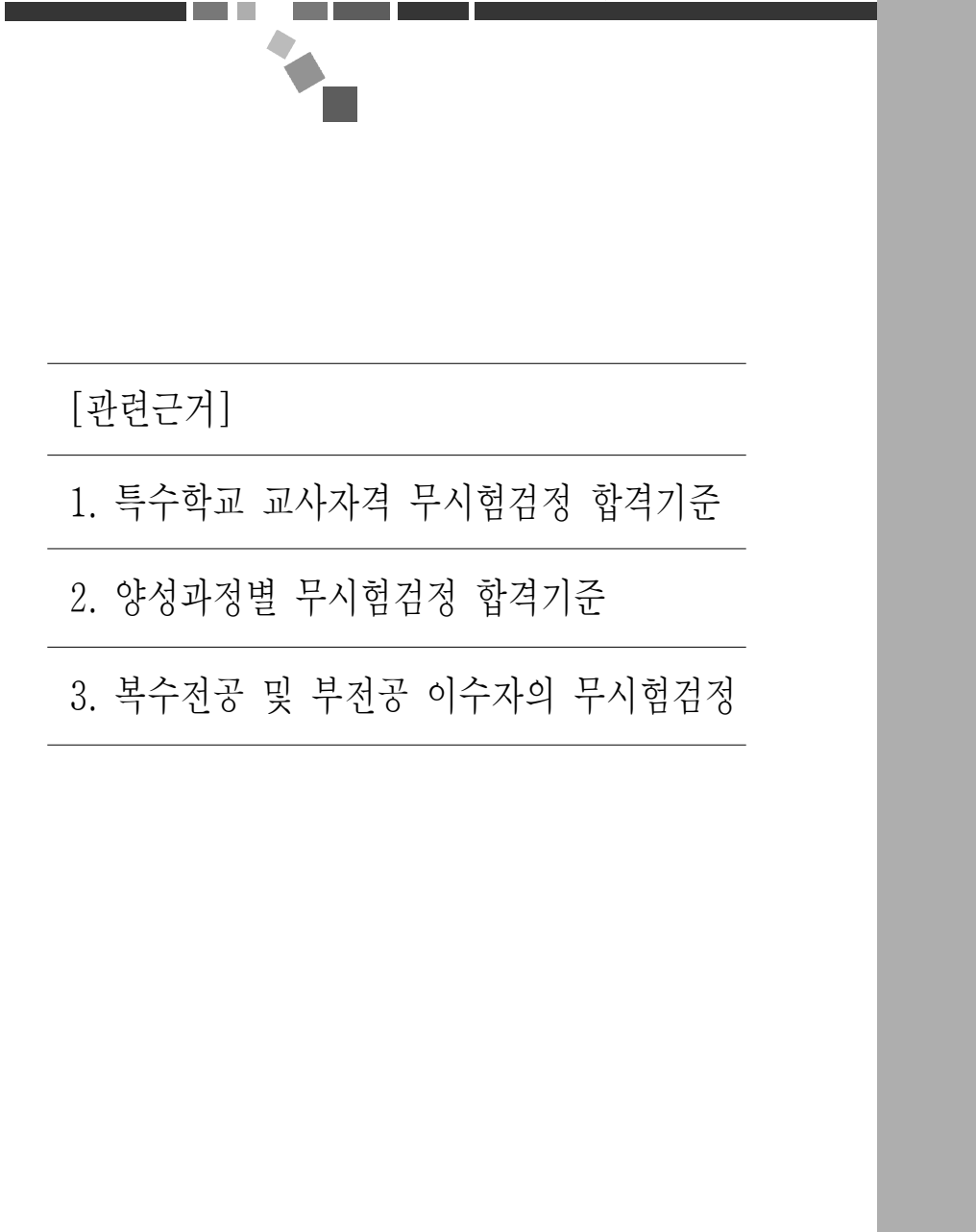
▶전문상담교사(1급) 비학위과정 연수인원별 성적 분포표◀

순 위	연수인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1	90	90	91	91	92	92	93	93	94	94	95	95	96	96	97
2		90	90	90	91	91	92	92	93	93	94	94	95	95	96
3			89	90	90	90	91	91	92	92	93	93	94	94	95
4				89	89	90	90	90	91	91	92	92	93	93	94
5					88	89	89	90	90	90	91	91	92	92	93
6						88	88	89	89	90	90	90	91	91	92
7							87	88	88	89	89	90	90	90	91
8								87	87	88	88	89	89	90	90
9									86	87	87	88	88	89	89
10										86	86	87	87	88	88
11											85	86	86	87	87
12												85	85	86	86
13													84	85	85
14														84	84
15															83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순위	연 수 인 원														
	16명	17명	18명	19명	20명	21명	22명	23명	24명	25명	26명	27명	28명	29명	30명
1	97	98	98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100
2	96	97	97	98	98	98	98	98	98	98	98	98	98	98	99
3	95	96	96	97	97	97	97	97	97	97	97	97	97	97	98
4	94	95	95	96	96	96	96	96	96	96	96	96	96	96	97
5	93	94	94	95	95	95	95	95	95	95	95	95	95	95	96
6	92	93	93	94	94	94	94	94	94	94	94	94	94	94	95
7	91	92	92	93	93	93	93	93	93	93	93	93	94	94	94
8	90	91	91	92	92	92	92	92	92	92	93	93	93	93	94
9	90	90	90	91	91	91	91	91	92	92	92	92	93	93	93
10	89	89	90	90	90	90	91	91	91	91	92	92	92	92	93
11	88	88	89	89	90	90	90	90	91	91	91	91	92	92	92
12	87	87	88	88	89	90	90	90	90	90	91	91	91	91	92
13	86	86	87	87	88	89	89	90	90	90	90	90	91	91	91
14	85	85	86	86	87	88	89	89	89	90	90	90	90	90	91
15	84	84	85	85	86	87	88	89	89	89	89	90	90	90	90
16	83	83	84	84	85	86	87	88	88	89	89	89	89	90	90
17		82	83	83	84	85	86	87	88	88	88	89	89	89	89
18			82	82	83	84	85	86	87	88	88	88	88	89	89
19				81	82	83	84	85	86	87	87	88	88	88	88
20					81	82	83	84	85	86	87	87	87	88	88
21						81	82	83	84	85	86	87	87	87	87
22							81	82	83	84	85	86	86	87	87
23								81	82	83	84	85	86	86	86
24									81	82	83	84	85	86	86
25										81	82	83	84	85	85
26											81	82	83	84	84
27												81	82	83	83
28													81	82	82
29														81	81
30															80

## VII. 특수학교 교사 무시험검정



---

[관련근거]

1.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2. 양성과정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3.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

## VII. 특수학교 교사 무시험검정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 [별표 2]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기준'

자격종별	자격기준
특수학교 정교사 (2급)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자 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2의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5.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6.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특수학교 정교사(1급)	1.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교원자격검정령」

♣ 제3조 (자격증의 수여)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자격증표시과목)**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재학 중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42학점 이상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만,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을 받으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0>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② 교육대학의 졸업자 및 사범대학의 졸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자격종별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0>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수 [42학점 이상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20학점 이상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3.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 [80점 이상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 외에 해당 기관의 무시험검정 대상자에 대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2.20>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②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과 검정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의 정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6.19>

♣**제4조 (자격증표시과목)** ④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제12조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① 검정령 제4조제3항·제1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사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31>

② 검정령 제19조제7항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는 무시험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 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
3.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개정 2007.12.31>

♣**제13조 (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①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이나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표시과목의 관련 학과와 그 기본이수영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3]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1.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가.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 단, 특수학교(초등)과 특수학교(중등) ‘재활복지’ 및 ‘직업교육’ 표시과목은 기본 이수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 졸업성적 80점 이상(교직과정 이수자에 한함)

### 나.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 특수교육(공통)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 단, 교육대학원 입학자는 30학점 이상
-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단, 교육대학원은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학과의 주·복수전공 졸업자로서 30학점 이상 인정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입학하도록 하여 별도의 전공과목(기본 이수과목 포함)을 이수하지 않음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 교직소양 중 ‘특수교육학 개론’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 교직소양과목으로 중복 인정이 가능하나, 전공과목 2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교육실습 4학점(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이상
- 졸업성적 75점 이상(모든 교사자격 취득예정자 공통)
-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

\*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161호(2008.1.8) 참조

## 2. 양성과정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가.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졸업자

#### 1) 일반 원칙

- ‘특수학교(초등)’, ‘특수학교(중등) 체육’,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초등특수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직업특수교육과 등)는 해당학과의 교육과정 내에 무시험검정에 필요한 모든 이수과목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유아특수교육과)는 해당학과의 교육과정 내에 무시험검정에 필요한 모든 이수과목을 편성하고 운영하거나, 유아교육과와 연계하여 유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음
-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에서는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을 이수하게 하여 이를 표시과목으로 부여함

#### 【특수학교(중등) 표시과목 부여 관련 유의사항】

- ♣ ‘표시과목 관련학과’는 반드시 사범대학 또는 사범계학과이거나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나, 기본이수과목을 포함한 소정의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된 학과이어야 함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0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포함)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8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포함)
- ♣ 교직과정이 개설된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반드시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과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동시에 부여가 가능함
- ♣ 주전공 표시과목 외에 추가로 교직과정이 개설된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과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추가로 부여가 가능하며, 부전공 제도는 폐지함
  - ☞ 단,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육부지침에 의하여 부전공 이수를 제한하며,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학부에서의 부전공 자격 취득이 불가하고, 복수전공만 가능함

- ‘직업특수교육과’가 아닌 특수교육과에서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업계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전공과목과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표시과목 대신 ‘직업교육’ 표시가 가능함. 단, ‘특수학교(중등) 실업계 표시과목’과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교사자격증을 동시에 부여할 수 없음
- 타 전공자(사범대학 재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가 특수교육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과 교직과목 중 교육실습 2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단, 특수교육을 부전공으로 이

- 수할 수 없으며, 2009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부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을 면제함
-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의 표시과목 또는 자격종별에 해당하는 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전공과목 30학점 이상(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38학점 이상)이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42학점 이상(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50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편성·운영할 수 있음
  - 전공과목에는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이 각각 14학점 이상(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각각 21학점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 '초등', '재활복지', '직업교육'의 경우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기본이수과목의 이수기준을 적용함
  - 다음의 경우에 중복학점을 인정함
    - 인정범위 : 특수교육 전공과목과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전공과목 15학점 이내
    - 인정학과 : 유아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직업특수교육과
    - 인정기준 : 과목명이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과 자격종별(또는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을 결합한 과목으로 교수요목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과목
- \* (예) : '특수유아 미술지도'(3학점)는 특수교육 관련 전공학점(3학점)과 유치원 관련 전공과목(3학점)으로 중복 인정 가능

**2)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

자격종별	검정기준	중복학점 인정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유아특수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관련 전공과목 30학점</li> <li>❖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li> <li>❖ 교직과목 20학점(유치원 교과교육영역 4학점 포함)</li> </ul>	15학점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li> <li>❖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li> <li>❖ 교직과목 20학점(초등 교과교육영역 4학점 포함)</li> </ul>	15학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 부전공이 아님</li> <li>❖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li> <li>❖ 교직과목 20학점(표시과목 교과교육영역 4학점 포함)</li> </ul>	불가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특수체육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0학점</li> <li>❖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li> <li>❖ 교직과목 20학점(체육 교과교육영역 4학점 포함)</li> </ul>	15학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직업교육 (직업특수교육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재활 관련 전공과목 30학점(또는 실업계 전공과목 30학점 + 해당 국가기술자격증)</li> <li>❖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li> <li>❖ 교직과목 20학점(표시과목 교과교육영역 4학점 포함)</li> </ul>	15학점

\* 단일학과 내 개설시 만 중복학점 인정

### 3)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자격종별	검정기준	중복학점 인정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유아특수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치원 관련 전공과목 38학점(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li> <li>❖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li> <li>❖교직과목 22학점</li> <li>❖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li> <li>❖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li> </ul>	15학점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li> <li>❖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li> <li>❖교직과목 22학점</li> <li>❖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li> <li>❖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li> </ul>	15학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8학점(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부전공이 아님</li> <li>❖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li> <li>❖교직과목 22학점</li> <li>❖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li> <li>❖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li> </ul>	불가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특수체육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li> <li>❖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li> <li>❖교직과목 22학점</li> <li>❖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li> <li>❖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li> </ul>	15학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직업교육 (직업특수교육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교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또는 (실업계 전공과목 38학점 + 해당 국가기술자격증)</li> <li>❖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li> <li>❖교직과목 22학점</li> <li>❖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li> <li>❖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li> </ul>	15학점

☞ 유치원·초등·중등의 구분없이 '특수교육과'로 승인된 경우 특수교육과 내에서 유치원·초등·중등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단, 이 경우 복수전공 이수인원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 나. 교직과정 이수자

### 1) 일반 원칙

-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특수학교(중등) 재활복지’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는 해당학과의 교육과정 내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이수학점(특수교육 및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을 모두 편성하고 이수하여야 함. 단, 동 대학 내의 특수교육과와 연계하여 이수한 특수교육 관련 전공학점은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수구분을 전공으로 할 수 있도록 대학 내에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직업교육’ 관련 전공과목의 검정기준은 30학점 이상(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38학점)이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42학점 이상(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50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2007.5.25)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개정(2007.10.26)에 따라 ‘치료교육’에서 ‘재활복지’로 표시과목이 변경된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재활복지’에 관한 기본 이수과목의 고시에도 불구하고 치료교육 관련 전공과목을 이수하여도 됨
  - ☞ ‘치료교육’으로 교직과정이 승인된 학과의 교직과정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폐지하며, 2007학년도 입학자까지만 특수학교(중등) ‘재활복지’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교직과정으로 운영이 가능함(관련근거 : 특수교육정책과-2503, 2007.6.19)
- 타 전공자(사범대학 재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가 복수전공으로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특수학교(중등) 재활복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과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0학점(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38학점) 이상과 교직과목 중 교육실습 2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단,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으며, 2009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부터 복수전공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을 면제함
- 전공과목에는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및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기본이수과목이 각각 14학점(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각각 21학점)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 ‘직업교육’에 관한 기본이수과목(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161호 참조)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함
- 다음의 경우에 중복학점을 인정함
  - 인정범위 : 특수교육 전공과목과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전공과목15학점 이내
  - 인정기준 : 과목명이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과 자격종별(또는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을 결합한 과목으로 교수요목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과목

#### ☞ [예시]

- ◆ ‘지체부자유아 직업적응훈련’ 과목을 개설한 경우 ‘특수교육(공통)’ 관련 전공과목 중 ‘지체장애교육’ 과목과 특수학교 정교사(2급) ‘직업교육’ 관련 전공과목 중 ‘직업적응훈련’ 과목으로 중복 인정이 가능함

**2)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중복학점 인정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또는 실업계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 해당 국가기술자격증)</li> <li>❖ 특수교육 전공과목 42학점</li> <li>❖ 교직과목 20학점(표시과목 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 포함)</li> </ul>	15학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교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또는 실업계 전공과목 38학점, 표시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해당 국가기술자격증)</li> <li>❖ 특수교육 전공과목 42학점</li> <li>❖ 교직과목 22학점</li> <li>❖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li> <li>❖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li> </ul>	15학점

**3) 특수학교(중등) '재활복지'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표시과목의 개정(2007.10.26) 이전의 '치료교육'에 해당함

구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중복학점 인정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li> <li>❖ 특수교육 전공과목 42학점 +</li> <li>❖ 교직과목 16학점(교과교육영역 4학점 제외)</li> </ul>	15학점
2006~ 2007학년도 입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복지(또는 치료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li> <li>❖ 특수교육 전공과목 42학점 +</li> <li>❖ 교직과목 16학점(교과교육영역 4학점 제외)</li> </ul>	15학점
2008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학과의 교직과정 폐지로 인하여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불가</li> </ul>	

**다. 교육대학원 졸업자**

**1) 운영의 일반 원칙**

-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2의2호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예정자는 반드시 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함

- 1996년 이전에 설립된 교육대학원으로서 2000년 이전까지 인가된 특수교육전공은 현직·비현직 교원에 상관없이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제2의2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입학하도록 하고, 각각 해당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음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의 범주】**

♣ **대학·산업대학의 범주**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중 '1. 대학'과 '2. 산업대학'만 해당하며, 그 외의 학교(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독학시험 및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자 등)는 해당하지 않음

♣ **특수교육 관련학과의 범주**

- 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학교(중등)의 표시과목(총 62개 : 일반중등 59개 표시과목 + 직업교육, 재활복지, 이료)에 해당하는 학과나 유아교육·초등교육 관련학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 부여받고자 하는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을 최소 38학점 이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교육 관련학과'의 범주에 포함함

☞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19호(2008.08.01)[구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161호, 2008.01.08) 제10조 참조**

- 1997년 이후에 설립된 교육대학원의 특수교육전공과 2000년 이후에 설치인가를 받은 모든 특수교육 관련 전공은 반드시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현직 교직원에 한하여 입학하도록 승인되었으며, 이들에 대하여 다음 기준의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음

- 제2의2호 자격기준에 따라 자격증 부여가 불가하므로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라도 제4호 및 제6호에 의한 교사자격증이 없는 자를 입학시킬 수 없으며,
- 제4호 및 제6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현직 교직원(기간제 교사 제외)에 한하여 입학하도록 하여야 함

☞ 제4호는 교원자격증이 있는 현직 교직원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임

☞ 제6호는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현직 교원(교사·교감·교장)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임

【교육대학원 입학 시의 현직 교직원 범위】

♣ 교육대학원의 신설 또는 전공 신설 인가 시의 ‘현직 교직원’의 범위

- \* ‘현직 교직원’이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직원(기간제 교원 제외), 교육행정·연수·연구기관 등의 정규 교직원을 의미함(교양81830-59, 2002.02.01)
-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및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직원과 타 법령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학교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직원(기간제 교원 제외)을 포함할 수 있음
- ☞ 단, 조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제2조 제2항 제6호 및 「국립학교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속하는 자만 해당하며, 사립대학의 정규직 조교가 아닌 대학원에 재학 또는 일반학과에서 일정액의 대가를 받거나 무급으로 교수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정규직 조교는 정규교직원으로 볼 수 없음

-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검정을 받고자 할 경우의 교육경력(교육대학원의 재학기간(휴학 및 수료 이후 논문작성 기간은 교육대학원의 재학기간에 포함됨)을 제외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1년 이상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임(종전 규정은 폐지))
- \* ‘치료교육전공’으로 설치 인가를 받은 전공은 2007학년도 입학자까지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활복지’로 표시과목을 부여할 수 있으나,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사자격증을 부여할 수 없음(관련 근거 : 특수교육정책과-2503, 2007. 6.19)

2)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및 자격증 부여방법

□ 제2의2호 자격기준 대상자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 전공과목 : 특수교육 관련 21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및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42학점 이상
- 교직과목 : 20학점 이상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전공과목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만을 입학하도록 하고,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학점은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이수하지 않음(관련근거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161호)

□ 제4호 및 제6호 자격기준 대상자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 전공과목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21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교육실습 2학점

☞ 2008학년도 이후 교육실습 대상자의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는 별도 규정에 의함 (p.64 참조)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전공과목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2008학년도 이후 교육실습 대상자의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는 별도 규정에 의함 (p.64 참조)

3) 자격증 부여 및 표기방법

○ 자격증 부여방법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 주전공과 부전공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전공과 부전공 표시과목 표기
-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각각의 교사자격증 부여(단, 교육대학원에 설치된 전공에 해당하는 자격종별만 부여 가능)

**【둘 이상의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무시험검정】**

- ▶ 둘 이상의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각각의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이미 졸업한 자에 대하여서도 추가로 무시험검정을 실시할 수 있음
- ▶ 단, 반드시 교육대학원 졸업 이전에 소지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에 대해서만 무시험검정을 실시하고 자격증을 부여하여야 함
-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소지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과목이 있더라도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과목을 부여하지 않음

○ 자격증 표기방법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 유치원 및 초등·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중등학교) 준교사
- 유치원 및 초등·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소지자 ⇒ 유치원 및 초등·특수학교(중등) 정교사(1급)

**4) 전공별 검정기준 : 2008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전공	자격기준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 기준
유아특수 교육전공	제2의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 전공과목 : 21학점 이상</li> <li>❖ 유치원 관련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li> <li>❖ 교직과목 : 20학점(유치원 교과교육영역 4학점 포함) 이상</li> </ul>
	제4호, 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 전공과목 : 21학점 이상</li> <li>❖ 교직과목 중 교육실습 2학점 이상</li> </ul>
초등특수 교육전공	제2의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 전공과목 : 21학점 이상</li> <li>❖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li> <li>❖ 교직과목 : 20학점(초등 교과교육영역 4학점 포함) 이상</li> </ul>
	제4호, 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 전공과목 : 21학점 이상</li> <li>❖ 교직과목 중 교육실습 : 2학점 이상</li> </ul>
직업특수 교육전공 (특수직업 교육전공)	제2의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 전공과목 : 21학점 이상</li> <li>❖ 직업재활 관련 전공 : 42학점(실업계 전공과목 30학점과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이상</li> <li>❖ 교직과목 : 20학점(표시과목 교과교육영역 4학점 포함) 이상</li> </ul>
	제4호, 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 전공과목 : 21학점 이상</li> <li>❖ 교직과목 중 교육실습 : 2학점 이상</li> </ul>
특수체육 교육전공	제2의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 전공과목 : 21학점 이상</li> <li>❖ 체육 관련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li> <li>❖ 교직과목 : 20학점(체육 교과교육영역 4학점 포함) 이상</li> </ul>
	제4호, 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 전공과목 : 21학점 이상</li> <li>❖ 교직과목 중 교육실습 : 2학점 이상</li> </ul>
치료교육 관련 전공	제2의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 전공 : 21학점 이상</li> <li>❖ 치료교육(또는 재활복지) 관련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li> <li>❖ 교직과목 : 16학점 이상</li> </ul>
	제4호, 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 전공 : 21학점 이상</li> <li>❖ 교직과목 중 교육실습 : 2학점 이상</li> </ul>

**5) 전공별 검정기준 : 2009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	자격기준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 기준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 직업특수, 특수체육 교육전공	제2의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 전공과목 : 30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포함) 이상</li> <li>❖ 교직과목 : 22학점</li> <li>❖ 졸업전체 평균성적 : 75/100점 이상</li> <li>❖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li> </ul>
	제4호, 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 전공과목 : 30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포함) 이상</li> <li>❖ 졸업전체 평균성적 : 75/100점 이상</li> <li>❖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li> </ul>
치료교육 관련 전공	<p>※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사자격증 부여 불가</p>	

### 3.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 가. 복수전공 무시험검정

##### ○ 검정대상

-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2007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 : 학칙에 따라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고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한 자
-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2008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 교육과학기술부 지침(복수전공 인원 제한)에 따라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고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한 자

##### ○ 검정기준

#####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

- 자격종별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특수교육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6학점(표시과목 관련 교과교육영역 4학점, 교육실습 2학점 포함)
- 성적기준 :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각각 평균 80점 이상(사범계학생이 사범계에서 복수 및 부전공하는 경우 제외)

#####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 자격종별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특수교육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예시(Ⅰ)】

♣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자가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타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 유아특수교육과 학생이 초등특수 관련학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2008이전 입학자 :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 교직과목 6학점(초등 관련 교과교육영역 4학점, 교육실습 2학점)

-2009이후 입학자 :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 50학점(초등관련 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

☞ 이 경우 무시험검정은 초등특수교육과에서 실시함

※ 초등특수교육과 학생이 중등특수 관련학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 중등 특수 관련학과에서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중등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전공학점(4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2008이전 입학자 : 중등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 교직과목 6학점 (표시과목 관련 교과교육영역 4학점, 교육실습 2학점)

-2009이후 입학자 : 중등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표시과목 관련 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

☞ 이 경우 무시험검정은 중등특수교육과에서 실시함

♣ 2008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부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가 가능함

【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예시 (Ⅱ)】

- ♣ 특수학교 이외의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자가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 ※ 유아교육과 학생이 유아특수 관련학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 2008 이전 입학자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 교직과목 2학점(교육실습 2학점)
      - 2009 이후 입학자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 ☞ 이 경우 무시험검정은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실시함
  - ※ 중등 표시과목 관련학과 학생이 중등특수 관련학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 2008 이전 입학자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 교직과목 2학점(교육실습 2학점)
      - 2009 이후 입학자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 ☞ 이 경우 무시험검정은 중등특수교육과에서 실시함
- ♣ 2008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부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가 가능함

나. 부전공 무시험검정

\* 검정대상

○ 학부 과정

-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특수학교(중등) 교사 자격증 취득예정자로서 중등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나 사범계학과에서 학칙에 따라 부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 2006~2007학년도 입학자는 부전공 이수를 가급적 제한하며, 인원 제한의 범위 내에서 복수전공 이수를 권장함(관련 공문서 : 교원양성연수과-111, 2007.03.26 참조)

☞ 「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2007.12.20)에 따라 2008학년도 입학자(2010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는 학부(대학)에서의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이 절대 불가함

○ 교육대학원

- 특수학교의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제외)으로서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육대학원의 전공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로서 중등학교 또는 특수

학교(중등)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 검정기준**

- 학부 과정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 표시과목별 전공과목 30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4학점(교과교육영역 4학점)
- 학부 과정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표시과목별 전공과목 38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교육대학원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 표시과목별 전공과목 24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4학점(교과교육영역 4학점)
- 교육대학원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표시과목별 전공과목 30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및 5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 및 2과목 이상 포함)

**【부전공 이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의 사례】**

- ♣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이 불가하며, 타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자도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관련학과에서 부전공 이수 자체가 불가함
- ♣ 일반학교(중등)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특수학교(중등)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나 특수교육 관련 사범계학과에서의 부전공 이수 자체가 불가하며, 복수전공만 가능
- ☞ 부전공 표시과목은 중등학교(특수학교 중등 포함) 교사자격증에만 표시 가능

## VIII.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

[관련근거]

1.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대상
2.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기관
3.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기준
4.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
5. 실기교사 표시과목 결정(변경) 신청 및 승인

## VIII.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 실기교사 자격기준

자격종별	자격기준
실기교사	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난에서는 같다) 졸업자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이수한 자,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자 2.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예능, 체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이수한 자 3.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의 졸업자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 비고	
4. 실기교사란 중 실업계 실기교사는 국가기술자격종목이 있는 과목은 해당종목의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교원자격검정령」

✦ 제22조(실기교사 기능)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의 자격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과계의 기능 또는 그 밖의 기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과목을 전공하여 습득한 기능으로 한다.”

✦ 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등) ③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연수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12조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① 검정령 제4조제3항·제1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사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31>

③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을 요건으로 하는 실기교사의 무시험검정에 있어서는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방법론의 2과목(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13조 (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②제1항에 따른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은 2급의 경우 21학점이상, 준교사 및 실기교사의 경우 6학점 이상으로 한다.<2007.12.31>

✦ [별표 3]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자격종별	전공과목	교직과목
실기교사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4학점(2과목) 이상 -교직이론

## 1.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 중 실기교사 자격기준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대상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대학·전문대학·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고등기술학교의 실기교사 관련학과 졸업자
    - ☞ 관련근거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5호(2004.6.9) 등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표시과목 결정승인을 받은 학과(전공)의 졸업자
    - ☞ 관련근거 : 대학 및 학과별 '실기교사 표시과목 결정승인 통보' 공문

## 2.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기관

-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 대학의 장
-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 졸업자 : 시·도 교육감

## 3.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기준

###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 전공 관련 과목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 교직 관련 과목 : 4학점(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 국가기술자격증 : 실업계과목은 그 과목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있는 경우 기능사(기초사무분야의 경우 2급 이상)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전공 관련 과목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 교직 관련 과목 : 4학점(2과목 :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 국가기술자격증 : 실업계 표시과목은 그 과목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있는 경우 기능사(기초사무분야의 경우 2급 이상)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 ☞ 국가기술 자격종목 관련 참고사항

- 실기교사의 표시과목 중 실업계에 해당하는 표시과목 :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해운계, 가사·실업계에 해당하는 표시과목
- 실기교사 표시과목 해당 국가기술 자격종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제4조 관련)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제6조 관련)에 한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의한 국가기술 자격종목이 실기교사 표시과목 해당 국가기술 자격종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시과목과 그 자격종목과의 상관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에 한함(양성 81810-282 : 1993.5.6)

### 【실기교사 자격검정 시 유의사항】

- ♣ 국가기술자격증은 대학 입학 전에 취득한 경우도 유효하며, 무시험검정을 실시할 때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의 개정에 의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기가 수시검정으로 바뀜에 따라 대학 졸업 후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기교사 자격검정 신청이 가능함
  - ☞ 이 경우 당시 해당 학과에서 실기교사 자격증을 부여하였는지의 여부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한 후에 현 대학의 장이 현재 발급일을 기준으로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부여하며, 이후 업무절차는 신규 발급자에 준하여 처리함
- ♣ 둘 이상의 표시과목과 관련되는 학과이더라도 하나의 표시과목만 부여하여야 하며, 복수전공에 의하여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은 불가함

## 4.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

- ‘실기교사 표시과목의 관련학과’에 포함된 학과의 학생으로서 실기교사 자격검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자격증을 발급하되, 정원 내·외 입학자 모두 발급 가능함(교양81834-500, 2001.08.22)
  - ※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인정 각종학교는 개정 법률의 시행 시기가 1996년 3월 1일부터이므로 1996학년도 졸업자부터 실기교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음
-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의 경우는 학교의 장이 시·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 시·도교육감이 발급
-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관련 서류
  - 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②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심사 내역표 : 서식 9-1
  - ③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 : 서식 10
  - ④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자 총괄표 : 서식 11
  - ⑤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자 명부 : 서식 12
-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자 명부 제출 : 발급 후 20일 이내에 NEIS에 입력하며, 별도 제출 요구 시에만 다음의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함
  - ①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자 총괄표 1부 (서식 11)
  - ②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자 명부 1부 (서식 12)
  - ※ 표시과목의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는 교육부의 표시과목 결정승인 공문의 문서번호와 시행일자를 총괄표(서식 11)의 비고란에 기재할 것

## 5. 실기교사 표시과목 결정(변경) 신청 및 승인

- \* 실기교사 양성과정은 '교직과정'이 아닌 '실기교사 표시과목 결정승인'으로 운영되며, 관련 법령(「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에 따라 2006학년도부터는 관련학과의 경우도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실기교사가 수요에 비하여 과다하게 양성·공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현장에서의 실기교사의 신규수요가 거의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표시과목 결정승인을 가급적 억제함

### 가. 실기교사 표시과목 결정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5. 1 ~ 5. 31
- 신청대상 : 실기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자 하는 학과
- 승인기준 : 객관적으로 해당 표시과목을 부여할 수 있는 관련학과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승인요건(교육과정 편성 및 전임교원 확보)을 충족하여야 함
- \* 신규설치 신청은 당해 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청하여야 함

#### ○ 제출서류

- ① 표시과목 결정(변경) 신청서(부록 서식 6)
- ②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표
  - 고시된 기본이수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은 적색 밑줄 표시
  -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부록 서식 14) : 고시된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과 명칭은 다르나 교과내용은 일치되는 경우 제출
- ③ 전공과목 전임교원명단(부록 서식 3)

#### ▶ 신규설치 신청 양식 ◀

대학교명	설립구분	학과(전공)	표시과목	전공 전임교원수	교직 전임교원수	입학정원	적용 입학년도

### 나. 실기교사 표시과목 변경 신청

- 신청대상 : 학과 통합이나 학과 명칭 변경 등으로 표시과목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학과
- 승인기준 : 표시과목 결정 신청 시와 동일
- 제출서류 : 신규설치 신청과 동일

#### ▶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재승인 신청 양식 ◀

대학교명	설립구분	학과(전공)	현행 표시과목	변경 표시과목	신청 사유	적용 입학년도

**다. 학과명칭 변경 보고**

- 신청대상 : 교육과정의 변경 없이 단순히 학과명칭이 변경된 학과
- 승인기준 : 교육과정의 변경 없이 단순히 학과명칭이 변경되고, 학과의 명칭이 객관적으로 해당 실기교사 양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학과
- 제출서류
  - ① 학과명칭 변경 보고서(부록 서식 6 참조)
  - ②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표 : 교육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학과명칭 변경보고 양식 ◀**

대학교명	설립구분	학과(전공)	현행 표시과목	변경후 학과(전공)	교육과정 변경유무	적용 입학년도

**라. 기타 행정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지정한 기본이수과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학교의 장까지 결재를 받아 근거서류로 비치해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에는 보고하지 않음. 단,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실기교사 표시과목 결정승인 신청 관련 유의사항】**

- ♣ 「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438호, 2006.4.6)의 개정 : 법 개정 이전에는 교육인적자원부고시에 의한 실기교사 표시과목 관련학과의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 자격증 부여가 가능하였으나, 2006년 3월부터 신설되는 학과 중 실기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든 학과는 '관련학과'의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 제3항**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이한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연수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경과조치 :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 제3항의 개정 이전에 실기교사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표시과목 결정승인을 받은 학과로서 실기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던 대학의 학과는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2007년도부터 신설되거나 학과명칭이 변경되는 학과는 관련학과 여부에 상관없이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IX. 시험검정



---

1. 시험검정의 대상

---

2. 시험검정의 시행

---

3. 시험검정의 방법

---

4. 시험검정의 내용

---

5. 시험검정의 합격기준

---

6. 시험검정의 응시자격

---

7. 응시 구비서류

---

## IX. 시험검정

### 1. 시험검정의 대상(「교원자격검정령」 제24조)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기준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 「유아교육법」 [별표 2]의 유치원 준교사 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기준에 의한 자격검정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자격검정

### 2. 시험검정의 시행(「교원자격검정령」 제25조)

-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한 경우에 시행
- 시험 공고 : 시험 시행 30일 이전에 시험의 일시, 장소, 응시자격 등을 정하여 공고  
(관련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9조)

### 3. 시험검정의 방법(「교원자격검정령」 제26조)

- 시험검정은 학력고사와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학력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를 받을 수 있음

### 4. 시험검정의 내용(「교원자격검정령」 제27조)

- 학력고사 :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과목에 관한 학력을 고사  
(관련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2조)

검정대상 자격별	고사과목	내 용	시 간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시험검정	교 육 학	·교육원리, 교육사,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및 과목지도법의 기초영역	60분
	전공과목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수영역	120분
실기교사 자격시험검정	교 육 학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 방법론의 기초영역	60분
	전공과목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수영역	120분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시험검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 과목(도덕·국어·사회·수학·자연·체육·음악·미술·실과) · 교육대학 졸업정도의 수준		200분
유치원 준교사 자격시험검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 과목(사회정서발달영역·인지발달영역·언어발달영역·신체발달영역·건강영역) · 전문대학 졸업정도의 수준		120분

- 실기고사 :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실기능력을 고사
- 구술고사 : 교사로서의 인성·적성 및 자질을 고사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1조, 1997.12.5)

▶ 시험검정 응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에 의하여 면제 가능

검정종별	면제대상자	면제과목
중등학교 준교사	1. 각급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전문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1급 이상의 자격취득자 3.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 4.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농업·공업·상업·수산·해운계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그 전공학과에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실기고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예·체능계대학(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전공과정의 성적평균이 80점 이상이거나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자 가. 체육 : 공인된 전국규모대회에서 단체경기는 준결승이상, 개인경기는 6위까지 입상하였거나 국제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음악 : 국내외의 공인된 음악단체가 인정하는 발표회에서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 미술 : 국제전·대한민국 미술대전 또는 상공전에서 입선된 자	교 육 학 전공과목 실기고사 교육학· 실기고사 전공과목 실기고사
특수학교 준교사	○ 각급학교 준교사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특수교육 실기고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	교 육 학 교 육 학 실기고사
실기고사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2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	실기고사

**5. 시험검정의 합격기준(「교원자격검정령」 28조)**

- 학력고사 : 과목마다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 : 고사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고사마다 40점 이상

**6. 시험검정의 응시자격(「교원자격검정령」 제29조)**

-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함(시험검정 대상 중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 교사 자격기준 중 제3호에 의한 자격검정 제외)

**※ 응시자격의 제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7조)**

-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기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 중,
  - 남자 교련 담당교사의 자격시험검정 : 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편입 예정 장교
  - 여자 교련 담당교사의 자격시험검정 : 퇴역여군장교·퇴역예정장교 또는 간호계·보건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7. 응시 구비서류(「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8조)**

-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를 교육감에게 제출
- 제출서류
  -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첨부서류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 또는 퇴역예정증명서(교련과목 응시자에 한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X. 질 의 응 답



---

1. 자격기준

---

2. 교원자격검정

---

3.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원자격검정

---

4.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의  
교원자격검정

---

5. 교원자격증

---

## X. 질 의 응 답

### 1. 자격기준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관련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교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별표1], [별표2]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자격검정을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하여 교원자격증을 수여하므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여 모두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나.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

- ☞ 외국인도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의 졸업, 또는 교직과정의 이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이 경우 자격증의 성명란에는 본인의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됨. 그러나 외국인은 헌법에 따라 공무담임권이 없어 국·공립학교의 정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자격과 임용은 별도의 문제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함

다. 외국에서 취득한 외국의 교사자격증은 국내에서 인정이 되는가?

- ☞ 우리나라 국민 또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취득한 외국의 교사자격증은 인정이 되지 않음. 다만, 외국의 대학(대학원 포함)을 졸업하고 국내의 교육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관련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은 인정이 가능함

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8호 규정의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에서 교육대학과 전문대학 외의 대학은 해당하지 않는가?

- ☞ 교육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교원(비현직 포함)만 해당하며, 이 외의 대학교원은 해당하지 않음

마.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3호 규정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에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전·후 교육경력이 모두 포함되는가?

- ☞ 교육경력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을 감안할 때,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3호 규정 중 '3년 이상의 교육경력'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이후의 교육경력만 해당됨(교양81830-288, 2002.04.23)

바.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의 표시과목 중 '직업교육'은 어떤 학과에서 표시가 가능한가?

- ☞ 학부의 경우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예정자 중 실업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특수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직과정이 개설된 직업재활 관련학과를 졸업한 경우 실업계 표시과목 대신 '직업교육'의 표시과목 부여가 가능함 또한, 교육대학원의 경우 학부에서 실업계 표시과목 관련 전공을 졸업하고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이 있거나, 직업재활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특수교육전공에 진학한 경우 해당 자격증 부여가 가능함

사. 특수학교 정교사(1급)자격기준 제4호 규정의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의 범위는?

- ☞ 2006년 3월 1일 이후 자격검정을 신청하는 자부터는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포함)에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도록 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2008.3.18)에 따라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근무한 경력을 모두 인정하며, 2006년 3월 1일 이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무시험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소급하여 무시험검정을 실시함(자격증 발급일은 실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아.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 제1호 규정 중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어떤 경력을 포함하는가?

- ☞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상응하는 학교급에서 전임(기간제 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교육경력만 해당함. 즉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학교급이 다른 초등학교나 대학 등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교원양성기관에서 동일한 표시과목의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

- ☞ 이미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교원양성기관에 편·입학하여 동일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이 가능함

## 2. 교원자격검정

가. 전문대 간호과를 졸업하였으나 졸업 당해년도에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듬해에 면허증을 취득했을 경우,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

-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1항의 개정으로 교원자격검정을 수시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졸업 이후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간호사면허증 등을 취득한 경우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여 교사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음. 단, 이수과목 및 학점 등의 여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반드시 해당 교원양성기관을 졸업 전에 갖춘 경우에만 인정됨

나. 대학(사범대학 포함)·전문대학에서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은 어떻게 지정하고 운영해야 하는가?

- ☞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에서 고시한 기본이수과목 중에서 기본이수과목을 지정하여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도해야 함. 이 때 고시된 기본이수과목에 상응하는 과목으로 변경하거나, 고시된 기본이수과목 내에서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학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학장의 기본결재를 받아 정하되,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함

다. 산업체 현장실습에서 산업체의 범위는 무엇이며, 대학 입학 이전 전공기술분야 해당 산업체 근무경력 등을 중등학교 정교사(2급) 공업계 표시과목의 무시험검정 합격요건인 산업체 현장실습으로 인정이 가능한가?

- ☞ 대학 입학 이전 산업체 근무경력은 양성과정에 들어오기 전의 경력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실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이 불가함

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자격증을 가진 자가 교직과정이 개설된 일반대학 국문학과에 편입학하여 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

- ☞ 가능함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7호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에 신규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가 전공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고, 해당 표시과목 ‘교과교육영역’을 4학점이상 이수” 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는 무관하게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마. 대학에서의 무시험검정 업무 중 교원자격증 발급 및 발급대상 보관관리 등의 업무를 단과대학에서 처리해도 되는가?

- ☞ 단과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서는 교원자격증 발급대상자 자격검정 후 본부(교무처 또는 교무과)에 발급의뢰를 하고, 교원자격증 발급대상자 최종 확정, 교원자격증 발급 및 발급대상 보관관리 등의 업무는 본부(교무처 또는 교무과)에서 총괄 처리해야 함

바. 실기교사 자격검정 시 합격요건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이 그 명칭이나 종목의 삭제로 없어졌을 때의 실기교사 자격검정은?

- ☞ 국가기술자격증의 명칭이나 종목이 변경되거나 삭제되고, 유사한 자격증이 신설(예 : 폐지된 부기2급 대신 전산회계2급)될 경우 신설된 자격증을 인정할 수 있음. 단, 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함(민간자격은 제외)

바. 국가기술자격증을 졸업 전에 취득하지 못하여 실기교사 자격검정에 불합격한 자가 졸업 후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신청이 가능한가?

- ☞ 대학을 졸업한 후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실기교사 무시험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실기교사 자격증 부여가 가능함

사. 이미 표시과목 결정승인을 받아 실기교사자격증을 발급하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 이미 표시과목 결정승인을 받아 실기교사자격증을 발급하던 학과라도 학과명칭이 변경되고 교육과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표시과목 결정승인을 받아야 하나, 교육과정의 변동 없이 학과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면 됨

아. 전문대 유아교육과 졸업자 중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 실기교사(보육) 자격증 발급이 가능한가?

- ☞ 전문대 유아교육과의 졸업자 중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전공 및 교직과목의 평균이 80점에 미달되어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 **실기교사(보육) 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즉,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방법론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그러나 취득학점의 미달(전공과목 42학점, 교직과목 16학점)로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 실기교사(보육) 자격증 발급은 불가함

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검정은 어떤 경우에 시행되는가?

- ☞ 시험검정은 교사의 자격종별과 표시과목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교사자격증 취득자가 양산되고 있어 시험검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3.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원자격검정

가. 학부제 시행에 따라 학생정원을 모집단위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전공별 이수인원이 유동적인데 표시과목 관련 전공별로 정원을 정해야 하는가?

- ☞ 교사양성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교사의 질 제고를 위해 교직과정 설치 신청 시 표시과목 관련 전공의 정원을 정하여 신청하고, 승인 후에도 전공별 정원을 유지하고 교직과정 이수인원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함

나. 현재 교직과정 설치학과가 다른 학과와 통합되거나 학부제 운영으로 학과(전공)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 교육과정 내용의 변화 없이 단순히 단과대학의 소속이 변경되거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사실을 보고하고 교육과정이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신규대조표를 첨부해야 함(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명시). 소속이나 명칭과 더불어 교육과정이 변경되는 경우 교직과정 설치 재승인을 받아야 함

다. 대학의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편입한 학생의 경우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가?

- ☞ 교직과정 이수희망자는 2학년 중에 교직과정이수신청을 해야 하므로 3학년에 편입하는 학생의 경우 교직과정이수가 불가함. 다만 다른 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가 동일한 학년 및 학과에 편입학했을 때 전적학교의 이수학점을 인정하여 정해진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있고, 사범대학·대학 교육과에서 편입한 학생의 경우나 복학생의 경우도 동일함

라. '98년 표시과목 '전자계산기'로 승인 받아 운영 중인 컴퓨터공학과에 입학, '99년 교직과정 이수를 신청하여 선발되었던 A학생이 군 입대 휴직 후 2002년 복학하여보니 2000년 입학자부터 표시과목이 '정보·컴퓨터'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을 경우, A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 ☞ A학생이 '전자계산기'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수하는 과정은 2000년 입학자와 동일한 '정보·컴퓨터' 과정이므로, 이 교직과정을 이수한 A학생에게는 '정보·컴퓨터' 자격증이 발급되어야 함

마. '사회(역사)' 자격증 소지자가 임용시험에서 '공통사회' 과목 응시가 가능한가?

- ☞ '사회(역사)' 자격증소지자는 '공통사회', '역사' 자격증 소지자로 간주하므로 임용시험에서 '공통사회'나 '역사'로 응시가 가능함

바. 야간과정 또는 산업체위탁교육과정에도 교직과정을 설치·승인 받아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한가?

- ☞ 야간과정에 교직과정 설치 불가. 교직과정 개설 학과인 간호과나 유아교육과 등의 경우 산업체위탁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해야 함

사. 교직과정 이수자의 자격검정 시 평균성적을 산출할 때 전공과목의 경우 자격취득에 필요한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인 42학점에 대해서만 평균성적을 산출하는가?

- ☞ 교직과정 이수자의 자격검정 합격요건인 '교직과정의 과목(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인 자'에서 전공과목은 교원자격검정대상자가 이수한 전공과목 전체의 평균성적을 의미하며, 42학점에 대해서만 평균성적을 산출해서는 안 됨

아. 2년제로 운영하던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가 3년제로 되면서 교직과정의 변동이 있고 입학정원이 감소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 교직과정의 변동이 있더라도 학과명칭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재승인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기본이수과목, 교직과목 등은 유지되어야 함. 따라서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교원양성기관현황 제출 시 변경된 학제와 입학정원으로 보고하면 됨

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이 완료된 후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추가선발이 가능한가?

- ☞ 제적에 의한 결원 발생 시 3학년 1학기 종료 전까지는 추가 선발이 가능하나, 반드시 기존의 신청자 중에서 순위대로 선발하여야 함. 단, 휴학으로 인한 결원은 보충할 수 없으며, 최초 선발 시 승인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3학년 1학기가 개시된 후에는 추가 신청을 받아 추가선발을 할 수 없음

#### 4.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의 교원자격검정

가. 2002년 이전에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보건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방송통신대에서 국어국문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사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에 입학했을 경우, 교사자격증 소지자이므로 교직과목 면제가 가능한가?

-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학부에서의 교직과목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교직과목의 이수를 면제함. 다만, 교과교육영역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이수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나. 학부 재학 시 교직과목을 수강했으나 교직과정 이수자가 아니어서 성적증명서에는 '일반선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교직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 교직과정이 승인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일반선택' 또는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만 인정됨. 단, 출신대학에서 해당 과목이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발부해 주어야 인정이 가능함

다. 학부에서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과목을 교육대학원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 학점인정 대상 교육기관의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전공'으로 이수한 과목에 한해서만 인정 가능하며,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함

라.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학부에서 취득한 전공 및 교직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한데 이때의 업무 절차는?

- ☞ 교육대학원 지원자의 성적표를 제출 받아 해당 전공의 지도교수로 하여금 전공으로 이수한 학점 중 표시과목의 관련 전공으로 인정이 가능한 학점을 판단하게 하고, 이를 지원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진학 여부를 본인이 판단하게 하여야 함. 이때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서식15)를 활용할 수 있음

마. 학부에서 유아교육과 무관한 전공을 한 사람이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여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

- ☞ 학부에서 취득한 유아교육 관련 전공학점을 교육대학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므로 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바. 교육대학원 재학 중에 타 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교 등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선수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 인정불가. 학부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졸업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만 인정이 되고, 선수과목의 이수도 교육대학원이 소속된 대학의 학부에서만 가능하며, 재학 중 타 대학이나 방통대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 불가함

사.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 합격요건은 무엇인가?

- ☞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공 21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이상)을 이수해야 함. 기본이수과목의 경우에도 장애영역별로 과목을 고르게 이수하여야 함

아. 사서교사의 경우 학부나 교육대학원에서 부전공과정을 이수하여 부전공과목 표시가 가능한가?

- ☞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의 자격종별은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으로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며, 부전공에 의한 교사 자격 취득이 불가함. 다만, 위에 해당하는 교사가 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을 별도로 소지한 경우 동 자격증에 부전공과목 표시가 가능함

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한 자에게 표시과목 '상담' 부전공표시와 동시에 전문상담교사자격증 발급이 가능한가?

- ☞ 불가함.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부전공 표시와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발급을 동시에 할 수 없으며, 두 개의 자격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함

차.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 다시 비학위과정에 들어가거나 석사학위 연계과정에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가?

- ☞ 전문상담교사 자격제도의 기본 취지는 현직교사 등에게 상담전담교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갖춘 자에게 전문상담교사자격을 부여하여, 학교현장에서 상담전담교사로 활용하는 데 있으므로, 승진을 위한 성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 등으로 동 양성과정을 중복 이수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그러므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중복이수 금지를 위해 2002년 3월 입학자부터 연수지명을 받도록 함으로써 비학위과정의 이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 연계과정을 통하여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함

카. 2급 이상의 유치원이나 사서·영양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가?

- ☞ 「초·중등교육법」의 개정(2007.8.)에 따라 2급 이상의 유치원이나 사서·영양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을 통하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단, 현직교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학위과정은 2009학년도까지만 운영하며, 석사학위 연계과정은 계속 운영함

타. 2년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이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비학위과정 및 석사학위 연계과정)에 입학하여 동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검정 시 대학원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교육경력이 4년이므로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

- ☞ 재학생의 대학원 재학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중복 인정은 불가하므로, 교육대학원의 졸업 시 교육경력이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에 미달하여 자격 취득 불가함. 그러나 교육대학원의 졸업 후 부족한 교육경력을 보충한 경우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 검정신청을 하여 자격 취득이 가능함

파. '과학(생물)' 자격증(2급) 소지자가 교육대학원의 공통과학교육전공을 졸업할 경우 '공통과학'을 부전공으로 표기해 주어야 하는가?

- ☞ 원칙적으로 부전공 표시는 불가함. '과학(생물)' 자격증(2급) 소지자는 '공통과학'과 '생물' 자격증(2급)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교육대학원의 재학 기간을 제외하고 '공통과학' 교과목의 지도경력이 1년 이상 경과할 때 시·도교육청에 '공통과학' (1급) 정교사 자격 검정 신청을 하여 자격취득이 가능함

하.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가 아닌 학점은행제나 독학사, 원격대학의 졸업자가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동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교육대학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가?

- ☞ 「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2004.9.17)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외에도 타 법령에 의하여 대학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등에서 취득한 전공학점도 인정이 되나, 특수학교 교사자격기준의 경우에는 대학 및 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어(「초·중등교육법」 제21조 관련 별표 2 특수학교 교사자격기준 제2의2호) 인정을 받을 수 없음. 또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라도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학부과정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은 인정이 불가함

거. 전문대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하여 영문학을 전공한 후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에 입학하려는 경우 동일계열로 볼 수 있는가?

- ☞ 교육대학원 입학의 경우 전문대에서 전공한 학과나 4년제 편입대학에서 전공한 학과 모두 입학가능(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모두 가능함)

## 5. 교원자격증

가.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한 경우(중등교사 자격기준 제7호 규정)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통하여 복수자격이나 부전공자격 취득이 가능한가?

- ☞ 7호 기준에 의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편입학한 경우 편입학이 쉬운 학과에 편입한 후 타 학과에서 복수나 부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한 경우나 교육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복수나 부전공 이수가 불가함

나. 학과(전공)별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인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 교원자격증 복수자격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 및 부전공자의 학과(전공)별 이수 인원의 제한을 통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원 양성의 질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다. 중등 교직과정 이수자가 사범대학 또는 사범계학과에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을 하였을 경우 어느 자격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 ☞ 교직과정 이수자가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사범계학과나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하였을 경우 모두 5호 기준(21-2-5)을 적용하고, 사범대학 또는 사범계학과 재학생이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사범계학과에서 복수전공을 취득한 경우에는 1호 기준(21-2-1)을 적용하며,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취득한 경우에는 5호 기준(21-2-5)을 적용함(2007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 이때, 교직과정에 의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기준을 적용하여 합격자에 한하여 복수전공(부전공 포함) 교사자격증을 수여하여야 함.

라. 교직복수전공과정인 연계전공의 설치는 단일학과에서도 가능한가?

- ☞ 연계전공은 반드시 2개 이상의 관련학과가 연계하여 개설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일학과에서는 연계전공을 운영할 수 없음. 단, 하나의 학과 내에 2이상의 하위 전공으로 세분화되어 승인 받은 학과에서는 전공 간 연계전공의 구성이 가능함

마. 연계전공은 누구나 이수할 수 있는가?

- ☞ 연계전공을 구성하는 학과 중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일반사회, 지리, 역사, 교육학, 철학, 기술, 가정'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관련학과의 전공자(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해당 연계전공 이수가 가능함. 그러나 관련학과를 복수 또는 부전공하거나 관련학과의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연계전공 이수가 불가함

바. 복수전공자(또는 부전공자)의 경우 교육실습을 제2전공으로만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가?

- ☞ 가능함. 자격증의 학교급별이 같은 복수전공자(또는 부전공자)의 경우{중등-중등, 특수(중등)-특수(중등)}에는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부전공)으로 교육실습이 가능하며, 2008년도 교육실습 대상자부터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에도 주전공(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으로 한번만 교육실습을 실시함

사. 복수 및 부전공자가 해당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교원자격 검정 및 자격 부여가 가능한가?

- ☞ 불가능함. 복수 및 부전공 자격검정은 해당학위를 취득한 졸업자를 대상으로 검정해야 하므로, 복수 및 부전공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검정 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주전공 자격검정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복수 및 부전공 자격 검정대상에서 제외됨

아.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기준 3호중 '관련분야'의 범위는 무엇인가?

- ☞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 3호 기준과 같이 졸업과 경력을 동시에 요하는 자격의 경우 표시과목 관련학과의 전공학점 기준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아니하며, 객관적으로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표시과목과 관련학과로 인정되는 경우 졸업학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반드시 교원양성기관을 졸업하지 않아도 됨)

자. 추천검정(자격인정)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부관이 설정된 교장(원장)자격증 발급보고는 어느 시점에 해야 하는가?

- ☞ 자격인정에 의해 부관을 설정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교원자격증발급대장에만 기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는 보고하지 않음. 부관이 삭제된 후에 교육과학기술부로 서면보고하고 NEIS에 입력하여야 함

차. 민원인의 입장에서 자격증의 재교부·정정 및 영문 교원자격증 발급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는가?

- ☞ 자격증을 실제로 발급한 기관에 우선 신청해야 하며, 과거 문교부나 교육부에서 발급한 경우 또는 그 외에 부득이한 경우 시·도교육청으로 신청함

## XI. 부 록

---

1. 각종 서식

---

2. 교원자격증 기관부호

---

3. 관련 법령 모음

---

4. 관련 고시

※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161호

---

※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5호

---

※ 교육부고시 제2000-1호

---

※ 교육부고시 제1997-11호

---

※ 실기교사 표시과목 해당 국가기술자격종목

---

5. [예시] 연계전공 교육과정

---

XI. 부 록

1. 각종 서식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07.03.14]  
(시·도교육청 발행 예시)

교원자격증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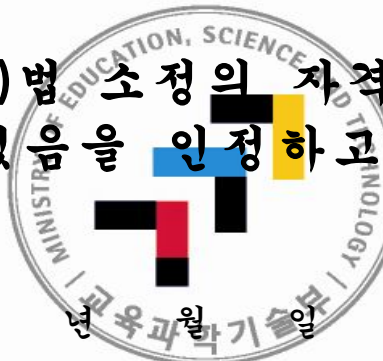
제 호
<b>교원 자격증</b>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격
( )법 소정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위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 여함
 <b>교육과학기술부장관</b>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한 권한의 위임을 받아
<b>교육감</b>
1. 검정종별 : 무시험검정 또는 시험검정 2. 법정해당 자격기준 전 공 : ( )법제( )조 별표( ) 자격기준 제 호 부전공 : ( )법제( )조 별표( ) 자격기준 제 호 3. 수여조건 : 해당없음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07.03.14]

(4년제 대학 발행 예시)

교원자격증 서식

제 호
<h1>교원자격증</h1>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격
( )법 소정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위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 여함
 년 월 일
<h2>교육과학기술부장관</h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한 권한의 위임을 받아
<h2>대 학교 총 장</h2>
1. 검정종별 : 무시험검정
2. 법정해당 자격기준 전 공 : ( )법제( )조 별표( ) 자격기준 제 호 부전공 : ( )법제( )조 별표( ) 자격기준 제 호
3. 수여조건 : 해당없음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07.03.14]

(교육대학교 및 전문대학, 시·도교육청 초등교원용 발행 예시)

교원자격증 서식

제 호

교원자격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격

( )법 소정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위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  
여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의한 권한의 위임을 받아

대학교총장  
(대학장)

- 1. 검정종별 : 무시험검정
- 2. 법정해당 자격기준  
( )법 제( )조 별표( ) 자격기준 제 호
- 3. 수여조건 : 해당없음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06.06.08)

**자격연수 이수자명단 통보**

**기 관 명**

수 신  
 (경 유)  
 제 목 : 자격연수 이수자 명단통보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격연수이수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①소 속	②성 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연 수 과정명	⑤연 수 기 간	⑥표 시 과 목	⑦성적	⑧비고

끝.

발신명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교장(원장)자격인가 추천검정원서**

신청인 (출원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사진 (3cm×4cm)
		한문				
	소지자격			현직명		
	학력			경력	교육경력(년) 교육행정경력(년) 계(년)	
신청자격		<input type="checkbox"/> 중등학교교장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교장 <input type="checkbox"/> 특수학교교장 <input type="checkbox"/> 유치원원장				
취임 예정 학교	학교명			설립연월일		
	소재지					
	편성학급수			인가학급수		
	소지자격별 교원수	교감( ), 1급정교사( ), 2급정교사( ), 준교사( ), 기타( ), 계( )				
	학교법인명			학교설립자		
인정기준 중 해 당 사 항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및 별표 1( ) 학교교장(원장) 인정기준 제 호 목					
학교(법인)와의 관 계						
학교법인이사장의 추 천 사 유	학교법인명      인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격검정을 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출원 합니다.					수수료	
					1,000원 (수입인지)	
년      월      일 신청인(출원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sup>2</sup>]

[별지 제7호의2 서식] (개정 2006.06.08)

(앞쪽)

신 상 명 세 서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문:		전 화 번 호			
주 소						
병 역	필·미필·면제·기타		종교	취미		
재산사항	동 산	만 원	부동산	만 원	재산총액	만 원
신체사항	신 장		체 중		혈액형	건강상태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직 업	비 고
학 력	기 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 위	
소지자격 (최초부터)	자 격 명	발급연월일	발 급 번 호	발 급 기 관	비 고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의3 서식] (개정 2006.06.08)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명부**

대학(교)

학과

순번	학위 등록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평균성적		입학 연도	졸업 연도	자격 종별	표시과목		교직과정 이수예정 자명부작 성년월일	합격 여부
				전공	교직				전공	부전공		

297mm×210mm[보존용지(2중) 70g/m<sup>2</sup>]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06.06.08)

## 교직과정 설치승인 신청서

### 기 관 명

수 신  
(경 유)  
제 목 교직과정 설치승인 신청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승인을 신청합니다.

①학과명	②표시과목	③학생정원 (입학정원)	교 수 현 황		비 고
			④전 공	⑤교육학	

- 붙임 : 1. 교육과정 1부  
 2. 병설(협력)학교설치증명서(교육감 또는 교육장 발행) 1부  
 3. 전공 및 교직과목 전임교원명단 1부. 끝.

### 발신명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 수 일 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m<sup>2</sup>]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06.06.08)

**교원자격 시험검정원서**

<b>교원자격 시험검정원서</b>					사 진 (3cm×4cm)
성명	한 글		주민등록 번호		
	한 자				
주 소		(전화 : )			
출신 학교명					
출원 자격		( )교사	표시과목		
응시 과 목					
면제 과 목					
<p>「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원자격검정을 받고자 출원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출원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감 귀하</p>					
구비서류: 1. (삭제 99.1.29) 2. (삭제 99.1.29) 3. 시험과목면제대상사실증명서(시험과목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수 수 료  500원	

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

[서식 1]

### 교직과정 이수신청서(예시)

(        )학과 (        )학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다음과 같은 교사자격기준에 의하여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신청합니다.

1.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2.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에 대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그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전체 평균 75점 이상)이어야 함

년    월    일

학과장	인
학부모	인
신청자	인

○○대학(교) 총(학)장 귀하

[서식 2]

교육실습 병설(협력)학교 지정증명서

병 설 (협력) 학 교			실 습 학 생			
학 교 명	학 급 수	소 재 지	대 학 명	학 과 명	실습교과	실습예정인원

위와 같이 본교가 교육실습 병설(협력)학교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함

. . .

○ ○ 고 등 학 교 장 직인

[서식 3]

**교직 및 전공과목 전임교원 명단**

성 명	직급	연령	주요학력	학위	주요경력	담당과목	임용(예정) 연 월 일	임 용 수리근거

년 월 일

○ ○ ○ 대 학 교 총 장 직인

[서식 4]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총괄표**

○○대학(교)

단과대학	학과명 (전공)	주·야 구 분	자 격 종 별 및 표시과목	입 학 정 원	승 인 인 원	선 발 인 원	비 고

\* 비고란에는 정원의 입학자 몇 명 등을 기재

[서식 4-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작성자 직 성명 ①

일련번호	학과명 (전공)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입 학 연월일	편 입 자		
					편입연월	편입학년	전적 학교명

[서식 4-2]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명부**

작성자 직 성명 ①

일련번호	학과명 (전공)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입 학 연월일	복수(부)전공 학과명 (전공)	복수전공 표시과목	비고

[서식 4-3]

**교직 부전공 이수예정자 명부**

작성자 직 성명 ①인

일련번호	학과명 (전공)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입 학 연월일	부전공 학과명 (전공)	부전공 표시과목	비고

[서식 5]

### 교육실습결과보고서(예시)

1. 실습학교명:

2. 실습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주간)

3. 지도교수 및 지도교사

직 명	성 명	담 당 내 용	비 고

4. 실습내용

제 1 주	제 2 주	제 3 주	제 4 주

5. 실습상황

학교명 및 학과명	실습생 성 명	근무 태도 (10%)	자질 (15%)	학습지도 능 력 (50%)	연구조사 활 동 (15%)	학급경영 및 사무처리능력 (10%)	총 평 (100%)	비고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실 습 학 교 장 직인

[서식 5-1]

**경력인정증명서(예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교(기관)명	
직 급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년 월)
<p>위 사람은 (위탁급식업체)의 (영양사)로서 상기 기간 동안 본교의 (학교급식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학교장 인</p>	

※ 기타 교육실습 면제 대상자(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유치원 정교사)의 경우 위의 서식을 참고로 활용할 것

※ 근무기관이 다른 경우 위의 서식을 각각 작성하여야 함

[서식 6]

##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표시과목 결정(변경) 신청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결정(변경)승인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대학명	학 과 명 (전 공)	현 행 표시과목	결정(변경)신청 표 시 과 목	적용학년도	신 청 사 유

첨부 1. 교육과정 1부.

2. 교직 및 전공과목 전임교원명단 1부.

3. 교육실습 병설(협력)학교 지정증명서(실기교사의 경우 제외) 1부. 끝.

기 관 장 직인

수신자

담당자 ○○○ 과장 ○○○ 처장 ○○○ 총장 ○○○

협조자

시 행 ○○○○과-○○○(2004.03.05) 접수

우 ○○○-○○○ 주소

전화 ○○-○○○-○○○○ 전송 ○○-○○○-○○○○ / E-mail

[서식 7] 삭제<94·9·26>

[서식 8]

**교원자격증 발급자 총괄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총괄표)

○○대학(교)

대 학	학과명 (전공)	입학 정원	자격 종별	전 공		부 전 공		복수전공	
				표시과목	인원	표시과목	인원	표시과목	인원
계									

[서식 8-1]

**교원자격증 과목별 발급내역(인원수)**

○○대학(교)

자격 종별	표시 과목	사범대학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비 고
		주	부	복	주	부	복	주	부	복	주	부	복	
	국 어													
	수 학													
	·													
	·													
	·													
	·													
계														

\* 주 : 주전공, 부 : 부전공, 복 : 복수전공

[서식 8-2]

**교원자격증 발급자 인적사항 변동조서**

○○대학(교)

자격증 번호	학과명 (전공)	당 초		변 경		변 경 사 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작성자 ㉠

확인자 과장 ㉠

[서식 8-3] [삭제]

[서식 9]

심 사 내 역 표

○○대학(교)

학 과 (전공)명	신청자수	불합격자수	합격자수	심 사 요 건	비 고
				1. 학과지정여부 2. 학위등록여부 3. 교직과정이수예정자명부 4. 기본이수영역 5. 구비서류 6. 인적사항 7. 표시과목 8. 교직및전공과목평균점수	
합 계					

담당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1. A4용지 백상지 사용
2. 자격종별, 양성과정별(사범대, 교직과정, 실과계준교사, 교육과 등)로 작성

[서식 9-1]

**실기교사 심사 내역표**

○○대학(교)

학 과 (전공)명	신청자수	불합격자수	합격자수	심 사 요 건	비 고
				1. 학과지정여부 2. 졸업여부 3. 기본이수영역 4. 국가기술자격증취득여부 5. 구비서류 6. 인적사항 7. 표시과목	
합 계					

담당자 직 성명 ①

확인자 직 성명 ①

[서식 10]

실기교사 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학연도	졸업연월일	학점이수영역		표시과목	국가기술자격종목	참여	학과(전공)
					기본이수영역	교직과목				

[서식 11]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자 총괄표**

○○대학(교)

학 과 명(전공)	표 시 과 목	발 급 인 원	비 고
계			

※ 비고란에 표시과목결정승인의 승인 날짜 기재(학과명이 표시과목 관련학과 명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식 12]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자 명부**

○○대학(교)

학 위 번 호	자격증 번 호	표 시 과 목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졸 업 연월일	발 급 연월일	자격기준			비 고
							조	항	호	

[서식 13]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자 명부(중등학교 현직교사)**

부전공과목 부여기관 : ○ ○ ○

연번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교 사 자 격 증(최초자격)					부전공 표 시 과 목	부 전 공 자 격부여 일 자
			발급 번호	자격 종별	표시 과목	발급 일자	발급 기관		

[서식 14]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

○○대학(교) ○○학부 ○○전공(학과)

표시과목	교육인적자원부고시 기본이수과목(분야)	본교지정 교과목명	일치근거

작성자 직 성명 ㉠

확인자 학과장 성명 ㉠

총장(전문대학의 경우 학장) 직인

[서식 15] [가로 서식임]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

신청인	전공 주민등록번호	학번	출신대학 및 학과	성명	휴대폰	대학교	
						인	학과(전공)
구분	신청 현황		성적	인정 현황		인정학점	전공책임교수
	이수 과목 명	취득학점		가·부	표시과목		
전공							
교직							
<p>학부(전문대학 포함)에서 이수한 위 학점을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표시과목 관련 유사학점으로 판정하여 인정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년 월 일  
 전공책임교수 인

○○○대학교 총장 귀하

※ 첨부 서류 : 성적증명서 1부. ※ 학생은 음영 처리된 부분을 기록하지 마시오.

[서식 16]

**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

- 성명 :
- 학번 :
- 주민등록번호 :
- 대학 및 학과(전공) :
- 입학년월일 : (신입학, 일반편입, 학사편입, 재입학)
- 졸업예정년월일 :
  
- 주전공
  -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
  - 자격기준 :
  - 취득학과(전공) :
  
- 부전공
  - 표시과목 :
  - 자격기준 :
  - 취득학과(전공) :
  
- 복수전공
  -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
  - 자격기준 :
  - 취득학과(전공)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학교총(학)장

## 2. 교원자격증 기관부호

### 가. 시·도교육청별 교원자격증 기관부호

시·도명	교원자격증부호	시·도명	교원자격증부호
서울	가 제 호	강원	자 제 호
부산	카 제 호	충북	다 제 호
대구	타 제 호	충남	라 제 호
인천	파 제 호	전북	마 제 호
광주	하 제 호	전남	바 제 호
대전	거 제 호	경북	사 제 호
울산	너 제 호	경남	아 제 호
경기	나 제 호	제주	차 제 호

### 나. 학교별 교원자격증 기관부호

#### 1) 국·공립대학교

학 교 명	자격증부호	학 교 명	자격증부호
강릉원주대학교 (구 강릉대, 09.3.1) 강원대학교	강릉대 제 호 강원대 제 호	부경대학교	부경대 제 호
경북대학교	경북대 제 호	부산대학교	부산대 제 호
경상대학교	경상대 제 호	서울대학교	서울대 제 호
공주대학교	공주대 제 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시대 제 호
군산대학교	군산대 제 호	순천대학교	순천대 제 호
금오공과대학교	금오공대 제 호	안동대학교	안동대 제 호
목포대학교	목포대 제 호	(여수대학교) (06.31 전남대학교에 통합)	(여수대 제 호)
목포해양대학교	목해대 제 호	인천대학교	인천대 제 호
		전남대학교	전남대 제 호

학 교 명	자격증부호	학 교 명	자격증부호
전북대학교	전북대 제 호	한국교원대학교	교원대 제 호
제주대학교	제주대 제 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송대 제 호
창원대학교	창원대 제 호	한국체육대학교	한체대 제 호
충남대학교	충남대 제 호	한국해양대학교	한해대 제 호
충북대학교	충북대 제 호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간사 제 호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대 제 호	청주교육대학교	청주교대 제 호
부산교육대학교	부산교대 제 호	공주교육대학교	공주교대 제 호
대구교육대학교	대구교대 제 호	전주교육대학교	전주교대 제 호
경인교육대학교	경인교대 제 호	진주교육대학교	진주교대 제 호
광주교육대학교	광주교대 제 호	제주교육대학교	제주교대 제 호
춘천교육대학교	춘천교대 제 호		

**2) 사립대학교**

학 교 명	자격증부호	학 교 명	자격증부호
가야대학교	가야대 제 호	경원대학교	경원대 제 호
가천의과학대학교 (구 가천길대학)	가천의대 제 호 (가천전 제 호)	경일대학교	경일대 제 호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 제 호	경주대학교	경주대 제 호
감리교신학대학교	감신대 제 호	경희대학교	경희대 제 호
강남대학교	강남대 제 호	계명대학교	계명대 제 호
건국대학교	건국대 제 호	고려대학교	고려대 제 호
건동대학교	건동대 제 호	고신대학교	고신대 제 호
건양대학교	건양대 제 호	관동대학교	관동대 제 호
경기대학교	경기대 제 호	광신대학교	광신대 제 호
경남대학교	경남대 제 호	광운대학교	광운대 제 호
경동대학교	경동대 제 호	광주대학교	광주대 제 호 (구 광주산대)
경성대학교	경성대 제 호	광주여자대학교	광주여대 제 호

학 교 명	자격증부호	학 교 명	자격증부호
광주예술대학교(폐교)	광주예대 제 호	부산장신대학교	부장신대 제 호
국민대학교	국민대 제 호	명신대학교	명신대 제 호
그리스도대학교	그대 제 호	명지대학교	명지대 제 호
극동대학교	극동대 제 호	목원대학교	목원대 제 호
나사렛대학교	나사대 제 호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가톨릭대 제 호
남부대학교	남부대 제 호	배재대학교	배재대 제 호
단국대학교	단국대 제 호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가대 제 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가톨릭대 제 호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외대 제 호
대구대학교	대구대 제 호	삼육대학교	삼육대 제 호
대구예술대학교	대구예술대 제 호	상명대학교	상명대 제 호
대구한의대학교 (구 경산대학교)	대구한의대 제 호	상지대학교	상지대 제 호
대불대학교	대불대 제 호	서강대학교	서강대 제 호
대신대학교	대신대 제 호	서경대학교	서경대 제 호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가대 제 호	서남대학교	서남대 제 호
대전대학교	대전대 제 호	서울기독교대학교	서기대 제 호
대진대학교	대진대 제 호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신대 제 호
덕성여자대학교	덕성대 제 호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여대 제 호
동국대학교	동국대 제 호	서울장신대학교	서장신대 제 호
동덕여자대학교	동덕대 제 호	서원대학교	서원대 제 호
동명대학교 (구 동명정보대학)	동명대 제 호	선문대학교	선문대 제 호
동서대학교	동서대 제 호	성결대학교	성결대 제 호
동신대학교	동신대 제 호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 제 호
동아대학교	동아대 제 호	성균관대학교	성균대 제 호
동양대학교	동양대 제 호	성신여자대학교	성신대 제 호
동의대학교	동의대 제 호	세명대학교	세명대 제 호
한중대학교 (구 동해대학교)	한중대 제 호 (동해대 제 호)	세종대학교	세종대 제 호

학 교 명	자격증부호	학 교 명	자격증부호
수원대학교	수원대 제 호	인제대학교	인제대 제 호
숙명여자대학교	숙명대 제 호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가대 제 호
순천향대학교	순천향대 제 호	인하대학교	인하대 제 호
송실대학교	송실대 제 호	장로회신학대학교	장신대 제 호
신라대학교	신라대 제 호	전주대학교	전주대 제 호
아시아대학교	아시아대 제 호	조선대학교	조선대 제 호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아신대 제 호	중부대학교	중부대 제 호
아주대학교	아주대 제 호	중앙대학교	중앙대 제 호
안양대학교	안양대 제 호	중앙승가대학교	승가대 제 호
연세대학교	연세대 제 호	한국국제대학교 (08.3진주국제대학교)	진주국제대 제 호
영남대학교	영남대 제 호	백석대학교 (구 천안대학교)	백석대 제 호 천안대 제 호
영남신학대학교	영남신대 제 호	청주대학교	청주대 제 호
영동대학교	영동대 제 호	총신대학교	총신대 제 호
영산대학교	영산대 제 호	추계예술대학교	추계예대 제 호
영산원불교대학교	영산원대 제 호	침례신학대학교	침례신대 제 호
예원예술대학교	예원예대 제 호	갈빈대학교	갈빈대 제 호
용인대학교	용인대 제 호	탐라대학교	탐라대 제 호
예수대학교 (구 예수간호대학교)	예수대 제 호 (예수간대 제 호)	평택대학교	평택대 제 호
우석대학교	우석대 제 호	차의과학대학교('09.3.1) (구 포천중문외과대학교)	차의과학대 제 호
울산대학교	울산대 제 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대 제 호
원광대학교	원광대 제 호	한국성서대학교	성서대 제 호
위덕대학교	위덕대 제 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외대 제 호
을지대학교 ('07.3.1, 구 을지의과대)	을지대 제 호	한국항공대학교	항공대 제 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대 제 호	한남대학교	한남대 제 호
		한동대학교	한동대 제 호

학 교 명	자격증부호	학 교 명	자격증부호
한라대학교	한라대 제 호	한영신학대학교	한영신대 제 호
한림대학교	한림대 제 호	한일장신대학교	한일신대 제 호
한서대학교	한서대 제 호	협성대학교	협성대 제 호
한세대학교	한세대 제 호	호남대학교	호남대 제 호
한성대학교	한성대 제 호	호남신학대학교	호남신대 제 호
한신대학교	한신대 제 호	호서대학교	호서대 제 호
한양대학교	한양대 제 호	홍익대학교	홍익대 제 호

**3) 국립 산업대학교**

학 교 명	자격증부호	학 교 명	자격증부호
(밀양대학교) (06.31 부산대학교에 통합)	(밀양산대 제 호)	진주산업대학교	진주산대 제 호
(삼척대학교) (06.31 강원대학교에 통합)	(삼척산대 제 호)	충주대학교	충주산대 제 호
상주대학교	상주산대 제 호	한경대학교	한경산대 제 호
서울산업대학교	서울산대 제 호	한밭대학교	한밭산대 제 호

**4) 사립 산업대학교**

학 교 명	자격증부호	학 교 명	자격증부호
경운대학교	경운산대 제 호	초당대학교	초당대 제 호 (2006.07.19)
남서울대학교	남서울대 제 호 (2006.05.17)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산기산대 제 호
동명정보대학교 ('06.3.1 동명대학교로 우송대학교	동명정보산대 제 호 변경) 우송산대 제 호	한려대학교	한려산대 제 호
청운대학교	청운대 제 호 (2006.07.27)	호원대학교	호원산대 제 호

5) 국·공립 전문대학

학 교 명	자 격 증 부 호	학 교 명	자 격 증 부 호
강원전문대학	강원전 제 호	익산대학	익산전 제 호
경남도립거창대학 (08.7 거창전문대학)	거창전 제 호	인천전문대학	인천전 제 호
경북도립대학 (08.9 경도대학)	경도전 제 호	천안공업대학	천안공전 제 호
공주문화대학 (공주대로 통합)	공주문화전 제 호	청양대학	청양전 제 호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국의간전 제 호	청주과학대학	청주전 제 호
전남도립대학 (08.4 남도대학)	남도전 제 호	충북과학대학	충북과전 제 호
경남도립남해대학 (08.7 남해전문대학)	남해전 제 호	한국철도대학	철도전 제 호
원주대학	원주전 제 호	한국재활복지대학	재활복지 제 호

6) 사립 전문대학

학 교 명	자 격 증 부 호	학 교 명	자 격 증 부 호
(가천길대학) (0631 가천의과학대학교에 통합)	(가천전 제 호)	영남외국어대학 (06.5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영남외전 제 호 (경북외테전 제 호)
가톨릭상지대학	가톨릭전 제 호	경원전문대학	경원전 제 호
강원관광대학	강원관광전 제 호	경인여자대학	경인전 제 호
강릉영동대학	강릉영동전 제 호	경희간호대학 (2002.2.폐교)	경희병간전 제 호
거제대학	거제전 제 호	계명문화대학	계명전 제 호
경기공업대학	경기공전 제 호	계원디자인예술대학 (08.6계원조형예술대학)	계원예전 제 호
경남정보대학	경남전 제 호	(고려대학교병설 보건대학) (06.3.1고려대학교통합)	(고대병보전 제 호)
경동정보대학	경동전 제 호	공주영상대학 (구 공주영상정보대학)	공주영상전 제 호
국제대학 (구 경문대학)	국제전 제 호 (구 경문전 제 호)	광양보건대학	광양보전 제 호
경민대학	경민전 제 호	광주보건대학	광주보전 제 호
경북대학	경북전 제 호	구미1대학	구미전 제 호
경북과학대학	경북과전 제 호		
경북전문대학	경북전 제 호		

학 교 명	자격증부호	학 교 명	자격증부호
군산간호대학	군산간전 제 호	동부산대학	동부산전 제 호
군장대학	군장전 제 호	동서울대학	동서울전 제 호
극동정보대학	극동전 제 호	동아방송예술대학 (구 동아방송대학)	동아방송전 제 호
기독교간호대학	기독교간전 제 호	동아인재대학	동아인전 제 호
김천과학대학	김천과전 제 호	동양공업전문대학	동양전 제 호
김천대학	김천전 제 호	동우대학	동우전 제 호
김포대학	김포전 제 호	동원대학	동원전 제 호
김해대학('08.8.인가)	김해전 제 호	동의과학대학 (구동의공업대학)	동의공전 제 호
나주대학	나주전 제 호	동주대학	동주전 제 호
농협대학	농협전 제 호	동해대학 (동해대학교 개편)	동해전 제 호
대경대학	대경전 제 호	두원공과대학	두원공전 제 호
대구공업대학	대구공전 제 호	마산대학	마산전 제 호
대구과학대학	대구전 제 호	명지전문대학	명지전 제 호
대구미래대학	대구미전 제 호	목포과학대학	목포전 제 호
대구보건대학	대구보건 제 호	문경대학	문경전 제 호
대구산업정보대학	대구산전 제 호	배화여자대학	배화여전 제 호
대덕대학	대덕전 제 호	백석문화대학 (구천안외국어대학, 구 백석대학)	백석전 제 호
대동대학	대동전 제 호	백제예술대학	백예전 제 호
대림대학	대림전 제 호	벽성대학	벽성전 제 호
대원대학 (대원과학대학 08.12.)	대원전 제 호	부산경상대학	부산경전 제 호
대전보건대학	대전보건 제 호	부산여자대학	부산여전 제 호
아주자동차대학 (구 대천대학)	아주전 제 호 (대천전 제 호)	부산예술대학	부산예전 제 호
동강대학	동강전 제 호	부산정보대학	부산정전 제 호
동남보건대학	동남보건 제 호	부천대학	부천전 제 호
동명대학 (06.3.1동명대학교에 통합)	동명전 제 호 통합)		

학 교 명	자격증부호	학 교 명	자격증부호
삼육간호보건대학 (삼육의명대학) (0631 삼육대학교에 통합)	삼육간전 제 호 (삼의대 제 호) (구 삼육병전)	(안동정보대학) 건동대학교 승격(06)	(안동정전 제 호)
상지영서대학	상지영서전 제 호	안산공과대학	안산공전 제 호
서강정보대학	서강전 제 호	안산1대학	안산1전 제 호
서라벌대학	서라벌전 제 호	안양과학대학	안양전 제 호
서정대학	서정전 제 호	양산대학	양산전 제 호
서울보건대학	서울보전 제 호	한영대학 (구 여수공업대학)	한영전 제 호 (구 여수공전)
서울여자간호대학	서울간전 제 호	여주대학	여주전 제 호
서울예술대학	서울예전 제 호	연암공업대학	연암공전 제 호
서일대학	서일전 제 호	천안연암대학 (구 연암축산원예대학)	천안연암전 제 호
서해대학	서해전 제 호	영남이공대학	영남전 제 호
선린대학	선린전 제 호	영동전문대학	영동전 제 호
성덕대학	성덕전 제 호	영진전문대학	영진전 제 호
성신간호대학 (성심외국어대학) (0631 영산대학교에 통합)	성신간전 제 호 (성심외전 제 호)	오산대학	오산전 제 호
성화대학	성화전 제 호	용인송담대학	용인송전 제 호
세경대학	세경전 제 호	우송공업대학	우송공전 제 호
송원대학	송원전 제 호	우송정보대학	우송정보전 제 호
송호대학	송호전 제 호	울산과학대학	울산전 제 호
수원과학대학	수원과전 제 호	원광보건대학	원광보전 제 호
수원여자대학	수원여전 제 호	유한대학	유한전 제 호
순천제일대학	순천제일전 제 호	인덕대학	인덕전 제 호
순천청암대학	순천청전 제 호	인하공업전문대학	인하공전 제 호
숭의여자대학	숭의여전 제 호	장안대학	장안전 제 호
신구대학	신구전 제 호	재능대학	재능전 제 호
신성대학	신성전 제 호	적십자간호대학	적십자간전 제 호
신흥대학	신흥전 제 호	전남과학대학	전남전 제 호
안동과학대학	안동과전 제 호	전주비전대학 (구 전주공업대학)	전주비전 제 호
		전주기전대학 (구 전주기전여자대학)	전주기전 제 호

학 교 명	자격증부호	학 교 명	자격증부호
전북과학대학 (구 정인대학)	전북과전 제 호 (정인전)	창원전문대학	창원전 제 호
제주관광대학	제주관광전 제 호	청강문화산업대학	청강문산전 제 호
제주산업정보대학	제주산업전 제 호	송곡대학 (구 춘천정보대학)	송곡전 제 호 (춘천전)
제주한라대학	한라전 제 호	춘해보건대학 (08.6 춘해대학)	춘해전 제 호
조선간호대학	조선간전 제 호	충청대학	충청전 제 호
조선이공대학	조선공전 제 호	포항대학 (포항1대학 08.7.21)	포항전 제 호
주성대학	주성전 제 호	한국관광대학	한국관광전 제 호
지산대학 (부산가톨릭 통합)	지산전 제 호	한림성심대학 (구한림정보산업대학)	한림전 제 호
진주보건대학	진주보건 제 호	한양여자대학	한양여전 제 호
진주전문대학	진주전 제 호	혜전대학	혜전전 제 호
창신대학	창신전 제 호	혜천대학	혜천전 제 호

7) 기타

학 교 명	자격증부호	학 교 명	자격증부호
한국폴리텍 I 대학 (서울정수기능대학 서울정보기능대학 성남기능대학)	한국폴리텍 I 제 호	한국폴리텍VII (창원기능대학 부산기능대학 울산기능대학 거창기능대학)	한국폴리텍VII 제 호
한국폴리텍II대학 (인천기능대학)	한국폴리텍II 제 호	한국폴리텍여자대학 (안성여자기능대학)	한국폴리텍여자 제 호
한국폴리텍III대학 (춘천기능대학)	한국폴리텍III 제 호	한국폴리텍섬유패션대 학(섬유패션기능대학)	한국폴리텍섬유패션 제 호
한국폴리텍IV대학 (대전기능대학 청주기능대학 제천기능대학 홍성기능대학 아산기능대학)	한국폴리텍IV 제 호	한국폴리텍항공대학 (항공기능대학)	한국폴리텍항공 제 호
한국폴리텍V대학 (광주기능대학 전북기능대학 고창기능대학 목포기능대학)	한국폴리텍V 제 호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 (바이오기능대학)	한국폴리텍바이오 제 호
한국폴리텍VI (대구기능대학 구미기능대학)	한국폴리텍VI 제 호	국제예술대학 (08.3.1)	국제예전 제 호
		정화예술전공대학 (08.3.1)	정화예대 제 호
		정화예술전공대학 (08.3.1)	백석예전 제 호

### 3. 관련법령

#### 가. 초·중등교육법(발체)(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21조 (교원의 자격)** ①교장 및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4.1.29>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4.1.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1.1.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별표 1], [별표 2] 생략 - pp.4~10 참조

#### 부 칙(2000.1.28. 법률 제620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교육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의 2001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보건교사2급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보건교사(2급)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2년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02.8.26. 법률 제6714호)

**제4조(특수학교 정교사 2급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에 관한 개정규정(교육대학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사항에 한한다)은 교육대학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2003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04.1.20. 법률 제7068호)

**제2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21

조제2항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영양교사(2급)란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식품위생직을 포함한다) 중 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1.29.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교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수여하는 유치원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검정·수여하는 유치원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본다.

부 칙(제8577호, 200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나. 유아교육법(발체)(2008.2.29 법률 제852호)

**제22조 (교원의 자격)** ①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부 칙(2004.1.29. 법률 제71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교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수여하는 유치원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검정·수여하는 유치원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본다.

**다. 교원자격검정령** ( 1978.12.30 전문개정 )  
 ( 대통령령 제9258호 )

2008.06.05 대통령령 제2079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자격검정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6.4.6>

**제2조 (자격검정의 종별)** 교원의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자격증의 수여)**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8.8.11, 2000.5.16, 2001.1.29, 2007.12.20>

②삭제 <2000.5.16>

[전문개정 1992.2.17]

**제4조 (자격증표시과목)**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2.16, 2001.1.29>

② 삭제 <2007.12.20>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재학 중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만,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0>

④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8.8.11, 2001.1.29, 2001.12.19, 2004.9.17, 2006.4.6, 2007.12.20>

1.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연수계획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교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38 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⑤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라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하거나 필요한 보수교육

을 받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1999.5.10, 개정 2001.1.29, 2006.4.6, 2007.12.20>

**제5조 (자격검정의 결격사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88.7.1, 1998.8.11>  
[전문개정 1984.12.22]

**제6조 (자격증의 박탈)**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을 박탈한다. <개정 1991.2.1, 1997.12.5, 2001.1.29>  
② 삭제 <1992.2.17>  
③ 삭제 <1992.2.17>

**제7조 (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성명 기타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8.7.1, 1991.2.1, 1992.2.17, 2001.1.29>

**제8조 (교육경력 범위의 범위)** ① 「유아교육법」 별표 1·별표 2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1·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개정 1993.2.16, 1995.11.22, 1998.8.11, 2000.5.16, 2001.1.29, 2006.4.6>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3.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의 자격 인정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개정 1982.5.4>

**제9조 (교육행정경력 범위의 범위)** ① 이 영에서 "교육행정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82.5.4, 1991.2.1, 1991.4.23, 1997.12.5, 2001.1.29, 2006.6.12>  
1.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 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교육감·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
-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행정경력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조사 및 자료수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는 자격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원자의 학력·경력과 신분에 관하여 관계관서 또는 기타 기관에 대하여 심사상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자료를 조사하게 하거나 수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제11조 (수수료)** 자격검정을 받거나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7.1, 1991.2.1, 2001.1.29, 2004.9.17>

## 제2장 교원자격검정위원회

**제12조 (조직)** ①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하되, 통합하여 운영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4.6>

②위원장은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국장이 된다. <개정 2006.4.6>

③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장학관 또는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84.12.22, 1991.2.1, 2001.1.29, 2006.6.12>

**제13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2.7.3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7.30>

**제14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1991.2.1, 1993.6.16, 1996.2.22, 1998.8.11, 2001.1.29>

1.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0.5.16>
3. 자격증의 표시과목의 결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제15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과학기술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1.2.1, 2001.1.29>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7조 (실비변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2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①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육감(이하 "교원양성기관의 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2007.12.20>

② 교원양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위원 중 최소한 한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는 교무담당 부서의 장이 각각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본조신설 2007.12.20>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3.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20>

④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본조신설 2007.12.20>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7.12.20>

⑥ 교원양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07.12.20>

⑦ 그 밖에 교원양성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7.12.20>

### 제3장 무시험검정

**제18조 (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8.11, 2006.4.6>

1.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원감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교감의 자격검정
2. 「유아교육법」 별표 2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정중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의 대상이 아닌 자의 자격검정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별표 1·별표 2 또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1·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개정 1998.8.11, 2006.4.6>

② 교육대학의 졸업자 및 사범대학의 졸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자격종별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0>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수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3.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

③교육대학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2006.4.6>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학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법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동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상담에 관련된 과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동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상담·심리 관련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의 일부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4.6>

1.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 18학점 이상
2.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 42학점 이상

⑤법률 제7068호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시설

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영양교육과 관련된 과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4.9.17>

1. 1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 : 24학점 이상

2.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 : 36학점 이상

⑥ 「유아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검정 대상자에 대한 무시험검정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7.12.20>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 외에 해당 기관의 무시험검정 대상자에 대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2.20> [전문개정 1992.2.17]

**제20조 (교직과정의 설치 등 <개정 2006.4.6>)** ①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장이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4.9.17, 2006.4.6>

② 삭제 <2007.12.20>

③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연수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6.4.6>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4.6>

⑤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사회적·시대적 변화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실습 지원학교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0>

⑥ 교육감은 해당 교육청에 교육실습 협력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7.12.20>

**제21조 (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등)** ①상급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9.17, 1991.2.1, 2001.1.29, 2006.4.6>

1. 「교육공무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에서 15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총학점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상급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을 180시간이상 이수하고 총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②제1항의 재교육 또는 강습이 교원자격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것이라야 한다.

**제22조 (실기교사기능)**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의 자격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과계의 기능 또는 그 밖의 기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

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과목을 전공하여 습득한 기능으로 한다.<개정 1991.2.1, 1998.8.11, 2001.1.29, 2006.4.6>[전문개정 1982.5.4]

**제23조 (교장·원장의 자격인정)** ① 「유아교육법」 별표 1의 유치원 원장란에 따른 원장의 자격인정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1의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에 따른 교장의 자격인정은 별표의 자격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6.4.6, 2006.8.24>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 안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하도록 하고 3년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용예정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12.20> [전문개정 2000.5.16]

#### 제4장 시험검정

**제24조 (시험검정의 대상)** 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16, 1996.2.22, 1998.8.11, 2006.4.6>

1. 삭제 <1982.5.4>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
3.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초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4. 「유아교육법」 별표 2의 유치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5.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특수학교 준교사자격기준에 의한 자격검정
6.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자격검정

**제25조 (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은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26조 (시험검정의 방법)** 시험검정은 학력고사와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학력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 (시험검정의 내용)** ①학력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과목에 관하여 그 학력을 고사한다.

②실기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실기능력을 고사한다.

③구술고사는 교사로서의 인성·적성 및 자질에 대하여 고사한다. <개정 1982.5.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고사의 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제28조 (시험검정의 합격기준)** ①학력고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는 고사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고사 4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29조 (시험검정의 응시자격)** 제24조제2호 내지 제6호(「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고사 자격기준중 제3호의 자격검정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험검정의 응시자격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1998.8.11, 2001.1.29, 2006.4.6>

**제30조 (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박탈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본조신설 1998.8.11]

부 칙<제9258호, 1978.12.30>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이 설치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 인가의 추천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추천기준에 의하여 추천한다.
- ④(경과조치) 중학교·기술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만 통용되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중 대학을 졸업한 자와 1964년 1월 1일이후에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21학점이상을 취득하거나 336시간이상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1463호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도 통용되는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 칙<제10813호, 1982.5.4>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학에 있어서는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전문대학에 있어서는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②(교원자격증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증의 서식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교부령으로 정할 때까지 계속효력을 가진다.

부 칙(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제11141호, 1983.6.9>

- 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법 제81조 각호 1에 해당하는 학교"를 "법 제8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으로 한다.
- ③생략

부 칙<제11562호, 1984.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174호, 1987.6.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250호, 1987.9.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476호, 1988.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자격증 수여에 관한 특례) 1988년 2월 26일이전에 교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교육법시행령 제152조(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자격증이 박탈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교육감을 통하여 교원자격검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은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 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4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12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며,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7조, 제11조,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7조제4항 및 제29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36>내지 <148>생략

부 칙(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356호, 1991.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부 칙<제13590호, 1992.2.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3학년도 입학자부터,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2학년도 후기입학자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13837호, 1993.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909호, 1993.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152호, 1994.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중 유치원원장란 제1호 라목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별표 1중 유치원원장란 제1호 라목의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제14803호, 1995.11.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2월 28일이후의 경력부터 적용한다.

부 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 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제24조제3호 및 별표 1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④내지 <32>생략

부 칙<제15530호, 1997.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등학교교장의 자격인가추천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초등학교교장의 자격인가추천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한 추천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15866호, 1998.8.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대학·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 교육과에 재학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6293호, 1999.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812호, 2000.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육인적자원부와 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3항·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호, 제19조제3항 전단·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제2항 및 제30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제5항, 제7조, 제11조,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7조제4항 및 제29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⑮내지 <152>생략

부 칙<제17427호, 2001.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사자격증의 부전공과목표시에 필요한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사자격증의 부전공과목표시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에 대한 이수 학점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17690호, 2002.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8545호, 2004.9.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7호를 삭제한다.

부 칙<제19438호, 2006.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의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의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교육경력의 인정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교직과정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방송·통신대학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장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교직과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 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각각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33>내지 <241>생략

부 칙<제19653호, 2006.8.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455호, 2007.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점취득 및 무시험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제19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2.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가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별표 1] <개정 2000.5.16>

**교장(원장) 자격 인정 기준**

구 분	자 격 인 정 기 준
초·중등학교 교장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다. 9년 이상의 초등학교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15년 이상의 초등학교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특수학교 교 장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다. 9년 이상의 특수학교나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15년 이상의 특수학교나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유 치 원 원 장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다.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라. <삭제> 2.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비 고

1. 삭제 <1998.8.11>
2. 이 표 중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은 서로 대치할 수 있다.
3. 이 표 중 초·중등학교교장의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력은 해당직위에 임용된 이후의 경력을 말한다.

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1982.6.23 전문개정 )  
문교부령 제507호 )

[일부개정 2011.3.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9, 2006.4.12>

**제2조 (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① 「교원자격검정령」(이하 "검정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의 장(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이 교원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4.9.3, 2006.4.12>

②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과 검정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의 정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6.19>

③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표시과목의 표시방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과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3.16, 1994.9.26, 1999.1.29, 2000.6.1, 2001.1.31, 2004.9.3, 2006.4.12>

1. 대학·산업대학·방송통신대학·국군간호사관학교·전문대학(이하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의 졸업자와 교육대학원(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전공한 학과(학부 및 전공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되는 담당과목을 표시한다.
2.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로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이수한 과목을 표시한다.
3.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 또는 실기교사의 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시험검정에 합격한 과목을 표시한다.
4.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원으로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담당한 과목을 표시하되, 그 과목을 표시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교원자격검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5.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보수교육에서 이수한 과목을 표시한다.

**제3조의2 (자격증 발급대상 작성등)** ①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교원자격증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자격증 발급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2.18, 1999.1.29, 2004.9.3>

②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자격증발급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2> [본조신설 1988.9.27]

**제4조 (자격증박탈처분의 신청)** ①교원의 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대학이 소재한 시·도의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9.3>

②삭제 <1999.1.29>

[전문개정 1988.9.27]

**제5조 (자격증박탈처분의 통지)**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2.2.18, 2001.1.31, 2004.9.3>

**제6조 (자격증 재교부 신청)**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4.9.3>

**제7조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9.1.29, 2001.1.31, 2004.9.3>

1. 삭제 <1999.1.29>

2. 삭제 <1999.1.29>

**제7조의2 (외국의 교육기관 근무경력범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령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2.9.10>

1.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의 교장자격인정의 경우에는 외국의 학교에서 전임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외의 학교의 교장 또는 원장자격인정의 경우에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본조신설 2000.6.1]

**제8조 (수수료)** 검정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 제2장 무시험검정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① 상급자격증 또는 기타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이하 "무시험검정원서"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수과정을 주관한 연수기관의 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연수이수자명단을 교육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자격연수과정 이수자가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②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위취득이 확정된 자로서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시험검정원서를 당해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사 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간호사면허증 사본을, 영양교사 무시험검정인 때에는 영양사면허증 사본을, 실기교사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 과목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9.27, 1999.1.29, 2004.9.3, 2006.4.12>

③ 삭제 <1988.9.27>

④ 「유아교육법」 별표 1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원장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1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2에 따라 교장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1.25, 1991.3.16, 2000.6.1, 2006.4.12>

1.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상명세서
2. 인사기록카드 사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할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1997.12.9>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로서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시험검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9.27>

1.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교원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경력증명서(일정한 경력을 교원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1997.12.9>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시험검정원서를 받은 당해대학의 장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8.9.27>

**제10조 (교육장의 경유<개정 1992.2.18>)** 교육감은 검정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시험검정서류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서류를 관할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2.18, 2000.6.1>

**제11조 (교직과정의 설치기준)** 검정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의 설치기

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1996.8.30>

1.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2. 당해교직과정의 설치목적에 따른 교육실습을 위하여 병설 또는 협력하는 고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을 두어야 한다.

**제12조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① 검정령 제4조제3항·제1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사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31>

② 검정령 제19조제7항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는 무시험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07.12.31>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 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
3.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을 요건으로 하는 실기교사의 무시험검정에 있어서는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방법론의 2과목(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삭제 <1999.1.29>

**제12조의2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의 과목과 이수학점)** 검정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1999.1.29] <개정 2004.9.3>

**제12조의3 (영양교육과정의 과목과 이수학점)** 검정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교육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4.9.3]

**제13조 (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①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이나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표시과목의 관련 학과와 그 기본이수영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1.3.16, 1994.9.26, 1999.1.29, 2000.1.28, 2000.6.1, 2001.1.31, 2006.4.12>

②제1항에 따른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은 2급의 경우 21학점이상, 준교사 및 실기교사의 경우 6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0.1.28, 2007.12.31>

**제14조 (교직과정 등의 설치신청)** ①검정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직과정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2.2.18, 2000.1.28, 2001.1.31>

1.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3. 교육실습을 위한 병설학교의 설치 또는 교육실습을 행할 학교와 실습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 제1호 및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 제3호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의 설치지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9, 2001.1.31, 2004.9.3, 2006.4.12>

1.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 ③ 법률 제7068호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교육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년과정·2년과정별로 영양교육과정의 설치지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4.9.3>
1. 영양교육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영양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제15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개정 1999.1.29>)** 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 중에 학교의 장에게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 신청자중 인성, 적성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당해학년의 학과별입학정원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선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3.10.5, 1992.2.18>

② 삭제<1999.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비율은 교원수급상 필요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자격종별 및 과목별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2001.1.31>

**제16조 (학교지정신청)** 「유아교육법」 별표 2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 기준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9.1.29, 2001.1.31, 2006.4.12>

1.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과의 설치 연월일 및 학생정원

### 제3장 시험검정

**제17조 (응시자격의 제한)** 검정령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중 남자교련담당 교사자격시험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편입예정장교이어야 하고, 여자교련담당교사자격시험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퇴역여군장교·퇴역예정여군장교 또는 간호계·보건계 전문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9]

**제18조 (시험검정의 구비서류)** 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9]

**제19조 (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장소·응시자격 등을 정하여 적어도 시험시행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학력고사 과목)**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준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별표 1의 표시과목 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학으로 한다.<개정 1993.2.6>

②실기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별표 2의 표시과목 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학으로 한다.

③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도덕·국어·사회·산수·자연·체육·음악·미술·실과 및 교육학으로 한다.<개정 1996.8.30>

④유치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사회정서발달영역·인지발달영역·언어발달영역·신체발달영역·건강영역 및 교육학으로 한다.

**제21조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시험검정응시자에게는 그 원에 의하여 별표 5와 같이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3.2.6, 1997.12.9, 1999.1.29>

**제22조 (시험의 정도와 시간)**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준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 중 교육학과목은 교육원리·교육사·교육심리학·교육사회학 및 과목지도법의 기초영역에 대하여, 실기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 중 교육학과목은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방법론의 기초영역에 대하여 각각 60분간 실시한다.<개정 1993.2.6>

②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전공과목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본이수영역에 대하여 120분간 실시한다. <개정 1991.3.16, 1993.2.6, 2001.1.31>

③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는 교육대학졸업 정도의 수준으로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목에 대하여 200분간 실시한다.<개정 1996.8.30>

④유치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는 전문대학졸업 정도의 수준으로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목에 대하여 120분간 실시한다.

부 칙<제507호, 1982.6.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79학년도 졸업자 및 석사학위취득자(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 칙**<제519호, 1983.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35호, 1985.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67호, 1988.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등의일부 개정령) <제571호, 1989.4.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각종학교에 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제594호, 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10호, 1992.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28호, 19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34호, 1993.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55호, 1994.9.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시험검정에 따른 산업체현장실습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학년도에 사범대학 또는 대학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은 다음의 표의 구분에 따라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1. 중등학교·특수학교교사자격증표시과목

종 전 표 시 과 목	변 경 표 시 과 목
과학(지학)	과학(지구과학)
국민윤리	윤 리
외국어(독어)	외국어(독일어)
외국어(불어)	외국어(프랑스어)
외국어(일어)	외국어(일본어)
환경설비	환경공업
중 식	양 식
작 물	농 업
농산제조	식품가공
식품공업	식품가공
수산가공	식품가공
염 색	섬 유
방 직	섬 유

2. 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

종 전 표 시 과 목	변 경 표 시 과 목
전산기기	전자계산기
수산증식	수산양식
계측제어	제어계측
어 로	어 업
수산가공	식품가공
장 식	디 자 인

**제4조 (폐지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중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표시과목이 폐지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5조 (자격증의 재교부)** 교육감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자격증의 정정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기재된 자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제672호, 199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86호, 1996.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7조제1호중 "국민학교준교사자격기준"을 "초등학교준교사자격기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 제22조제3항 및 별표 1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국민학교교장"을 "초등학교교장"으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부 칙<제701호, 1997.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36호, 1999.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46호, 199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61호, 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본이수영역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종 전 표 시 과 목	변 경 표 시 과 목
과학(물리)	공통과학, 물리
과학(화학)	공통과학, 화학
과학(생물)	공통과학, 생물
과학(지구과학)	공통과학, 지구과학
사회(일반사회)	공통사회, 일반사회
사회(역사)	공통사회, 역사
사회(지리)	공통사회, 지리
윤 리	도덕·윤리
외국어(영어)	영 어
외국어(독일어)	독 일 어
외국어(프랑스어)	프랑스어
외국어(중국어)	중 국 어
외국어(스페인어)	스페인어
외국어(일본어)	일 본 어
외국어(러시아어)	러시아어
외국어(아랍어)	아 략 어
전자계산	정보·컴퓨터
상 업	상업정보

**제4조 (통합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자 중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 |           |         |
|-----------|---------|
| 1. 농업     | 2. 원예   |
| 3. 임업     | 4. 조경   |
| 5. 축산     | 6. 잠업   |
| 7. 농업토목   | 8. 농업기계 |
| 9. 공예     | 10. 디자인 |
| 11. 향해    | 12. 기관  |
| 13. 수산업   | 14. 어업  |
| 15. 양식    | 16. 자원  |
| 17. 환경공업  | 18. 건축  |
| 19. 토목    | 20. 화공  |
| 21. 섬유    | 22. 전기  |
| 23. 전자    | 24. 통신  |
| 25. 전자계산기 | 26. 기계  |
| 27. 금속    | 28. 자동차 |
| 29. 조선    | 30. 중기  |
| 31. 전자기계  | 32. 공업  |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보되, 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종 전 표 시 과 목	변 경 표 시 과 목
농업, 원예, 임업, 조경	식물자원·조경
축산, 잠업	동물자원
농업토목, 농업기계	농 공
공예, 디자인	디자인·공예
항해, 기관	항해·기관
수산업, 어업, 양식	수산·해양
자원, 환경공업	자원·환경
공업, 건축, 토목	건 설
공업, 화공, 섬유	화공·섬유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전기·전자·통신
공업,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기계·금속

**제5조 (자격증의 재교부)**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를 받은 자가 자격증의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된 표시과목이 기재된 자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과목이 '전자기계'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전기·전자·통신'과 '기계·금속'중에서, 표시과목이 '공업'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건설', '화공·섬유', '전기·전자·통신'과 '기계·금속'중에서 하나의 표시과목을 선택하여 자격증의 정정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제767호, 2000.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육인적자원부와 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 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호, 제3조의2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본문,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6조 본문 및 제22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41>생략

부 칙<제807호, 2002.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38호, 2004.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78호, 2006.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16호, 2007.10.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표시과목이 "치료교육"인 자격증의 소지자는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922호, 2007.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13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2.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가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별표 1] <개정 2011.03.02>

**중등학교·특수학교 및 초등학교교사자격증 표시과목(제2조제2항 관련)**

학 교 명	자 격 별	표시과목
중등학교	정 교 사 (1급 및 2급) · 준 교 사	국어, 수학, 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공통사회, 일반사회, 역사, 지리, 도덕·윤리, 상담, <b>진로진학상담</b> , 교육학, 종교, 철학, 심리학, 환경, 체육, 교련, 음악, 미술, 한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술, 가정, 기술·가정, 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사진, 디자인·공예, 정보·컴퓨터,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상업정보, 수산·해양, 항해·기관, 냉동, 의상, 관광, 조리, 미용, 연극영화
특수학교	정 교 사 (1급 및 2급) · 준 교 사	1. 중등학교 과정을 제외한 초등학교 및 유치원 과정은 위의 표시과목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이료과목은 이료로, <b>치료교육과목은 재활복지로</b> , 직업교육과목은 직업교육으로 각각 표시한다.
초등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도덕·국어·수학·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실과·영어

[별표 2] <개정 2007.10.26>

**실기교사자격증 표시과목(제2조제3항관련)**

계 열 별	표 시 과 목
농 업 계	축산, 잠업, 원예, 임업, 조경, 농업기계, 농업토목, 식품가공, 수의
공 업 계	기계, 자동차, 항공, 철도운전, 철도업무, 조선, 주조, 용접, 금속, 전기공사, 건축, 공예, 토목, 통신, 자원, 화공, 섬유, 절삭가공, 전기, 전자, 인쇄, 도자기, 요업, 전자계산기, 제어계측, 열처리, 환경공업
상 업 계	속기, 부기, 상업계산, 타자, 워드프로세서, 전자계산
수산·해운계	항해, 수산양식, 기관, 어업
가사·실업계	보육, 조리, 한재, 양재, 수예, 실내디자인
예 능 계	사진, 미술, 디자인, 음악
체 육 계	체육, 교련
기 타 계	이용, 미용, 사서, <b>재활복지</b>

[별표 1] <개정 2000.1.28>

**중등학교·특수학교 및 초등학교교사자격증 표시과목(제2조제2항 관련)**

학 교 명	자 격 별	표시과목
중등학교	정 교 사 (1급 및 2급) · 준 교 사	국어, 수학, 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공통사회, 일반사회, 역사, 지리, 도덕·윤리, 상담, 교육학, 종교, 철학, 심리학, 환경, 체육, 교련, 음악, 미술, 한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술, 가정, 기술·가정, 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사진, 디자인·공예, 정보·컴퓨터,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상업정보, 수산·해양, 항해·기관, 냉동, 의상, 관광, 조리, 미용, 연극영화
특수학교	정 교 사 (1급 및 2급) · 준 교 사	1. 중등학교 과정을 제외한 초등학교 및 유치원 과정은 위의 표시과목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이료과목은 이료로, 치료교육과목은 치료교육으로, 직업교육과목은 직업교육으로 각각 표시한다.
초등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도덕·국어·수학·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실과·영어

[별표 2] <개정 '94.9.26>

**실기교사자격증 표시과목(제2조제3항 관련)**

계 열 별	표 시 과 목
농 업 계	축산, 잠업, 원예, 임업, 조경, 농업기계, 농업토목, 식품가공, 수의
공 업 계	기계, 자동차, 항공, 철도운전, 철도업무, 조선, 주조, 용접, 금속, 전기공사, 건축, 공예, 토목, 통신, 자원, 화공, 섬유, 절삭가공, 전기, 전자, 인쇄, 도자기, 요업, 전자계산기, 제어계측, 열처리, 환경공업
상 업 계	숙기, 부기, 상업계산, 타자, 워드프로세서, 전자계산
수산·해운계	항해, 수산양식, 기관, 어업
가사·실업계	보육, 조리, 한재, 양재, 수예, 실내디자인
예 능 계	사진, 미술, 디자인, 음악
체 육 계	체육, 교련
기 타 계	이용, 미용, 사서, 치료교육

[별표 3] <신설 1999.1.29, 개정 2004.9.3>

\* '08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

**교직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제12조관련)**

영역	과목	소요최저이수학점	
		대학	전문대학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에 관한 과목을 포함한다)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10학점 이상 (5과목 이상)
교과교육(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영양교사의 교직과정의 경우를 제외한다)	교과교육론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 그 밖의 교과교육에 관한 과목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교육실습(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영양교사의 교직과정의 경우에는 실무실습으로 한다)	교육실습	2학점 (4주)	2학점 (4주)

※ 비고 1. 과목당 학점은 2학점이상으로 한다.

2. 교육실습에 있어서는 그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별표 4] <신설 1999.1.29, 개정 2004.9.3>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제12조의2관련)**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소요최저이수	
		1급	2급
필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14학점 이상 (7과목이상)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선택	아동발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이상심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28학점 이상 (14과목 이상)
비고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의 경우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을 이수하는 하지 아니하나, 2종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 비고 :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한다.

[별표 3] <개정 2007.12.31>

\* '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자격종별	전공과목	교직과목
유치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 18학점 이상(교직소양 4학점 이상 포함)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초등학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교과교육 및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중등학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 정교사(2급)	80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 표시과목(중등) 관련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2급) 사서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50학점 이상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준교사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10학점(5과목) 이상 -교직이론
실기교사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4학점(2과목) 이상 -교직이론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은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li> <li>2. 대학은 교육실습에 관한 일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li> </ol>		

[별표 4의2] <신설 2004.9.3>

**영양교육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제12조의3관련)

구분	이수영역 및 과목	소요최저이수학점
1년 양성 과정	1.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2. 식품학, 조리원리 및 실습 3. 식품위생학, 단체급식 및 실습 4. 생애주기영양학, 영양판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 -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각 2학점 이상(1과목 이상) - 제4호에서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1. 교육학개론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3.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4.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5. 교육심리 6. 교육사회 7.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8.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2년 양성 과정	1.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2. 식품학, 조리원리 및 실습 3. 단체급식 및 실습, 식품위생학 4. 식생활과 문화, 급식경영 5. 식품가공 및 저장, 식품화학 6. 임상영양학, 지역사회영양학 7. 생애주기영양학, 영양판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	16학점 이상(8과목 이상) -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각 2학점 이상(1과목 이상) - 제7호에서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1. 교육학개론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3.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4.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5. 교육심리 6. 교육사회 7.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8.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1. 교수학습이론 2. 생활지도 3. 교사론 4. 교육법규의 이해 5. 지역사회와 교육	6학점 이상(3과목 이상)

※비고 :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한다.

[별표 5] <신설 1999.1.29>

**시험면제과목(제21조관련)**

검정종별	면제대상자	면제과목
중등학교 준교사	1. 각급학교 준교사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3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1급이상의 자격취득자 3.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취득자 4.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농업·공업·상업·수산·해운계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그 전공학과에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실기고사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예·체능계대학(이와 동등이상의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전공과정의 성적평균이 80점 이상이거나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자 가. 체육 : 공인된 전국규모대회에서 단체경기는 준결승이상, 개인경기는 6위까지 입상하였거나 국제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음악 : 국내외의 공인된 음악단체가 인정하는 발표회에서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 미술 : 국제전·대한민국미술대전 또는 상공전에서 입선된 자	교육학  전공과목  실기고사  전공과목· 실기고사  교육학· 실기고사 전공과목· 실기고사
특수학교 준교사	1. 각급학교 준교사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 실기고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교육학  교육학· 실기고사
실기고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취득자	실기고사

[별표 6] <개정 2004.9.3>

**수수료**

구	분	수수료	납부방법
1. 무시험검정	1. 교원자격검정	500원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
	2. 교장·원장자격의 추천검정	1,000원	수입증지 또는 현금
2. 시험검정	시험검정	10,000원	수입증지 또는 현금
3.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500원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
4. 교원자격증의 외국어 증명		1부당 200원	수입인지 또는 현금

## 마. 「임시교원양성소규정」

[2008.2.29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0740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제1조의 임시교원양성소는 임시국민학교교원양성소(이하 "초등교원양성소"라 한다)와 임시중등학교교원양성소(이하 "중등교원양성소"라 한다)의 2종으로 하되, 초등교원양성소에는 정교사반과 준교사반을 둔다.<개정 1978·12·30>

**제3조 (설치)** ①교육부장관은 초등학교 교원 또는 중등학교교원의 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를 부설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91·2·1, 1996·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의 명칭과 그 부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8·12·30, 1991·2·1>

**제4조 (입소자격)** ①초등교원양성소의 정교사반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하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초등교원양성소의 준교사반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개정 1978·12·30>

②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8·12·30>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중등학교교사자격증 소지자
3. 공업계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3년 이상 실기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공업계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산업체에서 그 전공학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5조 (교육기간)** 교육기간은 4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되, 그 기간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91·2·1>

**제6조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1·2·1>

**제7조 (직원)** ①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소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두되, 소장은 당해 대학의 학장이 겸하고, 사무직원은 당해 대학의 사무직원 중에서 당해 대학의 학장이 임명한다.

②수업을 담당 할 강사는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 (수강료)**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제9조 (수당과 실비변상)**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1991·2·1>

**제10조 (위임규정)**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1.2.1>

**부 칙<제4032호, 1969.8.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초등교원양성소입소자 또는 수료자중 초급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이 영에 의한 초등교원양성소의 정교사반의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이 영에 의한 초등교원양성소의 준교사반의 입소자 또는 수료자로 본다.

**부 칙<제9260호, 19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 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임시교원양성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내지 <148>생략

**부 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 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③생략**

④임시교원양성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국민학교 교원"을 "초등학교 교원"으로 한다.

⑤ 내지 <32>생략

**부 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3> 부터 <102> 까지 생략

## 바.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7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 중 보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7.19>

**제2조 (과정의 구분)** 교육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1996.8.30, 2000.7.19>

1. 유치원교사과정 : 유치원정교사(1급 또는 2급) 및 준교사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2. 초등학교교사과정 : 초등학교정교사(2급)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3. 특수학교교사과정 : 특수학교정교사(1급 또는 2급)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4. 특수학교관리자과정 : 특수학교교장 또는 교감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제3조 (교육담당기관)** 교육은 교육감이 시행하되, 교육기관·교원연수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한다.

**제4조 (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00.7.19, 2001.1.31>

**제5조 (교육과정)** ①교육과정은 교육감이 정하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과목 또는 교육영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0.7.19>

②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정에서는 별표의 교육과목 또는 교육영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0.7.19>

**제6조 (교육시간)** ①유치원교사과정, 초등학교교사과정 및 특수학교교사과정의 교육시간은 336시간 이상으로 하고, 특수학교관리자과정의 교육시간은 18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6.8.30, 2000.7.1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치원교사과정교육대상자로서 초등학교교육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초등학교교사과정교육대상자로서 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년 이상인 자와 특수학교교사과정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 교육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교육시간을 120시간이상으로, 특수학교관리자과정교육대상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시간을 60시간이상으로 각각 감축할 수 있다.<개정 1996.8.30, 2000.7.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시간은 이를 각각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교육성적의 평가 및 수수료 등)** ①교육성적은 교육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되, 만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교육의 수료자로 한다.

②교육담당기관의 장은 교육수료 후 15일 이내에 교육수료자의 명단을 교육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수강료)**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7.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는 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경비의 교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감이 교육담당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

**제10조 (교육비등의 지급)**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속 교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및 실비변상)**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교육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제635호, 1993.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86호, 1996.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국민학교교사과정"을 "초등학교교사과정"으로, "국민학교정교사(2급)자격"을 "초등학교정교사(2급)자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국민학교교사과정"을 "초등학교교사과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민학교교과과정교육대상자"를 "초등학교교과과정교육대상자"로 하며, 별표 1중 "국민학교교육과정"을 "초등학교교육과정"으로 한다.

부 칙<제771호, 2000.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육인적자원부와 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 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 생략

**부 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63> 까지 생략

[별 표] <개정 2000.7.19>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과목 또는 교육영역**(제5조제1항관련)

유치원교사과정	초등학교교사과정	특수학교교사과정	특수학교관리자과정
○ 유아교육론	○ 초등학교교육과정	○ 특수교육학개론	○ 특수교육학개론
○ 유아교육과정	○ 초등학교각과지도법	○ 특수아동심리	○ 특수아동심리
○ 영유아발달과교육	○ 예·체능실기	○ 통합교육	○ 통합교육
○ 유아관찰및실습		○ 장애별교육 및 심리	○ 특수교육행정
○ 유아교육기관운영 관리		○ 교육과정 및 지도법	○ 특수교육장학
		○ 특수학급경영	

**사. 「교(원)장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700호, 2006.6.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으로 교(원)장자격증을 수여하는 경우의 부관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관설정의 기준)** ①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조건 이외에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소지자격 및 경력에 따라 임용예정학교에서 별표 1에 정한 기간동안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속 근무하는 조건 없이 수여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4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3. 4년제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2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4. 교육대학원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5.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6. 다음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이 있는 자

자격구분	소 지 자 격
유치원 원장	1.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장, 교감자격증 소지자 2. 유치원 원감 자격증 소지자 3. 교육장,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특수학교 교장	1. 특수학교 교감자격증 소지자 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장, 교감자격증 소지자 3. 교육장,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초등학교 교장	1. 중등학교 교장, 교감자격증 소지자 2. 초등학교 교감 자격증 소지자 3. 교육장,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중등학교 교장	1. 중등학교 교감자격증 소지자 2.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장 또는 교감자격증 소지자 3. 교육장,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③제2항의 경력은 해당 직위에 임용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을 말한다.

**제3조(부관의 표시)** 교(원)장자격증을 수여할 때 그 자격증에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부관

내용을 표시하여 수여한다.(개정 2006.6.07)

1. 제2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6개월 내에 ○○○학교(원)에 임용되는 조건으로 함.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함.

2. 제2조 제2항 별표 1에 해당하는 자

6개월 내에 ○○○학교(원)에 임용되어 계속○년 근무하는 조건으로 함.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함.

**제4조(교육이수)** ①교(원)장자격인정 기준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소정의 교(원)장자격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장자격연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6.07)

1. 교육행정연수원 정규반(6개월) 과정 이수자

2. 교(원)장자격연수과정 이수자

3. 학교급별이 다른 교(원)장 자격증 소지자

4. 4년제 대학의 부교수, 교수 또는 전문대학의 교수로서 10년 이상의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5. (삭제)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 제5조의2 및 제6조(삭제 2000. 6. 1)**

**제7조 (내신절차)** 자격인정 대상자를 국 · 공립학교에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 내신절차를 병행하여야 하되, 교육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98. 1. 1)

**제8조 (자격인정의 취소)** ①교육감은 영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자격증 수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인정을 취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자격인정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1. 근무예정(원)교 또는 근무(원)교가 폐(원)교한 경우에는 폐(원)교 일로부터 6개월

2. 질병에 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질병 치유 시까지

3. 기타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간

② (삭제)

**제9조 (부관의 삭제)** ① 교육감은 자격인정에 의하여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영제2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수여조건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증의 이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부관을 삭제한다.(개정 98. 1. 1)

②근무기간은 교(원)장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2003.2.27,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37호)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6.07,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700호)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원)자격증의 부관설정기준

1. 1년간 계속 근무조건 해당자

자격구분	소지자격
유치원 원장	1. 유치원 1급 정교사자격증과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2. 유치원 2급 정교사자격증과 6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 준교사자격증과 8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특수학교 교장	1. 초등학교, 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1급 정교사자격증과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초등학교, 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급 정교사자격증과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3. 초등학교, 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과 8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초등학교 교장	1. 초등학교 1급 정교사자격증과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초등학교 2급 정교사자격증과 6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3.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과 8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4. 유치원원장 자격증 소지자
중등학교 교장	1. 중학교 또는 중등학교 1급 정교사자격증과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중학교 또는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6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3. 중학교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과 8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4. 초등학교교장 자격증 소지자

※ 비고 : 상급학교 자격은 하급학교 해당자격으로 인정한다.

2. 3년간 계속 근무조건 해당자 : 1년간 계속 근무조건 해당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

[별표 2] (삭제 98.1.1)

## 4. 관련 고시

### □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15호(2011.03.02)

[구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19호(2008.08.01)]

[구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161호(2008.01.08)]

###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 2011. 3. 2.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 - 1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6항 및 제7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임시교원양성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교원양성기관 및 교원연수기관 등에서 전공(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포함) 및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예정자 전체에게 적용한다.

**제3조(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부터 제5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유치원 교사 및 중등·특수(중등)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교과교육 영역을 8학점 이상(3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교육영역을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으로 한다.

③ 대학의 형편에 따라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교직'으로 할 수 있으며, '교직'으로 이수한 과목을 전공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에는 표시과목별로 기본이수과목으로 고시된 '교과 교육론'을 포함하여, '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 교재 및 연구법',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방법론' 등을 대학별로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과 논리 및 논술' 과목은 표시과목별로나 계열별 또는 범교과적으로 논술교육을 하거나, 학교급에 따라 '창의성 발달 지도' 등에 중점을 두어 교수요목을 구성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은 동일 계열 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일 계열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은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사회'(공통사회, 일반사회, 지리, 역사), '과학'(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환경'(환경, 자원·환경), '공업'(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냉동, 요업, 인쇄), '상업정보'(상업정보, 정보·컴퓨터), '농업'(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수산·해양'(수산·해양, 항해·기관, 냉동, 식품가공)으로 한다.

⑥ 기본이수과목 중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 50학점 이상에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다.

**제4조(기본이수과목의 이수)** ①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는 동일한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교원양성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의 기본과목(또는 분야)이다.

② 교사의 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는 [별표 3]과 같다.

③ 2급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별표 3]에 따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중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이수과목은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으로 한다.

④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특수학교(공통)란에서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과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및 중등학교의 표시과목 란에서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초등학교 전공과목의 이수) ① 초등학교 전공과목에는 반드시 예·체능 실기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전공과목 이수기준 외에 18학점 이상의 세부 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교직소양과목 중 '특수교육학 개론'은 교수요목에 '영재교육' 관련 단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직실무'는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학생문화', '학급관리와 학생지도' 등 교사로서 학습지도 영역 이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영역을 포괄하여 주제별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특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 신·편입학 하여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교육대학원에서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학력인정시설, 기타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 및 청소년상담센터 등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종별에 해당하는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할 자격이 있는 경우 '학교현장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관련 자격증 및 경력의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⑤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의 장이 인정한 '보조교사'나 '각종 봉사활동'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⑥ 사범대학(사범계학과 포함)과 교육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직과목을 '전공'으로 개설하여 이수하더라도 교직과목으로 인정한다. 단, 이 경우 '교육학'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전공)를 제외하고 전공으로 이수한 교직과목을 전공학점에 포함할 수 없다.

**제7조**(성적기준)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은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교육대학원의 졸업을 요건으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교원양성과정에 적용한다.

② 성적기준의 적용은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당해 대학의 성적표에 명시된 전체 최종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편입 및 재입학으로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한 성적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2항의 규정 이외에 교사자격 취득예정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제8조**(양성기관별 무시험검정 기준의 마련)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7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국가 수준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외에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이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의 실시, 외국어 표시과목 교사자격 취득예정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구사능력 요구 등을 의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마련 여부 및 그 시행 시기는 당해 기관에 설치된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자격표시)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의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제외)에 대한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의 기준은 전공과목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에는 기본이수과목을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교과교육영역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표시과목이 없는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특

수학교(초등)교사가 무시험검정 기준일 현재 임용된 교사자격 외에 별도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에 해당 전공에 승인된 표시과목을 부전공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대학원에서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 ①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대학·산업대학(원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제외)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②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④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시 교육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동일한 학교급 및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부여한다. 이때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되, 부전공 표시과목은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임용된 현직교사의 경우에는 주전공과 부전공 표시과목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⑤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의 무시험검정은 제3조제4항 및 [별표 1]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학점 및 기본이수과목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수교육 관련학과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또는 표시과목 중 하나를 부여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 관련학과라 함은 대학·산업대학에서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부여하고자 하는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을 최소 30학점 이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 관련 전공을 둘 이상 복수전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한다.

**제11조(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점 중복인정)** ①연계전공(공통과학, 공통사회, 기술·가정, 도덕·윤리) 이수자의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15학점까지 중복인정이 가능하며, 나머지 35학점은 타 표시과목의 전공과목을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개정(교육인적자원부령 제761호, 2000. 1.28)에 따라 통합된 표시과목의 경우 전공과목은 통합 전의 표시과목 전공분야에서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③ 동일계열의 표시과목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교과교육영역 포함)은 15학점까지 중복인정할 수 있다.

**제12조(과목의 명칭과 교육과정 운영)** ①교원양성기관에서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과 명칭을 달리하여 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내용과 고시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결재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②고시된 기본이수과목 중 1개의 과목을 2개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한 경우 이중 1개의 과목만 이수하여도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1개의 과목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기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기본이수과목으로는 1개만 인정한다.

③고시된 교직과목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1개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개설하거나,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교육대학원의 재학 중 동 대학 내 학부에 개설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선수학점으로 이수한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2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키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은 입학년도와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다.

제2조(전공·교직과목 및 성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부터 제4항, 제4조제2항부터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및 부전공 연수 이수자
2.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교육대학원 입학자가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하는 자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휴학자 포함) 중이거나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한 자와 이미 대학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를 적용한다.

1. 1978~1982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문교부 제414호(1978.2.25)
2. 1983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문교부 제82-2호(1982.6.23)
3. 1984~199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문교부 제83-11호(1983.11.9)
4. 1995~1997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부 제1994-7호(1994.9.26)
5. 1998~199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부 제1997-11호(1997.12.9)
6. 2000~200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인적자원부 제2000-1호(2000.1.28)
7. 2005~2008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인적자원부 제2004-5호(2004.6.9)
8. 200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과학기술부 제2009-29호(2009.7.13) 단, 2008-119호(2008.8.1)에 의하여 이수한 과목은 인정한다.

[별표 1]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 주전공 및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자격종별	세부 이수기준
유치원 정교사(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학점 이상</li> <li>-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li> <li>-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li> </ul>
초등학교 정교사(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학점 이상</li> <li>-교과교육 및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li> <li>-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li> </ul>
중등학교 정교사(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학점 이상</li> <li>-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li> <li>-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li> </ul>
특수학교 (유치원/초등/중등) 정교사(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0학점 이상</li> <li>-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li> <li>-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 표시과목(중등) 관련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li> <li>※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li> </ul>
보건교사/영양교사/ 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학점 이상</li> <li>-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li> <li>-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li> <li>※보건교사의 경우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불가</li> </ul>
준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학점 이상</li> <li>-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li> <li>-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li> <li>※복수전공 불가</li> </ul>
실기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학점 이상</li> <li>-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li> <li>※복수전공 불가</li> </ul>

□ 부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자격종별	부전공 자격연수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중등학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8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li> <li>-교과내용 영역 30학점 이상</li> <li>-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li> <li>-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li> <li>-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li> </ul>

[별표 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준교사	실기교사
교직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li> <li>-교육학개론</li> <li>-교육철학 및 교육사</li> <li>-교육과정</li> <li>-교육평가</li> <li>-교육방법 및 교육공학</li> <li>-교육심리</li> <li>-교육사회</li> <li>-교육행정 및 교육경영</li> <li>-생활지도 및 상담</li> <li>-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li> <li>-교육학개론</li> <li>-교육철학 및 교육사</li> <li>-교육과정</li> <li>-교육평가</li> <li>-교육방법 및 교육공학</li> <li>-교육심리</li> <li>-교육사회</li> <li>-교육행정 및 교육경영</li> <li>-생활지도 및 상담</li> <li>-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li> <li>-교육학개론</li> <li>-실기교육방법론</li> </ul>
교직소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학점 이상</li> <li>-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li> <li>-교직실무(2학점 이상)</li> </ul>		
교육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학점 이상</li> <li>-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li> <li>-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li> </ul>		
합계	총 22학점	총 10학점	총 4학점

[별표 3]<2011.2.28개정>

□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1.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보통교과 관련 표시과목(25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국어 Korean Language	국어교육, 국어국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국어교육론 (2)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3)국문학개론, 국문학사 (4)문학교육론(소설교육론 또는 시가교육론, 또는 희곡교육론, 또는 수필교육론) (5)의사소통교육론(표현교육론, 이해교육론)	(1)-(5)분야 중 각 분야에서 1 과목 이상 이수
도덕·윤리 Ethics	(국민)윤리교육, 철학, 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도덕·윤리교육론 (2)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한국윤리사상, 윤리고전강독, 응용윤리(또는 사회윤리), 윤리와 논술 (3)민주주의론, 통일교육론, 시민교육론, 도덕심리학(또는 발달심리학), 도덕사회학	(1)분야에서 1 과목, (2)-(3)분야 중 각 분야에서 3 과목 이상 이수
공동사회 Integrated Social Studies	사회교육, 일반사회교육, 지리교육, 역사교육, 공동사회교육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공동사회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2)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제학), 문화와사회(또는 사회학), 법과사회(또는 법학), 인간과사회(문화인류학) (3)한국사개론, 동양사개론, 서양사개론, 역사학개론, 문화사(한국문화사, 동양문화사, 서양문화사) (4)자연지리학(개론), 인문지리학(개론), 한국지리, 세계지리, 지도학	(1)분야에서 1 과목, (2)-(4)분야 중 각 분야에서 3 과목 이상 이수(주전공 표시과목 해당 분야 제외)
일반사회 Social Studies	사회교육, 일반사회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일반사회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제학), 문화와사회(또는 문화인류학), 법과사회(또는 법학), 사회과학방법론, 인간과사회(또는 사회학), 인간과행정(또는 행정학), 시민교육과사회윤리	
지리 Geography	지리교육, 지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지리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자연지리학, 인문지리학, 도시지리학, 경제지리학, 문화지리학, 지형학, 기후학, 환경지리학, 한국지리, 세계지리(또는 지역지리), 지도학(또는 지리정보론), 인구지리학, 역사지리학, 촌락지리학, 정치지리학, 사회지리학, 자원지리학	

<p>역사 History</p>	<p>역사교육, 역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1)역사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2)역사학방법론(역사학개론, 사료강독) (3)분야사(한국근현대사, 한국사회경제사, 한국사상·문화사, 한국대외교류사, 동서교류사, 사학사) (4)한국사(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세사, 한국근대사) (5)세계사(동아시아 고대사, 동아시아 중세사, 동아시아 근세사, 동아시아 근대사, 서양고대사, 서양중세사, 서양근대사, 인도·동남아시아사, 서남아시아·아프리카사, 아메리카사) (6)현대사(한국현대사, 동아시아현대사, 서양현대사, 20세기현대사, 현대세계와한국)</p>	<p>(1)-(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 과목 이상 이수</p>
<p>수학 Mathematics</p>	<p>수학교육, 수학, 전산통계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수학교육론, 정수론, 복소해석학, 해석학, 선형대수, 현대대수학, 미분기하학, 기하학일반, 위상수학, 확률및통계, 조합및그래프이론</p>	
<p>공통과학 Common Science</p>	<p>과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 공통과학교육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1)공통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2)일반물리학 및 실험, 전자기학, 현대물리학 (3)일반화학 및 실험, 무기화학, 유기화학 (4)일반생물학 및 실험, 세포학, 분자생물학 (5)지구과학 및 실험, 지질학, 대기과학</p>	<p>(1)분야에서 1 과목, (2)-(5)분야 중 각 분야에서 2 과목 이상 이수(주전공 표시과목 해당 분야 제외)</p>
<p>물리 Physics</p>	<p>과학교육, 물리교육, 물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물리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역학, 양자역학, 전자기학, 열및통계물리, 파동및광학, 전산물리, 현대물리학, 물리교육실험</p>	
<p>화학 Chemistry</p>	<p>과학교육, 화학교육, 화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화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물리화학, 물리화학 실험, 유기화학, 유기화학 실험, 무기화학, 무기화학 실험, 분석화학, 분석화학 실험</p>	
<p>생물 Biology</p>	<p>과학교육, 생물교육, 생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생명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세포학, 발생학, 식물생리학, 동물생리학, 유전학, 분류학, 생태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물화학</p>	
<p>지구과학 Earth Science</p>	<p>과학교육, 지구과학교육, 지구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지구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지질학, 천문학, 대기과학, 해양학, 지구물리학, 지구환경과학, 자연재해와에너지자원</p>	

<p>기술 Technology</p>	<p>기술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1)기술교육론 (2)제조기술(제도, 기계) (3)건설기술(토목, 건축), (4)수송기술(에너지, 자동차공학) (5)정보통신기술(전기,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6)생명기술(재배사육, 생명기술기초, )</p>	<p>(1)-(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 과목 이상 이수</p>
<p>가정 Home Economics</p>	<p>가정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1)가정교육론 (2)영양학, 식품과조리 (3)의복재료와관리, 의복디자인과구성 (4)주거학, 실내디자인 (5)가정경영, 소비자학 (6)아동학, 가족학 (7)가정생활과복지, 가정생활문화, 가정생활과진로</p>	<p>(1)-(7)분야 중 각 분야에서 1 과목 이상 이수</p>
<p>기술·가정 Technology &amp; Home Economics</p>	<p>기술교육, 가정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1)기술·가정교육론(또는 기술교육론, 또는 가정교육론) (2)①제조기술(제도, 기계), ②건설기술(토목, 건축), ③수송기술(에너지, 자동차공학), ④통신기술(전기,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⑤생명기술(재배사육, 생명기술기초) (3)①영양학, 식품과조리, ②의복재료와관리, 의복디자인과구성, ③주거학, 실내디자인, ④가정경영, 소비자학, ⑤가족학, 아동학, ⑥가정생활과복지, 가정생활문화, 가정생활과진로</p>	<p>(1)분야에서 1 과목, (2)의 ①~⑤와 (3)의 ①~⑥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하되, ※가정 전공은 기술분야에서, 기술 전공은 가정분야에서 각각 35학점 이상 이수</p>
<p>체육 Physical Education</p>	<p>체육교육, 체육학, 무용(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체육교육론, 체육사·철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체육측정 평가, 건강교육, 무용교육, 운동실기, 특수체육, 운동학습 및 심리(또는 스포츠심리 및 운동학습), 여가레크리에이션</p>	
<p>음악 Music</p>	<p>음악교육, 음악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음악교육론, 음악(국악)교수법, 전공실기, 국악실기, 시창·청음, 국악가창지도법, 합창·합주지도법, 국악개론, 국악사, 서양음악사, 화성법, 음악분석및형식론, 장구반주법, 피아노반주법</p>	
<p>미술 Fine Arts</p>	<p>미술교육, 미술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미술교육론, 현대미술론, 소묘, 색채학, 한국화, 서양화, 조소, 공예, 디자인, 판화, 표현기법, 서예, 영상(또는 애니메이션), 미술사(한국, 동양, 서양미술사 포함)</p>	

영어 English	영어교육, 영어영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영어교육론(또는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 또는 외국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어문법(또는 영어문법지도법), 영어회화(또는 실용영어, 또는 영어말하기지도법), 영어작문(또는 영어쓰기지도법), 영어독해(또는 영어읽기지도법), 영어음성음운론, 영미문화
독일어 German	독어교육, 독어독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독일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독일어학개론, 독일어권문학개론, 독일어문법, 독일어회화, 독일어강독, 독일어작문, 독일어권문화, 독일문학사
프랑스어 French	불어교육, 불어불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프랑스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프랑스어학개론, 프랑스문학개론, 프랑스어문법, 프랑스어회화, 프랑스어강독, 프랑스어작문, 프랑스어권문화, 프랑스어 발음연습
스페인어 Spanish	스페인어교육, 서어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스페인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스페인어학개론, 스페인어권문학개론, 스페인어문법, 스페인어회화, 스페인어강독, 스페인어작문, 스페인어권문화,
중국어 Chinese	중국어교육, 중어중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중국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중국어학개론, 중국문학개론, 중국어문법, 중국어회화, 중국어작문, 중국어강독, 한문강독, 중국어권문화
일본어 Japanese	일어교육, 일어일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일본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일본어학개론, 일본문학개론, 일본어문법, 일본어회화, 일본어작문, 일본어강독, 일본문화
러시아어 Russian	러시아어교육, 노어노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러시아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러시아어학개론, 러시아문학개론, 러시아어문법, 러시아어회화, 러시아어작문, 러시아어강독, 러시아문화
아랍어 Arabic	아랍어교육, 아랍어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아랍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아랍어학개론, 아랍문학개론, 아랍어문법, 아랍어회화, 아랍어작문, 아랍어강독, 아랍문화, 아랍어구어체연구
한문 Chinese Characters	한문교육, 한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한문교육론, 한문학개론, 한문문법, 한문학사, 경서강독, 한문국역연습, 한시선독, 한문소설선독, 역대산문선독, 문자학개론

<p>교련 Safety &amp; Health</p>	<p>보건교육, 보건과학, 간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보건교육론, 기초건강과학(또는 공중보건학), 지역사회보건교육(또는 지역사회간호학), 안전교육학, 응급처치(또는 구급간호학), 환경보건(또는 보건관리), 신체발육발달론, 보건행동론, 건강상담, 학교보건, 산업보건, 역학(또는 질병관리), 보건통계, 보건기획및관리, 성교육</p>
<p>철학 Philosophy</p>	<p>철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철학교육론, 논리학, 윤리학, 인식론, 형이상학, 한국철학사, 동양철학사, 서양철학사, 비판적사고와논술, 철학교전선독및철학논변연습, 철학교육방법론</p>
<p>심리학 Psychology</p>	<p>교육심리학, 교육학, 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심리학개론, 발달심리학,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인지심리학, 산업(조직)심리학, 생리(생물)심리학, 임상심리학, 심리검사, 사회심리학, 학습심리, 청소년심리</p>
<p>교육학 Pedagogics</p>	<p>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교육학 개론,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론, 교육철학, 교육심리, 교육평가,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학교-학급경영, 학교상담론, 교육공학, 평생교육, 교사론, 교육사(한국교육사 포함), 교육조직관리론, 교육경제론, 교육정책론, 비교교육학, 교육연구방법</p>
<p>종교 Religion</p>	<p>종교교육, 종교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종교교육론, 종교학개론, 종교현상학, 종교철학, 한국종교, 종교사회학(또는 종교인류학), 종교심리학, 세계종교(또는 종교사, 또는 비교종교학), 현대종교, 종교와과학, 종교학사, 종교와문화</p>
<p>환경 Environment Science</p>	<p>환경교육(학), 환경학, 농업교육, 생물교육, 화학, 화학공학, 해양환경학, 환경공학, 지구과학교육, 지리교육, 수산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환경교육론, 대기오염론, 수질오염론, 토양오염론, 환경법과정책, 지구환경론, 생물환경론, 환경지리학, 해양환경론, 환경보호론</p>
<p>상담 School Counseling</p>	<p>교육학, 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상담이론, 생활지도, 심리검사, 발달심리학, 집단상담, 진로상담, 심리치료, 청소년심리, 상담실습, 학교사회사업, 이상심리, 사회심리학, 학습심리, 성격심리, 특수아지도와상담, 교육심리학, 학습상담, 비행및부적응상담</p>

진로진학상담 <b>Career Education &amp; Guidance</b>	진로교육, 직업(산업)교육, 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진로교육개론, 청소년 진로특성 진단 및 활용, 진로진학지도 프로그램 활용 및 운영, 직업세계와 직업정보 탐색, 진로체험과 지역사회, 진학지도기법의 이론과 실제, 교육세계와 진학정보 탐색, 특수집단의 진로 진학지도, 학부모 진로진학지도상담	
--	--------------------------------------	--	--

2.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전문교과 관련 표시과목(34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식물자원 · 조경 Plant Resources & Landscaping	농업교육, 농학, 원예학, 임학, 조경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농업교육론, 작물, 원예, 육종, 생리, 농업정보, 조경계획, 조경관리, 식물자원, 생명공학, 유전학, 조림학, 조경시공	
동물자원 Animal Resources	농업교육, 축산학, 잠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농업교육론, 축산, 가축사양, 가축위생, 가축번식, 애완동물, 축산물가공, 농업정보, 동물사료, 동물생명과학, 동물영양학	
농공 Agricultural Engineering	농업교육, 농공학, 농업기계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농업교육론, 농업공학, 농업기계, 농업토목, 농업수리, 농업정보, 농산가공기계학, 농지조성, 농업시설, 농업기계설계학, 유체역학, 농업동역학	
농산물유통 Agricultural Products Distribution	농업경제학, 농업교육(농업경제 및 유통전공), 농업경영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농업교육론, 농업과학개론, 농산물유통,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업전산일반, 응용계량 경제학, 농산물 가격론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농업교육, 수산교육, 수산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축산가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농업교육론(또는 수산교육론 또는 공업교육론), 식품화학, 식품가공, 식품위생, 유기화학, 농산물가공, 수산물가공, 식품재료학, 식품위생법규, 식품미생물학, 식품저장, 식품생명공학, 축산물가공, 발효공학, 식품분석	

<p>정보·컴퓨터 Information &amp; Computer</p>	<p>컴퓨터(공학)교육, 컴퓨터(공)학, 산통계학, 전자계산학, 상업교육, 수산교육, 농업교육, 산업공학, 해사정보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컴퓨터교육론, 컴퓨터프로그래밍, 데이터구조,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컴퓨터구조, 컴퓨터네트워크, 정보통신윤리, 시스템프로그래밍, 논리회로, 알고리즘, 이산구조, 시스템분석및설계, 프로그래밍언어론, 소프트웨어공학, 인공지능</p>	
<p>전기·전자·통신 Electrical &amp; Electronic &amp; Communication Engineering</p>	<p>전기공학교육, 전기공학, 전기제어공학, 전자공학, 항공전자(공)학, 전자재료공학, 제어계측공학, 컴퓨터(공학)교육, 컴퓨터(공)학, 전자계산기공학, 통신공학, 항공통신공학, 전자통신공학, 통신학, 전파공학, 정보통신공학, 전자기계공학, 수산교육, 수산해양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공업교육론, 전기일반,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제어공학, 전기설비및법규, 디지털시스템, 전력공학, 전력전자공학, 디지털회로실험(또는 디지털회로설계), 통신이론, 전자기기, 반도체공학, 전기전자실험, 마이크로프로세서, 전자파응용, 마이크로파공학, 안테나공학, 디지털통신, 무선통신시스템, 정보통신(또는 컴퓨터네트워크)</p>	
<p>화공·섬유 Chemical Engineering &amp; Textile</p>	<p>화학공학교육, 공업화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정밀화학공학, 섬유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공업교육론, 화공양론(또는 섬유가공학), 물리화학(또는 섬유화학), 유기화학(또는 염색화학), 화공열역학, 단위조작, 반응공학, 공정제어, 생물화학공업, 고분자공학(또는 섬유가공학), 분석화학, 섬유물리, 방적공학, 제포공학(또는 편성공학), 공업화학</p>	
<p>기계·금속 Mechanical Engineering &amp; Metallurgy</p>	<p>기계공학교육, 기계공학, 정밀기계공학, 생산기계공학, 항공(기계)공학, 조선공학, 선박해양공학, 기계공학교육(자동차전공), 자동차공</p>	<p>공업교육론, 고체역학(또는 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또는 금속열역학), 내연기관, 기계설계(또는 자동차설계), CAD/CAM, 기계공학(또는 NC가공), 정밀공학(또는 일반공학기계), 용접공학(또는 접합공학), 배관공학, 박용기관, 일반조선공학(또는 선박설계), 자동차공학(또는 자동차공학개론), 유압공학, 전기공학(또는 제어공학), 전자회로</p>	

	학, 전자기계공학, 재료공학, 금속공학교육, 금속(공)학, 금속재료공학, 금형설계학, 기관공학, 수산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또는 디지털회로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설계, 정밀공학, 센서및신호처리, 전자기계, 금속재료(또는 기계재료), 금속조직학, 화학야금학(또는 물리야금학), 금속강도학, 철강재료학, 금속제련학, 주조공학(또는 소성가공), 부식방식학	
자원·환경 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al Technology	자원공학, 지질학, 환경공학, 해양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공업교육론(또는 환경교육론), 물리탐사, 광상학, 암석학, 광물학, 지사학, 구조지질학, 채광학, 자원공학, 광물처리, 자원개발, 환경공학, 수질분석실험, 생활폐기물처리, 환경공학설계, 환경설비, 환경오염측정, 해양학개론, 해양오염론, 대기오염론, 수질오염론, 토양오염론	
건설 Construction	건축공학교육, 건축(공)학, 토목공학교육, 토목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공업교육론, 기초공학, 건축구조, 환경계획 및실험, 환경위생공학(또는 상하수도공학), 건축설비, 건축재료(또는 토목재료), 구조역학(또는 응용역학), 건축설계(또는 강구조토목설계), 건축시공(또는 토목시공), 건축계획, 철근콘크리트구조, 측량학, 지도학, 지적학, 사진판독법, 지형정보론(또는 지리정보시스템), 토질역학, 수리학, 도시계획, 교통계획, 토지이용계획, 토목계획	
요업 Ceramic	도예, 요업공학, 무기재료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공업교육론, 요업원료학, 내화물공학, 결정구조학, 요업물리, 시멘트공학, 유리공학, 요업공정, 강도학, 요업재료, 분체공학	
인쇄 Printing	인쇄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공업교육론, 인쇄공학(화상공학), 인쇄재료, 인쇄기계, 제판공학, 특수인쇄, 색분해(품질관리), 사진제판실습, 인쇄실습, 컴퓨터전산, 컴퓨터그래픽	
상업정보 Commercial Information	상업교육, 상경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상업정보교육론, 회계원리, 경영학원론, 무역영어, 무역실무, 전자계산개론(또는 프로그래밍), 전자계산실무(또는 컴퓨터그래픽), 경영정보론(또는 비서학개론), 상업경제, 마케팅관리론, ERP개론, 유통정보개론, 무역학개론, 창업일반, 물류관리론, 경영과 법, 회계실무, 정보보안, 정보통신윤리, 경영정보	

<p>수산·해양 Fishery Marine</p>	<p>수산교육, 수산학, 해양공학, 해양(환경)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1)수산교육론 (2)어업학개론, 수산학개론, 어구어법학, 선박운용, 항해학, 수산자원학(또는 해양생물), 수산물유통(또는 수산경영학), 어장학 (3)양식학개론, 어류양식(또는 무척추동물양식), 어병학, 동물학 (4)해양학개론, 해양환경, 해양레저, 해양오염론(또는 수독성학)</p>	<p>(1)에서 1과목 (2),(3),(4)에서 각 2과목 이상</p>
<p>항해·기관 Navigation &amp; Ship Engineering</p>	<p>수산교육, 기계공학, 기계교육공학, 자동차공학, 항해·기관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1)수산교육론(또는 공업교육론) (2)보조기계, 기관설계공학(또는 기계요소설계), 자동제어(또는 계측공학), 열역학, 유체역학, 재료역학, 내연기관, 기관관리, 전기공학 (3)전파항해학, 지문항해(또는 천문항해), 해상안전공학, 해양기상, 선박조종, 해사법규, 해상교통법, 선박관리(또는 선박운용), 선화운송론</p>	<p>(1)에서 1과목 (2),(3)에서 각 3과목 이상</p>
<p>냉동 Refrigeration</p>	<p>수산교육, 냉동(공조)공학, 기계공학, 기계교육공학, 자동차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수산교육론(또는 공업교육론), 냉동공학, 공기조화, 냉동설비설계, 냉동공조산업, 동역학, 기계설계, 수산학개론, 열역학, 열전달, 유체기계</p>	
<p>의상 Clothing &amp; Design</p>	<p>가정교육학, 의류학, 의상디자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의류교육론, 복식디자인, 서양의복구성, 한복구성, 패션마케팅, 섬유재료학, 의복위생학, 복식사회심리학, 자수, 니트웨어디자인, 복식사, 디자인과색채</p>	
<p>조리 Culinary</p>	<p>가정교육, 조리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조리교육론, 조리과학, 한국조리, 외국조리, 제과·제빵, 식품가공, 단체급식, 영양학, 식품위생, 식품구매, 식사요법, 외식경영및관리학</p>	
<p>미용 Cosmetology</p>	<p>가정교육, 미용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미용교육론, 미용학개론, 피부미용, 헤어미용, 네일미용, 화장품학, 메이크업, 공중보건학, 해부학(또는 생리학해부학), 소독 및 전염병학(또는 위생학)</p>	
<p>사진 Photography</p>	<p>사진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p>	<p>사진교육론, 사진학개론, 사진사, 사진편집, 사진촬영기법, 암실실기, 컬러사진, 사진기구조, 광고사진론, 보도사진론, 디지털사진촬영, 디지털사진표현기법, 사진감상과비평</p>	

디자인 · 공예 Design & Craft	디자인학, 공예학, 산업공예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 학과)	디자인 · 공예교육론, 기초소묘, 기초조형, 색채학, 그래픽디자인, 시각디자인, 영상디자인, 공업디자인, 제품디자인, 실내디자인, 가구디자인, 디스플레이, 금속공예, 목공예, 도자공예, 섬유공예, 염색공예,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 유리공예	
연극영화 Drama & Movie	연극영화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 학과)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사, 영화사, 연극개론, 극작, 연기(화술), 연극제작, 영화개론, 시나리오작법, 영화기술, 영화제작실습, 창작연극워크샵, 스토리텔링워크샵, 영화분석과 비평	
관광 Tourism	관광(경영)학, 호텔경영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 학과)	관광교육론, 관광경영학원론(관광학원론), 여행사경영론, 호텔경영론, 관광교통론, 관광자원론, 관광법규, 관광경영론, 식음료경영론, 관광개발론, 산업체현장실습, 관광경영전략, 호텔관광서비스론, 컨벤션산업론	

3. 특수학교 교사(Special Education Teacher)

자격종별/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특수교육 영역(공통) Special Education	특수교육과 관련되는 학부(전공 · 학과)	특수교육학, 특수학교교육과정론, 장애학생 통합교육론, 장애아진단및평가, 특수교육공학, 시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신지체아교육, 지체장애교육, 중복 · 중증장애교육, 정서 · 행동장애아교육, 자폐성장애아교육, 의사소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건강장애아교육	특수 학교(유치원/초등/중등)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통 기본 이수과목(또는 분야)
특수학교 (유치원) Special Education Teacher (Kindergarten)	유아특수교육과 관련되는 학부(전공 · 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 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유아특수교육	특수 교육 영역(공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특수학교 (초등) Special Education Teacher (Elementary)	초등특수교육과 관련되는 학부(전공 · 학과)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등과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실과, 초등영어, 초등컴퓨터, 통합교과,	특수 교육 영역(공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특수학교 (중등) Special Education Teacher (Secondary)	중등 특수 교육 과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특수교육영역(공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중등 표시 과목별(직업교육/이료/재활복지 제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 야)은 일반 중등학교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을 적용함	
특수학교 (중등) 직업교육 Special Vocational Education	직업특수교육 관 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직업재활개론, 직업평가, 직업재활상담, 재 활정책론, 재활실습, 전환교육, 직업과진로 개발, 직업적응훈련, 보호및지원고용, 장애 진단및평가, 특수학교교육과정의 직업교과 지도론	
특수학교 (중등) 이료 Oriental Physiotherapy Education	이료와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해부·생리(실습), 병리, 한방(실습), 보건, 안마·마사지·지압 및 실습, 침구 및 실습, 진단(실습), 전기치료 및 실습, 이료 임상 및 실습	
특수학교 (중등) 재활복지 Rehabilitation & Welfare	특수교육, 물리치 료학, 재활과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특수교육학, 정신지체아교육, 지체부자유아 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정서행동장애아교육,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육공학	

4.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그 밖의 교사

자격종별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유치원 정교사(2급) Kindergarten Teacher	유아교육학, 아동 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 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 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 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 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부모교육	
초등학교 정교사(2급) Elementary Teacher	초등교육과(전공)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 등과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 실과, 초등영어, 초등컴퓨터, 통합교과	

보건교사 (2급) School Health Teacher	간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보건교육론,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상담이론과실제, 기초건강과학, 건강사정및실습, 학교보건및실습, 아동간호학및실습, 성인간호학및실습, 정신간호학및실습, 지역사회간호학및실습, 응급간호학및실습, 모성간호학및실습	
사서교사 (2급) School Librarian Teacher	문헌정보교육, 문헌정보학, 도서관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분류학, 목록학, 도서관전산화, 독서지도론, 정보검색, 정보봉사론, 학교도서관운영, 정보매체론	
영양교사 (2급) School Nutrition Teacher	영양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영양교육및상담실습 (2)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3)단체급식및실습, 식품위생학 (4)영양관정및실습, 식사요법및실습 (5)식품학, 조리원리및실습	(1)에서 1과목, (2),(3)에서 각 2과목 이상 (4),(5)에서 각 1과목 이상
전문상담교사(2급) School Counselor	상담·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심리학개론, 심리검사, 성격심리학,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심리치료(또는 임상심리학),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 상담실습, 직업교육론, 직업정보, 진로지도, 학습심리학, 이상심리학	

5. 실기교사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농업계 (9개)	축산 Livestock Farming	축산과, 낙농과, 사료과	축산일반실습, 사료재배 및 사양실습, 축산가공실습	
	잠업 Sericulture	잠업과	양잠일반실습, 작물보호실습, 농업경영실습	
	원예 Horticulture	원예과	원예일반실습, 작물보호실습, 농업경영실습	
	임업 Forestry	임업과, 임산공업과	사방실습, 조림실습, 임산가공실습	
	조경 Landscape Architecture	조경과	조경설계제도실습, 조경재료실습, 조경환경 및 보호실습	
	농업기계 Agricultural Machinery	농업기계과	농업공작실습, 농업기계실습, 농기계관리실습	
	농업토목 Agricultural	농업토목과	토목재료 및 시공실습, 농지조성실습, 농지측량실습	

	Civil Engineering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식품제조과, 식품가공과, 식품공업과, 수산가공과	식품제조 및 관리실습, 식품화학실습, 식품위생실습	
	수의 Veterinary Medicine	수의학과	가축생리 및 위생실습, 가축질병실습, 가축번식실습	
공업계 (27개)	기계 Machinery	기계과, 기계설계과, 기관과	기계설계제도, 기계공작, 기계수리실습	
	자동차 Automobile	자동차과, 자동차정비과	자동차새시, 자동차기관, 자동차정비 및 전기실습	
	항공 Aeronautics	항공운항과	항공기기체실습, 항공기엔진실습, 항공기계통실습	
	철도운전 Train Operation	철도운전과	철도운전실습, 철도차량실습, 기계설계제도 및 기계공작실습	
	철도업무 Railroad Service	철도경영정비과, 철도운수과	철도운수실습, 철도행정실습, 부기실습	
	조선 Shipbuilding	조선과	조선제도 및 현도, 선체조립, 선체가공	
	주조 Casting	주조과	주조실습, 조형실습, 금속용해실습	
	용접 Welding	용접과, 용접기술과	가스용접 및 절단실습, 마이크용접, 특수용접(전기저항용접)	
	금속 Metallurgy	금속과	야금실습, 금속가공실습	
	전기공사 Electric Work	전기과	옥내 및 동력배선실습, 전기설비·설계 및 제도실습, 송배전 및 전기계측실습	
	건축 Architecture	건축과, 건축설비과	건축구조, 건축설계제도, 계획 및 시공실습	
	공예 Industrial Arts	공예과, 민속공예과, 산업공예과, 도자기공예과, 금속공예과	색채구성, 공예제도(도학) 디자인 실기	
	토목 Civil Engineering	토목과, 해양토목과	토목설계제도, 측량, 토질 및 재료실습	
	통신 Communication Engineering	통신과(공업계, 수산해운계 포함), 전자통신과	무선통신기기실습, 유선통신기기실습, 전기통신실	

	자원 Resources	자원개발과	광산측량실습, 채광실습, 광물 처리 및 탐사관련	
	화공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업과, 공업 화학과	화공 및 장치실습, 공업화학분 석실습, 화공설계제도	
	섬유 Textiles	섬유과	방직 및 방사실습, 염색가공실 습, 직물가공실습	
	요업 Ceramics	요업과	요업설계제도, 원료분석 및 요 업실습, 요업계측	
	전자계산기 Electronic Computer	전자과, 전자계산 기과	디지털기기실습, 전자계산기조 직 및 구조, 프로그래밍실습	
	제어계측 Control & Instrumentation	제어계측과	공업계측제어실습, 계장공사, 공업계측제도	
	열처리 Heating Technology	기계과, 금속과	철강열처리실습, 금속재료시험	
	환경공업 Environmental Engineering	환경공업과, 환경 보전과	환경학개론, 수질오염, 토양오 염,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절삭가공 Cutting Processing	기계과, 기계설계 과	선반실습, 밀링실습, 연삭 및 형평상실습	
	전기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과	전기회로실습, 전기기기실습, 전기제도, 자동제어실습	
	전자 Electronic Engineering	전자과	전자회로실습, 전자기기실습, 자동제어 실습	
	인쇄 Printing	인쇄과	인쇄기계실습, 제판실습, 그래 픽디자인	
	도자기 Pottery	도자기공예과	소묘, 도자기도안, 도자기제도 실습	
상업계 (6개)	속기 Stenographic	속기과	속기(국문, 영문)	
	부기 Bookkeeping	경영과, 세무회계 과	전표기입실무, 원장결산, 기장 실무	
	상업계산 Business Accounting	세무회계과, 경영 과	전표계산실무, 상업계산, 주산 실습	
	타자	비서학과, 행정	국문타자, 영문타자, 사무관리	

	Typing	과, 비서행정과		
	워드프로세서 Word Processor	비서과, 행정과, 비서행정과, 사무 자동화과, 전자계 산과	전자계산일반, 사무관리, 워드 프로세서	
	전자계산 Electronic Calculation	전자계산과, 전산 정보처리과	전자계산일반, 프로그래밍실습, 정보처리실습	
수 산 해운계 (4개)	항해 Navigation	항해과	지문항행실습, 선박운용실습, 적화법실습	
	수산양식 Fishery Cultivation	양식과	해양학실습, 수산생물실습, 양 식실습	
	기관 Heat Engine	기관과	선박기관 및 보조기계실습, 기 본설계공작실습	
	어업 Fisheries	어업과	어업일반실습, 수산경영실습, 항해 및 선박조정실습, 해양실 습	
가사· 실업계 (6개)	보육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개론, 아동음악지도, 아동발달	
	조리 Cooking	조리과	식품학, 조리원리, 조리실습	
	한재 Korean Clothing Construction	의상과, 의류과	한재재단, 봉제기법	
	양재 Western Clothing Construction	의상과, 의류과	양재재단, 봉제기법	
	수예 Manual Arts	의상과, 자수과	복식자수, 복식공예	
	실내디자인 Interior Design	실내장식과, 실내 디자인과	주택설계, 실내디자인, 가구구 성	
예능계 (4개)	사진 Photography	사진과	촬영실기, 암실작업 및 현상처 리, 사진편집	
	미술 Fine Arts	미술과, 응용미술 과, 회화과, 조소 과, 생활미술과, 동양화과, 공예 과, 산업공예학과	소묘, 조형실기(평면, 입체)	
	디자인 Designs	상업디자인과, 공 업디자인과, 시각	소묘, 디자인실기(그래픽, 공업 디자인)	

		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산업미술과, 생활미술과, 응용미술과, 장식미술과, 실내장식과		
	음악 Music	음악과, 성악과, 기악과, 작곡과, 국악과, 종교음악과, 관현악과, 교회음악과	시창, 청음, 전공실기(성악, 기악)	
체육계 (2개)	체육 Physical Education	체육과, 무도과, 무용과, 체육행정과	전공실기(육상, 체조, 수영, 구기, 무용 등 전공분야별)	
	교련 Safety & Health	체육과, 간호학과	교련실습(남 : 군사학, 여 : 간호학)	
기타계 (4개)	이용 Hair Beauty Art	이용과	이용실기	
	미용 Beauty Art	미용과	미용실기	
	사서 Librarian	도서관과	도서분류실습, 도서목록실습	
	재활복지 Rehabilitation & Welfare	재활과, 물리치료과	특수교육학, 치료교육실기	

□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5호(2004.6.9)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중등학교교사(특수학교교사,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영양교사 포함)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 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6.9>

**제2조(관련 학부 및 과목)** ①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 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②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란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과목 또는 분

야로서 교원양성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이수과목의 수)** 기본이수과목은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중 5과목(1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공통과목의 이수방법)** 공통과학 및 공통사회 표시과목은 전공과목에 대하여는 42학점 중, 부전공과목에 대하여는 30학점 중 기본이수학점(14학점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을 공통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분야에서, 공통사회는 일반사회, 역사, 지리의 분야에서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9>

**제5조(과목의 명칭과 교육과정)** 별표 1에 표시된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와 명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의 내용은 표시된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교육과정과 같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4.6.9>

☞ 2005~2008학년도 입학자(2007~2010학년도 편입학자 포함) 적용

**1. 중등학교교사(58개 표시과목)**

<인문계열> : 24개 표시과목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국어 Korean Language	국어교육, 국어국문 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국어교육론, 국어학 개론, 국문학 개론, 국어사, 국문학사, 국어문법론, 소설론(또는 시론, 또는 희곡론, 또는 수필론, 또는 의사소통론)	
수학 Mathematics	수학교육, 수학, 전산 통계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수학교육론, 정수론, 복소해석학, 해석학, 선형 대수, 현대대수학, 미분기하학, 위상수학, 확률 및 통계, 이산수학	
공통과학 Common Science	과학교육, 물리교육, 화 학교육, 생물교육, 지구 과학교육, 공통과학교 육전공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1)공통과학교육론 (2)일반물리학및실험 I,II, 고급물리학 I,II (3)일반화학및실험 I,II, 고급화학 I,II (4)일반생물학및실험 I,II, 고급생물학 I,II (5)지구과학및실험 I,II, 고급지구과학 I,II	(1),(2),(3),(4),(5) 분야에서 1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물리 Physics	과학교육, 물리교육, 물 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물리교육론, 역학, 전자기학, 양자물리, 열및통 계물리, 파동및광학, 전산물리, 현대물리학	
화학 Chemistry	과학교육, 화학교육, 화 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화학교육론, 물리화학및실험, 유기화학및실험, 무기화학및실험, 분석화학및실험	
생물 Biology	과학교육, 생물교육, 생 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생물교육론, 세포생물학, 발생생물학, 생리학, 유전학, 분류학, 생태학, 분자생물학, 형태학, 생화학, 미생물학	
지구과학 Earth Science	과학교육, 지구과학교 육, 지구과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지구과학교육론, 지질학, 천문학, 대기과학, 해 양학, 지구물리학, 지구환경과학	
공통사회 Common Social Stduies	사회교육, 일반사회교 육, 지리교육, 역사교 육, 공통사회교육전 공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1) 공통사회교육론 (2) 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제학), 문화와사회(또는 사회학), 법과사회 (또는 법학) (3) 한국사개론, 동양사개론, 서양사개론, 역사학 개론, 문화사(한국문화사, 동양문화사, 서양 문화사) (4) 자연지리학(개론), 인문지리학(개론), 한국지 리, 세계지리, 지도학	(1),(2),(3),(4)분 야에서 각각 1 과목(3학점) 이 상 이수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일반사회 Social Studies	사회교육, 일반사회 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일반사회교육론, 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제학), 문화와사회(또 는 문화인류학), 법과사회(또는 법학), 사회 과학방법론, 인간과사회(또는 사회학)	
역사 World & Korean History	역사교육, 역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역사교육론, 역사학개론(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대사(한국고대사, 동양고대사, 서양고대사), 중세사(한국중세사, 동양중세사, 서양중세사), 근대사(한국근대사, 동양근대사, 서양근대사), 현대사(한국현대사, 동양현대사, 서양현대사)	
지리 Geography	지리교육, 지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지리교육론, 자연지리학, 인문지리학, 도시 지리학(또는 촌락지리학), 경제지리학(또는 자원지리학), 문화지리학(또는 역사지리학), 지형학, 기후학, 환경지리학, 한국지리, 세 계지리(또는 지역지리), 지도학(또는 지리 정보론 및 원격탐사론, 또는 계량지리학), 인구지리학(또는 정치지리학)	
도덕· 윤리 Ethics	(국민)윤리교육, 철학, 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 도덕·윤리교육론 (2) 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 상, 한국사상개론, 윤리고전강독(또는 동서양고전강독, 또는 논술) (3) 민주주의론, 국가안보론, 통일교육론, 시 민교육론, 도덕(발달)심리학	(1)분야에서 1 과목, (2), (3) 분야에서 각 각 2과목(6학 점)이상 이수
상담 Counseling	교육학, 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상담이론, 생활지도, 심리검사, 발달심리학, 집 단상담, 진로상담, 심리치료, 청소년 심리, 상담 실습, 학교사회사업, 이상심리, 아동심리, 유아 심리, 사회심리학, 학습심리, 성격심리, 특수아 지도와 상담, 교육심리학	
교육학 Education	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교육학개론,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론, 교 육철학, 교육심리, 교육평가,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학교-학급경영, 학생상담의이론 과실제, 교육공학, 평생교육(또는 교사론), 교육과컴퓨터, 도덕교육론	
종교 Religion	종교교육, 종교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종교교육론, 종교학개론, 종교현상학, 종교 철학, 한국종교, 종교사회학(또는 종교인류 학), 종교심리학, 세계종교(또는 종교사, 또 는 비교종교학), 현대종교, 종교와과학, 종 교학사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철학 Philosophy	철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철학교육론, 논리학, 윤리학, 인식론, 형이상학, 한국철학사, 동양철학사, 서양철학사, 철학과논술, 철학교전선독	
심리학 Psychology	교육심리학, 교육학, 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발달심리학,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인지심리학, 산업(조직) 심리학, 생리(생물)심리학, 임상심리학, 심리검사, 사회심리학, 학습심리	
환경 Environmental Science	환경교육(학), 환경학, 농업교육, 생물교육, 화학, 화학공학, 해양환경학, 환경공학, 지구과학교육, 지리교육, 수산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환경교육론, 대기오염론(또는 대기환경론), 수질오염론(또는 수리학), 토양오염론(또는 토양학, 폐기물처리론), 환경정책(또는 환경평가), 지구환경론, 생물환경론(또는 생태학, 독성학), 환경지리학 (또는 도시와환경, 산업과환경), 해양환경론(또는 해양오염론), 환경과학개론(또는 환경화학), 농업환경, 자연환경보호론	
체육 Physical Education	체육교육, 체육학, 무용(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스포츠교육학, 체육원리, 체육사, 운동학습 및 심리, 스포츠 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운동실기, 체육측정 평가, 보건론, 한국무용	
교련 Military Training	보건교육, 보건과학, 간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보건교육론, 기초건강과학(또는 공중 보건학), 지역사회보건교육(또는 지역사회간호학), 국가안보론, 안전교육학, 응급처치(또는 구급간호학), 환경보건(또는 보건관리), 신체발육발달론, 아동건강간호학, 건강생활(또는 성인-노인간호학), 보건영양(또는 모성간호학), 역학및전염병관리(또는 정신간호학),	
음악 Music	음악교육, 음악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음악교육론, 서양음악 실기(또는 전공실기), 화성법, 대위법, 시창청음, 국악개론, 국악실기, 작곡, 지휘, 한국음악사, 서양음악사, 음악형식론, 장구반주법, 피아노반주법	
미술 Fine Arts	미술교육, 미술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미술교육론, 소묘, 소조, 디자인, 색채학, 수묵화(또는 한국화 표현기법), 유화(또는 서양화 표현기법), 미술학, 조소, 공예, 영상, 판화, 조형(또는 서예),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	
한문 Chinese Characters	한문교육, 한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한문교육론, 한문학개론, 한문문법, 한문학사, 경서강독, 한문국역연습, 한시선독, 한문소설선독, 역대산문선독, 문자학개론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영어 English	영어교육, 영어영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영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어문법, 영어회화(또는 실용영어), 영어작문, 영어독해, 영어응용음성학, 영미문화	
독일어 German	독어교육, 독어독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독일어교육론, 독어학개론, 독문학개론, 독어문법, 독어회화, 독어작문, 독일문학사, 독어권문화	
프랑스어 French	불어교육, 불어불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프랑스어교육론, 프랑스어학개론, 프랑스문학개론, 프랑스어문법, 프랑스어회화, 프랑스어작문, 프랑스어권문화	
중국어 Chinese	중국어교육, 중어중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중국어교육론, 중국어학개론, 중국문학개론, 중국어문법, 중국어회화, 중국어작문, 중급중국어, 고급중국어, 중국현대문학강독, 한문강독	
스페인어 Spanish	스페인어교육, 서어서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스페인어교육론, 스페인어학개론, 스페인문학사, 중남미문학사, 스페인어문법, 스페인어회화, 스페인어작문, 스페인문화, 중남미문화	
일본어 Japanese	일어교육, 일어일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일본어교육론, 일본어학개론, 일본문학개론, 일본어문법, 일본어회화, 일본어작문, 일본어강독, 일본문화	
러시아어 Russian	러시아어교육, 노어노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러시아어교육론, 러시아어학개론, 러시아문학개론, 러시아어문법, 러시아어회화, 러시아어작문, 러시아어강독, 러시아문화	
아랍어 Arabian	아랍어교육, 아랍어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아랍어교육론, 아랍어학개론, 아랍문학개론, 아랍어문법, 아랍어회화, 아랍어작문, 아랍어강독, 아랍문화, 아랍어구어체 연구	
기술 Technology	기술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 기술교육론, (2) 제조기술(제도및기계공학개론), (3) 건설기술(토목, 건축), (4) 수송기술(에너지, 자동차), (5) 통신기술(전기, 전자, 컴퓨터), (6) 생명기술(재배, 사육)	(1)분야와 (2)~(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이상 14학점이상 이수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가정 Home Economics	가정교육학 및 관 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1) 가정과교육론, (2) 영양학, 식품과 조리, (3) 의복재료와 관리, 의복디자인과 구성, (4) 주거와 실내디자인, (5) 가정경영, 소비자학, (6) 아동학, 가족학	(1)분야와 (2) ~(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 과목이상 14학 점이상 이수
기술· 가정 Technology & Home Economics	기술교육, 가정교육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1) 기술·가정교육론(또는 기술교육론, 또 는 가정과교육론) (2) ① 제조기술(제도및기계공학개론), ② 건설기술(토목, 건축), ③ 수송기술(에너 지, 자동차), ④ 통신기술(전기, 전자, 컴 퓨터), ⑤ 생명기술(재배, 사육), (3) ① 영양학, 식품과 조리, ② 의복재료와 관리, 의복디자인과구성, ③ 주거와실내 디자인, ④ 가정경영, 소비자학, ⑤ 아동 학, 가족학	(1)분야에서 1과목, (2)와 (3)분야의 각 ①~⑤부문에 서 각각 1과 목 이상 14학 점이상 이수

<실업계열> : 24개 표시과목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식물자원 · 조경 Plant Resources & Landscaping	농업교육, 농학, 원예학, 임학, 조경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농업교육론, 작물, 원예, 조림, 육종, 재배, 번 식, 생리, 가공및저장, 농업정보, 조경계획, 조 경시공, 조경관리, 조경식물, 임업경영	
동물자원 Animal Resources	농업교육, 축산학, 잠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농업교육론, 축산, 가축사양, 가축위생, 가축번 식, 애완동물, 축산물가공, 양잠, 농업정보	
농공 Agricultural Industry	농업교육, 농공학, 농업기 계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농업교육론, 농업공학, 농업기계, 농업동력, 농 업토목, 농업수리, 농공학개론, 작물학개론, 원 예학개론, 축산학개론, 농업경영, 농업정보, 농 산가공기계학, 농지조성, 농촌환경, 농업시설	
농산물 유통 Agricultural Products Distribution	농업경제학, 농업교육(농업 경제 및 유통전공), 농업경 영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농업교육론, 농업과학개론, 농산물유통, 농업경 제학, 농업경영학, 농업전산일반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농업교육, 수산교육, 수산 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영 양학, 식품가공학, 축산가 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농업교육론(또는 수산교육론 또는 공업교육론), 식품화학, 식품가공, 식품위생, 유기화학, 농산 물 가공, 축산물가공, 수산물가공, 작물학개론, 원예학개론, 축산학개론, 영양학	
정보· 컴퓨터 Information & Computer	컴퓨터(공학)교육, 컴퓨터 (공)학, 전산통계학, 전자 계산학, 상업교육, 수산교 육, 농업교육, 산업공학, 해사정보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컴퓨터교육론, 컴퓨터프로그래밍, 데이터구조, 데이터베이스, 파일처리론, 운영체제, 컴퓨터구 조, 컴퓨터시스템, 컴퓨터네트워크, 논리회로 (또는 알고리즘 분석), 프로그래밍언어구조론, 인터넷입문	
전기·전 자·통신 Electrical Engineering & Electronic Engineering & Communication Engineering	전기공학교육, 전기공학, 전기제어공학, 전자공학,항 공전자(공)학, 전자재료공 학, 제어계측공학, 컴퓨터 (공학)교육, 컴퓨터(공)학, 전자계산기공학, 통신공학, 항공통신공학, 전자통신공 학, 통신학, 전파공학, 정 보통신공학, 전자기계공학, 수산교육, 수산해양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공업교육론, 전기일반,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제어공학, 전기설비및법규, 디지털시 스템, 전력공학, 전력전자공학, 디지털회로실험 (또는 디지털회로설계), 통신이론, 전자기기, 반 도체 공학, 전기전자실험, 마이크로프로세서, 전자파응용, 마이크로파공학, 안테나공학, 디지 털통신, 무선통신시스템, 정보통신(또는 컴퓨터 네트워크)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기계 · 금속 Mechanical Engineering & Metallurgy	기계공학교육, 기계공학, 정밀기계공학, 생산기계공학, 항공(기계)공학, 조선공학, 선박해양공학, 기계공학교육(자동차전공), 자동차공학, 전자기계공학, 재료공학, 금속공학교육, 금속(공)학, 금속재료공학, 금형설계학, 기관공학, 수산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 학과)	공업교육론, 고체역학(또는 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또는 금속열역학), 내연기관, 기계설계(또는 자동차설계), CAD/ CAM, 기계공작법(또는 NC가공), 정밀공작법(또는 일반 공작기계), 용접공학, 배관공학, 박용기관, 일반 조선공학(또는 선박설계), 자동차 공학, 유압 공학, 전기공학(또는 제어공학), 전자회로(또는 디지털회로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설계, 정밀공학, 센서 및 신호처리, 전자기계, 금속재료, 금속 조직학, 화학 야금학(또는 물리 야금학), 금속 강도학, 철강 재료학, 금속 체련학, 주조공학(또는 소성가공), 부식 방식학	
화공 · 섬유 Chemical Engineering & Textile	화학공학교육, 공업화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정밀화학공학, 섬유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 학과)	공업교육론, 화공양론(또는 섬유가공학), 물리화학(또는 섬유화학), 유기화학(또는 염색화학), 화공열역학, 단위조작, 반응공학, 공정제어, 생물화학공업, 고분자공학(또는 섬유가공학), 분석화학, 섬유물리, 방적공학, 제포공학(또는 편성공학), 공업화학	
자원 · 환경 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al Technology	자원공학, 지질학, 환경공학, 해양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 학과)	공업교육론, 환경교육론, 물리탐사, 광상학, 암석학, 광물학, 지사학, 구조 지질학, 채광학, 자원공학, 광물처리, 자원개발, 환경공학, 수질분석실험, 생활폐기물처리, 환경공학설계, 환경설비, 환경오염측정, 해양학개론, 해양오염론	
건설 Construction	건축공학교육, 건축(공)학, 토목공학교육, 토목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 학과)	공업교육론, 기초공학, 건축구조, 환경계획 및 실험, 환경위생공학(또는 상하수도공학), 건축설비, 건축재료(또는 토목재료), 구조역학(또는 응용역학), 건축설계(또는 강구조토목설계), 건축시공(또는 토목시공), 건축계획, 철근콘크리트구조, 측량학, 지도학, 지적학, 사진판독법, 지형정보론(또는 지리정보시스템), 토질역학, 수리학, 도시계획, 교통계획, 토지이용계획	
요업 Ceramic	도예, 요업공학, 무기재료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 학과)	공업교육론, 요업원료학, 내화물공학, 결정구조학, 요업물리, 시멘트공학, 유리공학, 요업공정, 강도학, 요업재료, 분체공학	
인쇄 Printing	인쇄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 학과)	공업교육론, 인쇄공학(화상공학), 인쇄재료, 인쇄기계, 제판공학, 특수인쇄, 색분해(품질관리), 사진제판실습, 인쇄실습, 컴퓨터전산, 컴퓨터그래픽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상업정보 Commercial Information	상업교육, 상경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 학과)	상업정보교육론, 회계원리, 회계이론, 경영학원론, 무역영어, 무역실무, 전자계산개론(또는 프로그래 밍), 전자계산실무(또는 컴퓨터그래픽), 경영정보론 (또는 비서학개론), 상업경제, 마케팅관리론, 재무 관리	상업계열 고등학교 의 전산 등 전문교 과 담당
수산· 해양 Fishery & Maritime	수산교육, 수산학, 해 양공학, 해양(환경)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 학과)	수산교육론, 어업학개론, 양식학개론(또는 어류양 식), 수산물유통(또는 수산경영학), 어구어법학, 동 물학및실험, 식물학및실험, 수산자원학(또는 해양 생물), 해양학개론, 해양환경(또는 수리관리), 해양 구조물설계(또는 해양토목), 잠수공학, 친해지질학, 해양오염론, 어병학	
항해· 기관 Navigation & Ship Engineering	수산교육, 기계공학, 기 계교육공학, 자동차공 학, 항해·기관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보조기계, 기관설계공학(또는 기계요소설계), 자동 제어(또는 계측공학), 열역학, 유체역학, 재료역학, 내연기관, 외연기관, 기관관리,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파항해학, 지문항해(또는 천문항해), 해상안전공 학, 해양기상, 선박조종, 해양학개론, 해사법규, 해 상교통법, 선박관리(또는 선박운용), 선화운송론, 항해계기	
냉동 Refrigeration Machine	수산교육, 냉동(공조) 공학, 기계공학, 기계 교육공학, 자동차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수산교육론(또는 해양교육론), 냉동공학, 공기조화, 냉동기기, 냉동설비설계, 냉동공조산업, 동역학, 정 역학, 전기공학, 기계설계, 수산학개론	
의상 Clothing & Design	가정교육학, 의류학, 의상디자인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의류교육론(또는 가정교육론), 복식디자인, 의복구 성학, 패션 마케팅, 섬유재료학, 의복위생학, 복식 사회심리학, 자수, 편물, 한국무늬, 서양무늬, 디자 인과 색채	
조리 Culinary	가정교육, 조리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조리교육론(또는 가정교육론), 조리과학, 한국조리, 외국조리, 제과·제빵, 식품가공, 단체급식, 영양학, 식품위생, 식품구매, 식사요법	
미용 Cosmeto -logy	가정교육, 미용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미용교육론(또는 가정교육론), 미용학개론, 피부미 용, 헤어미용, 네일미용, 화장품과메이크업, 공중보 건학, 해부학	
사진 Photogra -phy	사진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사진학 개론, 사진사, 사진화학, 사진재료, 사진현 상인화, 사진기 구조, 컬러사진, 광고사진론, 보도 사진론, 사진미학, 사진사	
디자인· 공예 Design & Craft	디자인학, 공예학, 산 업공예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디자인·공예교육론, 기초 소묘, 기초 소조, 색채학, 그래픽 디자인, 시각디자인, 영상 디 자인, 공업 디자인, 제품 디자인, 실내 디자인, 가구 디자인, 공간 디자인, 디스플레이, 공예 론, 금속공예, 목공예, 기초도자, 장신구, 공예 제도, 재료학, 공예실습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연극영화 Drama & Movie	연극영화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사, 영화사, 연극개론, 극작, 연기(화술), 연극제작, 영화개론, 시나리오작법, 영화기술, 영화제작실습	
관광 Tourism	관광(경영)학, 호텔경영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관광교육론, 관광경영학원론(관광학원론), 여행사경영론, 호텔경영론, 관광교통론, 관광자원론, 관광법규, 관광경영론, 식당경영론, 관광개발론, 산업체 현장실습	

**2. 특수학교교사,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영양교사**

자격종별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고
특수학교 정교사 (2급)	특수교육, 물리치료학, 재활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특수교육학, 특수학급경영론(또는 경도장애아교육), 시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신지체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정서및행동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언어장애아교육, 특수교육공학, 유아특수교육	1. 초등학교 및 유치원과정은 위의 표시과목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이료과목은 이료로, 치료교육과목은 치료교육으로, 직업교육과목은 직업교육으로 각각 표시한다.
유치원 정교사 (2급)	유아교육학, 아동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관찰및실습,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동작교육, 부모교육,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보건교사 (2급)	간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기초건강과학, 건강사정및실습, 학교보건및실습, 아동간호학및실습, 성인간호학및실습, 정신간호학및실습, 노인간호학및실습, 모성간호학및실습, 지역사회간호학및실습, 응급간호학및실습	
사서교사 (2급)	문헌정보교육, 문헌정보학, 도서관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분류학, 목록학, 도서관전산화, 독서지도론, 정보검색, 정보봉사론, 학교도서관운영, 정보매체론	
전문상담 교사 (2급)	상담·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심리검사, 성격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영양교사 (2급)	영양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영양교육및상담실습 (2)생애주기영양학, 영양관정및실습, 식사요법및실습 (3)식품학, 조리원리및실습 (4)단체급식및실습, 식품위생학	(1)분야에서 1과목, (2)분야에서 2과목 이상, (3),(4)분야에서 각각 1과목 이상

**3. 실기교사 : 종전과 같음(교육부고시 제1997-11호 참고)**

□ 교육부고시 제2000-1호(2000.1.28)

☞ 2000~2004학년도 입학자(2002~2006학년도 편입학자 포함) 적용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1. 중등학교교사(58개 표시과목)

<인문계열> : 34개 표시과목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국어 Korean Language	국어교육, 국어국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국어교육론, 국어학 개론, 국문학 개론, 국어사, 국문학사, 국어문법론, 소설론(또는 시론, 또는 희곡론, 또는 수필론, 또는 의사소통론)	
수학 Mathematics	수학교육, 수학, 전산통계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수학교육론, 정수론, 복소해석학, 해석학, 선형대수, 현대대수학, 미분기하학, 위상수학, 확률 및 통계, 이산수학	
공통과학 Common Science	과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 공통과학교육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공통)과학교육론 (2)일반물리학및실험 I, II, 고급물리학 I, II (3)일반화학및실험 I, II, 고급화학 I, II (4)일반생물학및실험 I, II, 고급생물학 I, II (5)지구과학및실험 I, II, 고급지구과학 I, II	(1),(2),(3),(4),(5)분야에서 1과목(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물리 Physics	과학교육, 물리교육, 물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물리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역학, 전자기학, 양자물리, 열및통계물리, 파동및광학, 전산물리, 현대물리학	
화학 Chemistry	과학교육, 화학교육, 화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화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물리화학및실험, 유기화학및실험, 무기화학및실험, 분석화학및실험	
생물 Biology	과학교육, 생물교육, 생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생물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세포생물학, 발생생물학, 생리학, 유전학, 분류학, 생태학, 분자생물학, 형태학, 생화학, 미생물학	
지구과학 Earth Science	과학교육, 지구과학교육, 지구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지구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지질학, 천문학, 대기과학, 해양학, 지구물리학, 지구환경과학	
공통사회 Common Social Stduies	사회교육, 일반사회교육, 지리교육, 역사교육, 공통사회교육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 공통사회과교육론 (2) 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제학), 문화와사회(또는 사회학), 법과사회(또는 법학) (3) 한국사개론, 동양사개론, 서양사개론, 역사학개론, 문화사(한국문화사, 동양문화사, 서양문화사) (4) 자연지리학(개론), 인문지리학(개론), 한국지리, 세계지리, 지도학	(1),(2),(3),(4)분야에서 각각 1과목(3학점) 이상 이수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일반사회 Social Studies	사회교육, 일반사회 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일반사회교육론(또는 공통사회과교육론), 정 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제학), 문화와사회(또는 문화인류학), 법 과사회(또는 법학), 사회과학방법론, 인간 과사회(또는 사회학)	
역사 World & Korean History	역사교육, 역사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역사교육론(또는 공통사회과교육론), 역사학개 론(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대사(한국고대사, 동양고대사, 서양고대사), 중세사(한국중세사, 동양중세사, 서양중세사), 근대사(한국근대사, 동양근대사, 서양근대사), 현대사(한국현대사, 동양현대사, 서양현대사)	
지리 Geography	지리교육, 지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 학과)	지리교육론(또는 공통사회과교육론), 자연지 리학, 인문지리학, 도시지리학(또는 촌락지 리학), 경제지리학(또는 자원지리학), 문화지 리학(또는 역사지리학), 지형학, 기후학, 환 경지리학, 한국지리, 세계지리(또는 지역지 리), 지도학(또는 지리정보론 및 원격탐사 론, 또는 계량지리학), 인구지리학(또는 정 치지리학)	
도덕· 윤리 Ethics	(국민)윤리교육, 철 학, 교육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 학과)	(1) 도덕·윤리교육론 (2) 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 상, 한국사상개론, 윤리고전강독(또는 동서양고전강독, 또는 논술) (3) 민주주의론, 국가안보론, 통일교육론, 시 민교육론, 도덕(발달)심리학	(1)분야에서 1 과목, (2), (3) 분야에서 각 각 2과목(6학 점)이상 이수
상담 Counseling	교육학, 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 학과)	상담이론, 생활지도, 심리검사, 발달심리학, 집 단상담, 진로상담, 심리치료, 청소년 심리, 상담 실습, 학교사회사업, 이상심리, 아동심리, 유아 심리, 사회심리학, 학습심리, 성격심리, 특수아 지도와 상담, 교육심리학	
교육학 Education	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교육학개론,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론, 교 육철학, 교육심리, 교육평가,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학교-학급경영, 학생상담의이론 과실제, 교육공학, 평생교육(또는 교사론), 교육과컴퓨터, 도덕교육론	
종교 Religion	종교교육, 종교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 학과)	종교교육론, 종교학개론, 종교현상학, 종교 철학, 한국종교, 종교사회학(또는 종교인류 학), 종교심리학, 세계종교(또는 종교사, 또 는 비교종교학), 현대종교, 종교와과학, 종 교학사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철학 Philosophy	철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철학교육론, 논리학, 윤리학, 인식론, 형이상학, 한국철학사, 동양철학사, 서양철학사, 철학과논술, 철학교전선독	
심리학 Psychology	교육심리학, 교육학, 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발달심리학,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인지심리학, 산업(조직)심리학, 생리(생물)심리학, 임상심리학, 심리검사, 사회심리학, 학습심리	
환경 Environmental Science	환경교육(학), 환경학, 농업교육, 생물교육, 화학, 화학공학, 해양환경학, 환경공학, 지구과학교육, 지리교육, 수산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환경교육론, 대기오염론(또는 대기환경론), 수질오염론(또는 수리학), 토양오염론(또는 토양학, 폐기물처리론), 환경정책(또는 환경평가), 지구환경론, 생물환경론(또는 생태학, 독성학), 환경지리학 (또는 도시와환경, 산업과환경), 해양환경론(또는 해양오염론), 환경과학개론(또는 환경화학), 농업환경, 자연환경보호론	
체육 Physical Education	체육교육, 체육학, 무용(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스포츠교육학, 체육원리, 체육사, 운동학습 및 심리, 스포츠 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운동실기, 체육측정 평가, 보건론, 한국무용	
교련 Military Training	보건교육, 보건과학, 간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보건교육론, 기초건강과학(또는 공중 보건학), 지역사회보건교육(또는 지역사회간호학), 국가안보론, 안전교육학, 응급처치(또는 구급간호학), 환경보건(또는 보건관리), 신체발육발달론, 아동건강간호학, 건강생활(또는 성인-노인간호학), 보건영양(또는 모성간호학), 역학및전염병관리(또는 정신간호학),	
음악 Music	음악교육, 음악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음악교육론, 서양음악 실기(또는 전공실기), 화성법, 대위법, 시창청음, 국악개론, 국악실기, 작곡, 지휘, 한국음악사, 서양음악사, 음악형식론, 장구반주법, 피아노반주법	
미술 Fine Arts	미술교육, 미술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미술교육론, 소묘, 소조, 디자인, 색채학, 수묵화(또는 한국화 표현기법), 유화(또는 서양화 표현기법), 미술학, 조소, 공예, 영상, 판화, 조형(또는 서예),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	
한문 Chinese Characters	한문교육, 한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한문교육론, 한문학개론, 한문문법, 한문학사, 경서강독, 한문국역연습, 한시선독, 한문소설선독, 역대산문선독, 문자학개론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영어 English	영어교육, 영어영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영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어문법, 영어회화(또는 실용영어), 영어작문, 영어독해, 영어응용음성학, 영미문화	
독일어 German	독어교육, 독어독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독일어교육론, 독어학개론, 독문학개론, 독어문법, 독어회화, 독어작문, 독일문학사, 독어권문화	
프랑스어 French	불어교육, 불어불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프랑스어교육론, 프랑스어학개론, 프랑스문학개론, 프랑스어문법, 프랑스어회화, 프랑스어작문, 프랑스어권문화	
중국어 Chinese	중국어교육, 중어중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중국어교육론, 중국어학개론, 중국문학개론, 중국어문법, 중국어회화, 중국어작문, 중급중국어, 고급중국어, 중국현대문학강독, 한문강독	
스페인어 Spanish	스페인어교육, 서어서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스페인어교육론, 스페인어학개론, 스페인문학사, 중남미문학사, 스페인어문법, 스페인어회화, 스페인어작문, 스페인문화, 중남미문화	
일본어 Japanese	일어교육, 일어일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일본어교육론, 일본어학개론, 일본문학개론, 일본어문법, 일본어회화, 일본어작문, 일본어강독, 일본문화	
러시아어 Russian	러시아어교육, 노어노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러시아어교육론, 러시아어학개론, 러시아문학개론, 러시아어문법, 러시아어회화, 러시아어작문, 러시아어강독, 러시아문화	
아랍어 Arabian	아랍어교육, 아랍어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아랍어교육론, 아랍어학개론, 아랍문학개론, 아랍어문법, 아랍어회화, 아랍어작문, 아랍어강독, 아랍문화, 아랍어구어체 연구	
기술 Technology	기술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 기술교육론, (2) 제조기술(제도및기계공학개론), (3) 건설기술(토목, 건축), (4) 수송기술(에너지, 자동차), (5) 통신기술(전기, 전자, 컴퓨터), (6) 생명기술(재배, 사육)	(1) 분야와 (2)~(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이상 14학점 이상 이수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가정 Home Economics	가정교육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 학과)	(1) 가정과교육론, (2) 영양학, 식품과 조리, (3) 의복재료와 관리, 의복디자인과 구성, (4) 주거와 실내디자인, (5) 가정경영, 소비자학, (6) 아동학, 가족학	(1)분야와 (2)~ (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 목이상 14학 점이상 이수
기술· 가정 Technology & Home Economics	기술교육, 가정교육 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1) 기술·가정교육론(또는 기술교육론, 또 는 가정과교육론) (2) ① 제조기술(제도및기계공학개론), ② 건설기술(토목, 건축), ③ 수송기술(에너 지, 자동차), ④ 통신기술(전기, 전자, 컴 퓨터), ⑤ 생명기술(재배, 사육), (3) ① 영양학, 식품과 조리, ② 의복재료와 관리, 의복디자인과구성, ③ 주거와실내 디자인, ④ 가정경영, 소비자학, ⑤ 아 동학, 가족학	(1)분야에서 1과목, (2)와 (3)분야의 각 ①~⑤부문에 서 각각 1과 목 이상 14학 점이상 이수

<실업계열> : 24개 표시과목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식물자원 · 조경 Plant Resources & Landscaping	농업교육, 농학, 원예학, 임학, 조경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농업교육론, 작물, 원예, 조립, 육종, 재배, 번 식, 생리, 가공및저장, 농업정보, 조경계획, 조 경시공, 조경관리, 조경식물, 임업경영	
동물자원 Animal Resources	농업교육, 축산학, 잠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농업교육론, 축산, 가축사양, 가축위생, 가축번 식, 애완동물, 축산물가공, 양잠, 농업정보	
농공 Agricultural Industry	농업교육, 농공학, 농업기 계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농업교육론, 농업공작, 농업기계, 농업동력, 농 업토목, 농업수리, 농공학개론, 작물학개론, 원 예학개론, 축산학개론, 농업경영, 농업정보, 농 산가공기계학, 농지조성, 농촌환경, 농업시설	
농산물 유통 Agricultural Products Distribution	농업경제학, 농업교육(농업 경제 및 유통전공), 농업경 영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농업교육론, 농업과학개론, 농산물유통, 농업경 제학, 농업경영학, 농업전산일반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농업교육, 수산교육, 수산 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영 양학, 식품가공학, 축산가 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농업교육론(또는 수산교육론 또는 공업교육론), 식품화학, 식품가공, 식품위생, 유기화학, 농산 물 가공, 축산물가공, 수산물가공, 작물학개론, 원예학개론, 축산학개론, 영양학	
정보·전 자·통신 Information & Computer	컴퓨터(공학)교육, 컴퓨터 (공)학, 전산통계학, 전자 계산학, 상업교육, 수산교 육, 농업교육, 산업공학, 해사정보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컴퓨터교육론, 컴퓨터프로그래밍, 데이터구조, 데이터베이스, 파일처리론, 운영체제, 컴퓨터구 조, 컴퓨터시스템, 컴퓨터네트워크, 논리회로 (또는 알고리즘 분석), 프로그래밍언어구조론, 인터넷입문	
전기·전 자·통신 Electrical Engineering & Electronic Engineering & Communication Engineering	전기공학교육, 전기공학, 전기제어공학, 전자공학,향 공전자(공)학, 전자재료공 학, 제어계측공학, 컴퓨터 (공학)교육, 컴퓨터(공)학, 전자계산기공학, 통신공학, 항공통신공학, 전자통신공 학, 통신학, 전파공학, 정 보통신공학, 전자기계공학, 수산교육, 수산해양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공업교육론, 전기일반,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제어공학, 전기설비및법규, 디지털시 스템, 전력공학, 전력전자공학, 디지털회로실험 (또는 디지털회로설계), 통신이론, 전자기기, 반 도체 공학, 전기전자실험, 마이크로프로세서, 전자파응용, 마이크로파공학, 안테나공학, 디지 털통신, 무선통신시스템, 정보통신(또는 컴퓨터 네트워크)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기계 · 금속 Mechanical Engineering & Metallurgy	기계공학교육, 기계공학, 정밀기계공학, 생산기계공학, 항공(기계)공학, 조선공학, 선박해양공학, 기계공학교육(자동차전공), 자동차공학, 전자기계공학, 재료공학, 금속공학교육, 금속(공)학, 금속재료공학, 금형설계학, 기관공학, 수산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 학과)	공업교육론, 고체역학(또는 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또는 금속열역학), 내연기관, 기계설계(또는 자동차설계), CAD/ CAM, 기계공작법(또는 NC가공), 정밀공작법(또는 일반 공작기계), 용접공학, 배관공학, 박용기관, 일반 조선공학(또는 선박설계), 자동차 공학, 유압 공학, 전기공학(또는 제어공학), 전자회로(또는 디지털회로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설계, 정밀공학, 센서 및 신호처리, 전자기계, 금속재료, 금속 조직학, 화학 야금학(또는 물리 야금학), 금속 강도학, 철강 재료학, 금속 제련학, 주조공학(또는 소성가공), 부식 방식학	
화공 · 섬유 Chemical Engineering & Textile	화학공학교육, 공업화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정밀화학공학, 섬유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 학과)	공업교육론, 화공양론(또는 섬유가공학), 물리화학(또는 섬유화학), 유기화학(또는 염색화학), 화공열역학, 단위조작, 반응공학, 공정제어, 생물화학공업, 고분자공학(또는 섬유가공학), 분석화학, 섬유물리, 방적공학, 제포공학(또는 편성공학), 공업화학	
자원 · 환경 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al Technology	자원공학, 지질학, 환경공학, 해양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 학과)	공업교육론, 환경교육론, 물리탐사, 광상학, 암석학, 광물학, 지사학, 구조 지질학, 채광학, 자원공학, 광물처리, 자원개발, 환경공학, 수질분석실험, 생활폐기물처리, 환경공학설계, 환경설비, 환경오염측정, 해양학개론, 해양오염론	
건설 Construction	건축공학교육, 건축(공)학, 토목공학교육, 토목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 학과)	공업교육론, 기초공학, 건축구조, 환경계획 및 실험, 환경위생공학(또는 상하수도공학), 건축설비, 건축재료(또는 토목재료), 구조역학(또는 응용역학), 건축설계(또는 강구조토목설계), 건축시공(또는 토목시공), 건축계획, 철근콘크리트구조, 측량학, 지도학, 지적학, 사진판독법, 지형정보론(또는 지리정보시스템), 토질역학, 수리학, 도시계획, 교통계획, 토지이용계획	
요업 Ceramic	도예, 요업공학, 무기재료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 학과)	공업교육론, 요업원료학, 내화물공학, 결정구조학, 요업물리, 시멘트공학, 유리공학, 요업공정, 강도학, 요업재료, 분체공학	
인쇄 Printing	인쇄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 학과)	공업교육론, 인쇄공학(화상공학), 인쇄재료, 인쇄기계, 제판공학, 특수인쇄, 색분해(품질관리), 사진제판실습, 인쇄실습, 컴퓨터전산, 컴퓨터그래픽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상업정보 Commercial Information	상업교육, 상경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상업정보교육론, 회계원리, 회계이론, 경영학원론, 무역영어, 무역실무, 전자계산개론(또는 프로그래 밍), 전자계산실무(또는 컴퓨터그래픽), 경영정보론 (또는 비서학개론), 상업경제, 마케팅관리론, 재무 관리	상업계열 고등학교 의 전산 등 전문교 과 담당
수산· 해양 Fishery & Maritime	수산교육, 수산학, 해양 공학, 해양(환경)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수산교육론, 어업학개론, 양식학개론(또는 어류양 식), 수산물유통(또는 수산경영학), 어구어법학, 동 물학및실험, 식물학및실험, 수산자원학(또는 해양 생물), 해양학개론, 해양환경(또는 수리관리), 해양 구조물설계(또는 해양토목), 잠수공학, 친해지질학, 해양오염론, 어병학	
항해· 기관 Navigation & Ship Engineering	수산교육, 기계공학, 기계교육공학, 자동차 공학, 항해·기관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보조기계, 기관설계공학(또는 기계요소설계), 자동 제어(또는 계측공학), 열역학, 유체역학, 재료역학, 내연기관, 외연기관, 기관관리,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파항해학, 지문항해(또는 천문항해), 해상안전공 학, 해양기상, 선박조종, 해양학개론, 해사법규, 해 상교통법, 선박관리(또는 선박운용), 선화운송론, 항해계기	
냉동 Refrigeration Machine	수산교육, 냉동(공조)공 학, 기계공학, 기계교육 공학, 자동차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수산교육론(또는 해양교육론), 냉동공학, 공기조화, 냉동기기, 냉동설비설계, 냉동공조산업, 동역학, 정 역학, 전기공학, 기계설계, 수산학개론	
의상 Clothing & Design	가정교육학, 의류학, 의상디자인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의류교육론(또는 가정교육론), 복식디자인, 의복구 성학, 패션 마케팅, 섬유재료학, 의복위생학, 복식 사회심리학, 자수, 편물, 한국무늬, 서양무늬, 디자 인과 색채	
조리 Culinary	가정교육, 조리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조리교육론(또는 가정교육론), 조리과학, 한국조리, 외국조리, 제과·제빵, 식품가공, 단체급식, 영양학, 식품위생, 식품구매, 식사요법	
미용 Cosmeto -logy	가정교육, 미용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미용교육론(또는 가정교육론), 미용학개론, 피부미 용, 헤어미용, 네일미용, 화장품과메이크업, 공중보 건학, 해부학	
사진 Photogra -phy	사진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사진학 개론, 사진사, 사진화학, 사진재료, 사진현 상인화, 사진기 구조, 컬러사진, 광고사진론, 보도 사진론, 사진미학, 사진사	
디자인· 공예 Design & Craft	디자인학, 공예학, 산 업공예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디자인·공예교육론, 기초 소묘, 기초 소조, 색채학, 그래픽 디자인, 시각디자인, 영상 디 자인, 공업 디자인, 제품 디자인, 실내 디자인, 가구 디자인, 공간 디자인, 디스플레이, 공예 론, 금속공예, 목공예, 기초도자, 장신구, 공예 제도, 재료학, 공예실습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연극영화 Drama & Movie	연극영화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사, 영화사, 연극개론, 극작, 연기(화술), 연극제작, 영화개론, 시나리오작법, 영화기술, 영화제작실습	
관광 Tourism	관광(경영)학, 호텔경영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관광교육론, 관광경영학원론(관광학원론), 여행사경영론, 호텔경영론, 관광교통론, 관광자원론, 관광법규, 관광경영론, 식당경영론, 관광개발론, 산업체 현장실습	

**2. 특수학교교사,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영양교사**

자격종별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고
특수학교교사	특수교육, 물리치료학, 재활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특수교육학, 특수학급경영론(또는 경도장애아교육), 시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신지체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정서및행동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언어장애아교육, 특수교육공학, 유아특수교육	1. 초등학교 및 유치원과정은 위의 표시과목을 표시 하지 아니한다. 2. 이료과목은 이료로, 치료교육과목은 치료교육으로, 직업교육과목은 직업교육으로 각각 표시한다.
유치원정교사(2급)	유아교육학, 아동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관찰및실습,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동작교육, 부모교육,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보건교사(2급)	간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기초건강과학, 건강사정및실습, 학교보건및실습, 아동간호학및실습, 성인간호학및실습, 정신간호학및실습, 노인간호학및실습, 모성간호학및실습, 지역사회간호학및실습, 응급간호학및실습	
사서교사(2급)	문헌정보교육, 문헌정보학, 도서관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분류학, 목록학, 도서관전산화, 독서지도론, 정보검색, 정보봉사론, 학교도서관운영, 정보매체론	

**3. 실기교사 : 종전과 같음(교육부고시 제1997-11호 참고)**

□ 교육부고시 제1997-11호('97.12.9)

☞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2001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 적용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

1. 중등학교교사(특수학교교사 보건교사 및 유치원교사 포함)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
국 어 Korean Language	국어교육과, 국어국문학과, 한국어문학과	국어학, 국문학
수 학 Mathematics	수학교육과, 수학과, 응용수학과, 통계학과, 응용통계학과	대수학, 해석학, 기하학, 통계학
공통과학 Common Science	과학교육(공통과학 전공) 공통과학교육과	과학일반,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과 학 (물 리) Science (Physics)	과학교육과(물리), 물리교육과, 응용물리학과, 원자력공학과, 물리학과	일반물리, 전자기학, 원자물리학, 과학일반(생물, 화학, 지구과학 포함)
과 학 (화 학) Science (Chemistry)	과학교육과(화학), 화학교육과, 화학과, 생화학과, 응용화학과	무기화학, 유기화학, 물리화학, 과학일반(물리, 생물, 지구과학 포함)
과 학 (생 물) Science (Biology)	과학교육과(생물), 생물교육과, 생물학과, 농(업)생물학과, 응용생물학과, 미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식물학, 동물학, 미생물학, 유전학, 과학일반(물리, 화학, 지구과학포함)
과 학 (지구과학) Science (Earth Science)	과학교육과(지구과학), 지구과학교육과, 지질학과, 천문기상학과, 대기학과, 천문학과, 해양학과	지질학, 천문학, 대기과학, 해양학, 과학일반(물리, 화학, 생물포함)
공통사회 Common Social Stduies	사회교육과(공통사회전공) 공통사회교육과	사회일반, 일반사회역사, 지리
사 회 (일반사회) Social Studies (Common Social Studies)	사회교육과(일반사회), 법(률)학과, 행정학과, 사회생활과(일반사회), (정치), 외교학과, 경제학과, 사회학과	법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역사, 지리
사 회(역사) Social Studies (World & Korean History)	사회교육과(역사), 동양사학과, 국사교육과, 서양사학과, 역사교육과, 문화인류학과, 사회생활과(역사), (역)사학과, 국사학과	국사, 동양사, 서양사, 정치학, 경제학, 지리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
사 회 (지 리) Social Studies (Geography)	지리교육학, 사회교육과(지리), 사회생활과(지리), 지리학과	자연지리학, 인문지리학, 역사, 정치학, 경제학
윤 리 Ethics	국민윤리교육과, 국민윤리학과	윤리학개론, 한국윤리사상, 민주주의론, 통일교육
상 담 Counseling	교육심리학과(상담전공)	상담이론, 상담의 실제, 생활지도, 심리검사
교 육 과 Education	교육학과, 교육공학과, 시청각교육과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론, 교육철학, 교육심리, 교육평가, 교육사회
종 교 Religion	종교교육과, 종교학과, 기독교교육과, 기독교학과, 신학과, 불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선학과, 원불교학과,	종교학, 종교사, 비교종교학
철 학 Philosophy	철학과, 동양철학과, 한국철학과, 인도철학과	철학교육학, 철학사, 한국철학사, 논리학
심 리 학 Psychology	교육심리학과, 심리학과	발달심리학, 상담심리학, 학습심리학, 성격심리학, 인지심리학
환 경 Environmental Science	환경학과, 환경과학과	환경철학, 환경학일반, 환경생태학, 환경학개론
체 육 Physical Education	체육교육과, 무용교육과, 체육무용(학)과, 무용학과, 체육(학)과, 건강교육과	학교보건, 체육원리(실기 포함)
교 련 Military Training	체육교육과(교련과목 이수), 건강교육과(교련과목 이수), 간호학과(교련과목 이수)	남 : 군사학, 여 : 기초군사학, 간호학 병영훈련 1주(학점 없음)
음 악 Music	음악교육과, 성악과, 작곡과, 음악(학)과, 기악과, 국악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음악이론(실기포함), 국악이론, 음악사
미 술 Fine Arts	미술교육과, 미술(학)과, 동양학과, 회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응용미술과, 생활미술과	미술이론(실기포함), 미술사
한 문 Chinese Characters	한문교육과, 한문학과	한문해석, 문법, 작문
외 국 어 (영 어) English	외국어교육과(영어), 영어교육과, 영어영문학과, 영어과, 영어학과	영어학, 영문학, 영어회화
외 국 어 (독 일어) German	외국어교육과(독어), 독어교육과, 독어독문학과, 독일어과	독일어학, 독일문학, 독일어회화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
외 국 어 (프랑스어) French	외국어교육과(불어), 불어교육과, 불어불문학과, 불어과	프랑스어학, 프랑스문학, 프랑스어회화
외 국 어 (중국어) Chinese	외국어교육과(중국어), 중국어교육과, 중어중문학과, 중국어과	중국어학, 중국문학, 중국어회화
외 국 어 (스페인어) Spanish	외국어교육과(에스파냐어), 에스파냐어교육과, 에스파냐어과, 서어서문학과	에스파냐어학, 에스파냐문학, 에스파냐어회화
외 국 어 (일본어) Japanese	일어교육과, 외국어교육과(일어), 일어일문학과, 일본어과, 일본어학과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어회화
외 국 어 (러시아어) Russian	외국어교육과(러시아어), 러시아어교육과, 노어노문학과, 러시아어과	러시아어학, 러시아문학, 러시아어회화
외 국 어 (아랍어) Arabian	아랍어교육과, 아랍어학과, 아랍어아랍문학과	아랍어학, 아랍어문학, 아랍어회화
기 술 Technology	기술교육과	기술일반(제조, 건설, 수송, 통신기술), 산업일반(농업, 상업, 수산일반)
가 정 Home Economics	가정교육과, 가정학과, 가정관리학과, 농가정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 의류학, 주거학, 가정경영
농 업 Agriculture	농업교육과, 농학과	농업일반(작물, 가축사양, 임업, 농업기계포함)
공 업 Industry	기술교육과(공업교육), 공업화학교육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공정설계학과, 산업공학과	공업일반(기계, 전기, 전자, 화공, 건축, 토목 포함)
전자계산 Computer	컴퓨터교육과, 전자계산(공)학과, 전산(공)학과, 전산통계학과, 정보처리학과, 전산정보학과	전자계산일반, 프로그래밍, 정보처리
수 산 업 Fishery	수산교육과, 해양개발학과	수산일반(수산자원, 양식, 해양·기상, 어업, 선박, 수산가공, 수산경영)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농업교육과(식품가공), 수산교육과(식품공학), 식품공학과, 식품가공학과, 축산가공학과, 수산가공학과	식품화학, 식품가공, 식품위생
사 진 Photography	사진학과	사진학, 사진재료, 사진기 구조, 사진현상인화
디 자 인 Design	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공업디자인(학)과	디자인론, 색채론, 디자인 실기

계 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
실업계	임업 Forestry	농업교육과(임업), 임학과, 임산가공학과, 산림자원학과	사방 및 산림토목, 임업경영, 조림
	축산 Animal Science	농업교육과(축산), 축산학과, 축산가공학과, 축산경영학과, 낙농학과, 사료학과, 수의학과, 동물자원학과	가축사양, 가축일반, 가축위생
	원예 Horticulture	농업교육과(원예), 원예학과, 조경학과, 환경조경학과	원예일반, 토양비료, 농업경영
	잠업 Sericulture	농업교육과(잠업)	양잠, 재상, 잠종제조
	농업토목 Agricultural Civil Engineering	농업교육과(농업토목), 농공학과(농업토목)	농업수리, 농지조성, 농림측량학, 농업토목설계 및 제도
	농업기계 Agricultural Machinery	농업교육과(농업기계), 농공학과(농업기계), 농업기계(공)학과	농업공학, 농업기계, 농업동력
	조경 Landscaping	조경학과, 환경조경학과	조경재료, 조경계획, 조경시공, 조경관리
	농산물유통 Agricultural Products Distribution	농업교육과(농업경제 및 유통전공), 농업경제학과, 농업경영학과	농산물유통학,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업전산일반
	기계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교육과, 기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 생산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항공기계공학과	기계설계, 기계공학법
	건축 Architecture	건축공학교육과, 건축(공)학과	건축구조, 건축계획, 건축시공
	토목 Civil Engineering	토목공학교육과, 토목공학과	토목설계, 측량, 응용역학
	전기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공학교육과, 전기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전기이론, 전자공학, 전력계통, 전기기기
	전자 Electronic Engineering	전자공학교육과, 전자공학과, 항공전자(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전기이론, 전자회로, 전자기기, 전자계산기구조
	통신 Communication Engineering	통신공학과, 항공통신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통신학과, 전파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기이론, 통신공학, 전자응용, 정보통신
	화학 Chemical Engineering	공업화학교육과, 공업화학, 화학공학과, 고분자공학과	공업화학, 화학공학통론, 물리화학

계 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
실업계	섬 유 Textile	섬유공학과	방적·방사, 제직, 염색, 섬유가공, 합성섬유
	금 속 Metallurgy	금속공학교육과, 금속(공)학과, 금속재료공학과	금속재료, 야금공학, 금속가공
	자 원 Mine Resource	자원공학과, 지질학과	지질학, 자원개발, 자원처리
	공 예 Craft	공예(학)과, 산업공예과	공예제도, 디자인, 공예재료색채학
	자 동 차 Automobile	기계공학교육과(자동차전공), 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	내연기관, 자동차설계, 자동차공학
	요 업 Ceramic	도예과, 요업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요업개론, 요업원료, 요로
	조 선 Ship-building Engineering	조선공학과	조선공학, 선박기관, 선박구조
	인 쇄 Printing	인쇄공학과	인쇄통론, 인쇄재료, 인쇄사진
	전자기계 Electric Engineering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전자기계공학과	전자공학, 기계설계, 전자기계실습, 제어공학, 기계공학법
	전자계산기 Computer Engineering	컴퓨터공학교육과, 컴퓨터(전자계산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공학, 전자계산기구조, 데이터통신, 프로그래밍언어
	환경공업 Environmental Technolgy	환경공학과, 해양환경공학과	환경공학, 환경설비, 환경오염측정, 폐기물처리
	중 기 Power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	기계공학, 증장비구조, 유체기계, 자동차공학
	상 업 Commerce	상업교육과, 회계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비서학과	회계학, 경영학, 무역학
	어 업 Fisheries	수산교육과(어업), 어업학과, 어업공학과, 해양생산학과	어업, 항해, 선박운용
	양 식 Aquaculture	수산교육과(양식), 증식학과, 해양학과, 양식학과, 해양환경학과, 해양생물학과, 어병학과, 수산자원개발학과, 수족병리학과	수산생물, 수산양식, 자원어장
항 해 Navigation	항해학과, 어업학과, 선박운항학과, 해사수송과학과	항해, 운용, 항해계기	

계 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
실업계	기 관 Ship Engineering	수산교육과(기관), 기관(공)학과, 조선공학과, 기계공학과, 선박공학과	선박기관, 선박보조기계, 기관설계공작
	냉 동 Refrigeration Machine	수산교육과(냉동), 냉동공학과, 냉동공조 공학과	냉동공학, 공기조화, 냉동 설비·설계
	의 상 Clothing & Design	의상(학)과, 의류학과, 의상디자인학과, 의생활과, 의류직물학과, 가정교육과(의상)	의복재료, 의복구성, 복식 디자인
관 광 Tourism	관광학과,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관광개론, 관광자원, 여행 사경영, 호텔경영	

계 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
기 타	특수학교교사	특 수 교육과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 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 애, 학습장애교육
	1. 중등학교 과정은 위의 표시과목 다음에 시각 장애·청각장애·정신지체 및 지체부자유등 장애의 영역을 구분하여 괄호안에 표시한다. 2. 초등학교 및 유치원 과정은 표시과목 없이 시 각장애·청각장애·정신지체 및 지체부자유등 장애의 영역을 구분하여 괄호안에 표시한다. 3. 이료과목은 이료로, 치료교육과목은 치료교육 으로, 직업교육과목은 직업교육으로 각각 표 시하고, 장애의 영역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보건교사(2급)	간호학과	기초건강과학, 학교보건
	유치원(2급) 정교사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과정, 아동발달

※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이란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영역 또는 과목으로서 교사양성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공업계 표시과목의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에는 '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상'이 별도로 포함됨

※ 대학에서 학과제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학부제를 운영할 때에는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자격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영역 9학점 이상 포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2. 실기교사

계 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
농업계 (9개)	축 산	축산과, 낙농과, 사료과	축산일반실습, 사료재배 및 사양실습, 축산가공실습
	잠 업	잠업과	양잠일반실습, 작물보호실습, 농업경영실습
	원 예	원예과	원예일반실습, 작물보호실습, 농업경영실습
	임 업	임업과, 임산공업과	사방실습, 조림실습, 임산가공실습
	조 경	조경과	조경설계제도실습, 조경재료실습, 조경환경 및 보호실습
	농업기계	농업기계과	농업공작실습, 농업기계실습, 농기계관리실습
	농업토목	농업토목과	토목재료 및 시공실습, 농지조성실습, 농지측량실습
	식품가공	식품제조과, 식품가공과, 식품공업과, 수산가공과	식품제조 및 관리실습, 식품화학실습, 식품위생실습
수 의	수의학과	가축생리 및 위생실습, 가축질병실습, 가축번식실습	
공업계 (27개)	기 계	기계과, 기계설계과, 기관과	기계설계제도, 기계공작, 기계수리실습
	자 동 차	자동차과, 자동차정비과	자동차새시, 자동차기관, 자동차정비 및 전기실습
	항 공	항공운항과	항공기기체실습, 항공기엔진실습, 항공기계통실습
	철도운전	철도운전과	철도운전실습, 철도차량실습, 기계설계제도 및 기계공작실습
	철도업무	철도경영정비과, 철도운수과	철도운수실습, 철도행정실습, 부기실습
	조 선	조선과	조선제도 및 현도, 선체조립, 선체가공

계 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
공업계	주 조	주조과	주조실습, 조형실습, 금속용해실습
	용 접	용접과, 용접기술과	가스용접 및 절단실습, 마이크용접, 특수용접(전기저항용접)
	금 속	금속과	야금실습, 금속가공실습
	전기공사	전기과	옥내 및 동력배선실습, 전기설비·설계 및 제도실습, 송배전 및 전기계측실습
	건축	건축과, 건축설비과	건축구조, 건축설계제도, 계획 및 시공실습
	공예	공예과, 민속공예과, 산업공예과, 도자기공예과, 금속공예과	색채구성, 공예제도(도학) 디자인 실기
	토목	토목과, 해양토목과	토목설계제도, 측량, 토질 및 재료실험
	통신	통신과(공업계, 수산해운계 포함), 전자통신과	무선통신기기실습, 유선통신기기실습, 전기통신술
	자원	자원개발과	광산측량실습, 채광실습, 광물처리 및 탐사관련
	화학	화학공업과, 공업화학과	화학 및 장치실습, 공업화학분석실습, 화학설계제도
	섬유	섬유과	방직 및 방사실습, 염색가공실습, 직물가공실습
	절삭가공	기계과, 기계설계과	선반실습, 밀링실습, 연삭 및 형평상실습
	전기	전기과	전기회로실습, 전기기기실습, 전기제도, 자동제어실습
	전자	전자과	전자회로실습, 전자기기실습, 자동제어실습
	인쇄	인쇄과	인쇄기계실습, 제판실습, 그래픽디자인
	도자기	도자기공예과	소묘, 도자기도안, 도자기제도실습

계 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
공업계	요 업	요업과	요업설계제도, 원료분석 및 요업실습, 요업계측
	전 자 계 산 기	전자과, 전자계산기과	디지털기기실습, 전자계산기조직 및 구조, 프로그래밍실습
	제어계측	제어계측과	공업계측제어실습, 계장공사, 공업계측제도
	열 처 리	기계과, 금속과	철강열처리실습, 금속재료시험
	환경공업	환경공업과, 환경보전과	환경학개론,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상업계 (6개)	속 기	속기과	속기(국문, 영문)
	부 기	경영과, 세무회계과	전표기입실무, 원장결산, 기장실무
	상업계산	세무회계과, 경영과	전표계산실무, 상업계산, 주산실습
	타 자	비서학과, 행정과, 비서행정과	국문타자, 영문타자, 사무관리
	위 드 프로세서	비서과, 행정과, 비서행정과, 사무자동화과, 전자계산과	전자계산일반, 사무관리, 워드프로세서
	전자계산	전자계산과, 전산정보처리과	전자계산일반, 프로그래밍실습, 정보처리실습
수 산 해운계 (4개)	항 해	항해과	지문항행실습, 선박운용실습, 적화법실습
	수산양식	양식과	해양학실습, 수산생물실습, 양식실습
	기 관	기관과	선박기관 및 보조기계실습, 기본설계공작실습
	어 업	어업과	어업일반실습, 수산경영실습, 항해 및 선박조정실습, 해양실습

계 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
가사· 실업계 (6개)	보 육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개론, 아동음악지도, 아동발달
	조 리	조리과	식품학, 조리원리, 조리실습
	한 재	의상과, 의류과	한재재단, 봉제기법
	양 재	의상과, 의류과	양재재단, 봉제기법
	수 예	의상과, 자수과	복식자수, 복식공예
	실 내 디 자 인	실내장식과, 실내디자인과	주택설계, 실내디자인, 가구구성
예능계 (4개)	사 진	사진과	촬영실기, 암실작업 및 현상처리, 사진 편집
	미 술	미술과, 응용미술과, 회화과, 조소과, 생활미술과, 동양화과, 공예과, 산업공예학과	소묘, 조형실기(평면, 입체)
	디 자 인	상업디자인과, 공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산업미술과, 생활미술과, 응용미술과, 장식미술과, 실내장식과	소묘, 디자인실기(그래픽, 공업디자인)
	음 악	음악과, 성악과, 기악과, 작곡과, 국악과, 종교음악과, 관현악과, 교회음악과	시창, 청음, 전공실기(성악, 기악)
체육계 (2개)	체 육	체육과, 무도과, 무용과, 체육행정과	전공실기(육상, 체조, 수영, 구기, 무용 등 전공분야별)
	교 련	체육과, 간호학과	교련실습(남 : 군사학, 여 : 간호학)
기타계 (4개)	이 용	이용과	이용실기
	미 용	미용과	미용실기
	사 서	도서관과	도서분류실습, 도서목록실습
	치료교육	물리치료과	치료교육실기

※ 실기교사 표시과목 해당 국가기술 자격종목(예시)

☞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시에는 관련 국가기술 자격종목의 변동 여부를 법제처 홈페이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하여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2007.7.16)

[별표 5]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제4조 관련)

계열별	표시 과목	국가기술자격종목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농업계	축산	축산, 식물보호	축산, 식물보호	축산, 식육처리
	시설원예	시설원예	종자, 시설원예	원예,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임업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 임업종묘,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조경	조경	조경	조경
	농업기계	농업기계	농업기계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농업토목	토목	토목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식품가공	식품	식품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공업계	기계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설비보전, 철도차량, 용접, 궤도장비정비, 농업기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배관설비, 전자부품장착(SMT),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객화차정비, 철도운송, 궤도장비정비, 용접, 판금제관, 농업기계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준설선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공유압, 배관, 설비보전, 전자부품장착(SMT),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철도운송, 쇄석기운전, 타워크레인운전, 궤도장비정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판금,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계열별	표시 과목	국가기술훈격종목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공업계	자동차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보수도장
	항공	항공	항공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기체정비
	철도 운전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조선	조선	조선	선체건조, 조선제도, 전산응용, 동력기계정비
	주조	주조	주조	주조, 원형
	용접	용접	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금속(재료분야), 금속(가공분야), 금속(제련분야)	금속재료, 표면처리,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주조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주조, 원형, 제강(전로), 제강(전기로), 제강(연속주조)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철도, 전기
	건축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공예		귀금속가공	목공예, 도자기공예, 석공예, 귀금속가공, 보석가공, 보석감정, 가구제작, 패세공, 칠기, 조화공예, 금속도장, 광고도장, 자수(수자수), 자수(기계자수)

계열별	표시 과목	국가기술자격종목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공업계	토목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통신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자원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시추, 광산차량기계운전, 광산환경, 화약취급, 광산보안(채광), 광산보안(기계), 광산보안(전기), 광산보안(화약)
	화공	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화공, 위험물	화학분석, 위험물(제1류), 위험물(제2류), 위험물(제3류), 위험물(제4류), 위험물(제5류), 위험물(제6류)
	섬유	의류,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섬유물리, 섬유화학, 양복, 한복	염색(침염), 염색(날염), 한복, 양복(양복패턴), 양복(양복봉제), 양장(양장패턴), 양장(양장봉제)
	절삭가공	메카트로닉스,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생산기계,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시계수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
	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의공(醫工)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의공(醫工)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의료전자
	인쇄	인쇄	인쇄	평판인쇄, 스크린인쇄, 전자출판, 전자조판, 사진제판
	도자기		도자기공예	도자기공예, 석공예, 목공예
	요업	세라믹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플라스틱성형 가공

계열별	표시 과목	국가기술자격종목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공업계	전자 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 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사 무자동화	정보처리
	제어계측	공업계측제어, 전자	공업계측제어, 전자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열처리	금속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환경공업	대기환경, 수질환 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자연생태복 원, 토양환경, 생물 분류(동물), 생물분 류(식물)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 음진동, 폐기물처리, 자 연생태복원	환경
수산 해운계	항해	해양환경, 해양자원 개발, 해양공학, 해 양생산관리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산양식, 어병, 어 로, 수산제조, 항로 표시	수산양식, 수산제조, 어 로, 잠수, 항로표시	수산양식, 어로, 잠수, 항로표시
	기관	조선	조선	선박기관정비, 전산응용조선제 도, 선체건조, 선체의장, 동력기 계정비
	어업	어로	어로	어로
상업계	속기	한글속기, 영문속기(각각 2급이상)		
	부기	전산회계사(2급이상)		
	상업계산	컴퓨터활용능력(2급이상),		
	타자	워드프로세서(2급이상)		
	워드 프로세서	워드프로세서(2급이상)		
	전자계산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2급이상)		
기사 실업계	양재	의류(기사), 패션디자인, 양복(산업기사), 양복, 양장(기능사)		
	한재	의류(기사), 한복(산업기사), 한복(기능사)		
	수예	자수(산업기사), 자수(산업기사)		
	조리	조리(기능장),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기능사)		
	실내 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산업기사이상),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제품 응용모델링웹디자인(기능사이상)		

## 5. [예시] 연계전공 교육과정

### [공통과학 연계전공 교육과정](예시)

#### 가. 운영 개요

공통과학 연계전공은 표시과목 관련학과 교직과정 이수자를 위하여 '공통과학'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과정이며 교직복수전공 과정으로만 운영한다.

#### 나. 교육목표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분야별 과학 교과목을 균형있게 이수하도록 하여 '공통과학' 표시과목의 교사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다. 복수전공 및 부전공과정 이수요건

##### (1) 이수대상

공통과학 연계전공 과정은 교직과정 표시과목 중 물리, 화학, 생물 교직과정 이수자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지구과학 전공에는 교직과정 개설 안됨)

##### (2) 이수요건

##### 가. 전공필수

지정된 5개의 분야별로 각각 1과목 3학점 이상, 총 15학점 이수

##### 나. 전공선택

지정된 4개의 분야별로 각각 2과목 6학점 이상, 총 27학점 이상 이수

다. 전공기초 :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

#### 라. 학위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가 제2전공으로 공통과학 연계전공과정을 이수할 경우 복수전공과정 이수로 인정하며 학위증에 연계전공명(공통과학)을 기재한다.

#### 마. 연계전공 과목 이수

##### (1) 교과교육영역 과목의 이수

공통과학 연계전공을 복수전공하는 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제1전공의 교과교육영역 교직과목 이수외 별도로 공통과학 연계전공에서 전공필수로 지정한 '공통과학교육론' 및 '공통과학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과목별 개설학과(전공) 등**

- 전공분야 과목은 각각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지구과학과에 분산하여 개설 하되 교직과목으로 인정가능한 과목인 ‘공통과학교육론’ 및 ‘공통과학 교재연구 및 지도법’은 주관전공인 물리전공에 개설한다.
- 공통과학 연계전공과정의 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통과학 주관 전공(물리전공)에서 개설강좌의 강의시간 및 학기를 조절할 수 있다.

**(3) 전공학점의 중복인정**

공통과학 관련 전공과정(전공필수, 전공선택)에서 이수한 학점 중 아래의 과목은 공통과학 연계전공 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중복인정 받을 수 있다.

**(가) 물리 표시과목 교직과정이수자의 중복인정 가능 과목**

번호	학수번호	과 목 명	학점
1	AG312	광학1	3
2	AG301	양자역학1	3
3	AG202	역학1	3
4	AG306	열물리학1	3
5	AG206	전자기학1	3

**(나) 화학 표시과목 교직과정이수자의 중복인정 가능 과목**

번호	학수번호	과 목 명	학점
1	AH203	유기화학1	3
2	AH208	분석화학1	3
3	AH207	물리화학1	3
4	AH310	무기화학2	3
5	AH218	분석화학실험	2

**(다) 생물 표시과목 교직과정이수자의 중복인정 가능 과목**

번호	학수번호	과 목 명	학점
1	AI227	미생물학및실험	3
2	AI221	분류학	3
3	AI322	생리학및실험	3
4	AI321	생태학및실험	3
5	AI331	유전학및실험	3

▶ **공통과학 연계전공 교육과정표** ◀

이수 구분	학수 번호	영역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간		개설학과 (전공)
					이론	실습	
전필	ZC801	공통(교직)	공통과학교육론	3	3		물리학전공
전필	ZC802	공통(교직)	공통과학 교재연구 및 지도법	3	3		물리학전공
전필	ZC809	물리	일반물리학및실험1	3	2	1	물리학전공
전필	ZC813	화학	일반화학및실험1	3	2	1	화학전공
전필	ZC816	생물	일반생물학및실험1	3	2	1	생물학전공
전필	EI491	지구과학	고급지구과학 I	3	3		지구과학전공
전선	AG312	물리	광학1	3	3		물리학전공
전선	AG301	물리	양자역학1	3	3		물리학전공
전선	AG202	물리	역학1	3	3		물리학전공
전선	AG306	물리	열물리학1	3	3		물리학전공
전선	AG206	물리	전자기학1	3	3		물리학전공
전선	AH310	화학	무기화학2	3	3		화학전공
전선	AH206	화학	무기화학실험	2		2	화학전공
전선	AH207	화학	물리화학1	3	3		화학전공
전선	AH215	화학	물리화학실험	2		2	화학전공
전선	AH208	화학	분석화학1	3	3		화학전공
전선	AH218	화학	분석화학실험	2		2	화학전공
전선	AH203	화학	유기화학1	3	3		화학전공
전선	AH216	화학	유기화학실험1	2		2	화학전공
전선	AI227	생물	미생물학및실험	3	2	1	생물학전공
전선	AI221	생물	분류학	3	3		생물학전공
전선	AI322	생물	생리학및실험	3	2	1	생물학전공
전선	AI321	생물	생태학및실험	3	2	1	생물학전공
전선	AI331	생물	유전학및실험	3	2	1	생물학전공
전선	EI053	지구과학	일반천문학	3	3		지구과학전공
전선	EI492	지구과학	지구물리	3	3		지구과학전공
전선	EI493	지구과학	대기과학	3	3		지구과학전공

※ 진한 글씨는 기본이수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이며, 공통과학교육론, 공통과학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은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었으나 교직과목(교과교육영역)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이 경우 교과교육영역 6학점 외에 전공 42학점(기본이수과목 포함) 이상, 총48학점 이상 이수해야 공통과학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참고자료]

## ▣ 2009학년도 교원자격검정 관련 주요 변경사항

※ 참고자료의 내용 중 일부는 현 재학생에게도 적용되므로 편람의 본문을 업무 지침으로 참고하여야 함

### 1. 관련법령 개정 및 고시 신설

-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0797호, 2008.06.05)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03.04)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2009.9.23,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19호, 2008.8.1, 구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161호, 2008.1.8) \*고시제2009-27, 2009.7.13 개정-재검토기한 추가

### 2. 관련법령 및 고시 주요내용

####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령

- 교사자격종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격기준의 근거
- 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의 설치
- 시·도교육청의 교육실습 담당부서 지정
- 교원양성기관과 시·도교육청의 교류활성화 관련 등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령

- 교사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영역별 이수기준
-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격기준의 예시
- 자격종별 기본이수영역의 기준 등

#### □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19호(구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161호) 신설안

- 전공과목의 세부이수기준 및 운영방법
- 교직과목의 세부이수기준 및 과목 예시
-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고시
-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의 영문 표기
-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법
- 기타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업무 수행 방법 관련

### 3. 개정된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관련 사항

#### □ 주전공(복수·연계전공 포함)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기준

- 전공과목의 이수기준
  -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 \* 단,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 유치원, 중등·특수학교(중등)은 전공과목 내에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단,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6학점(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 14학점(5과목) 이상 → 21학점(7과목) 이상
    - \* 단, 특수학교의 경우 특수학교(공통)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각각 21학점 이상(총 42학점 이상) 이수
    - \* 단,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14학점(5과목) 이상
- 교직과목의 이수기준
  - 교직과목 이수기준 확대 : 20학점 → 22학점
  - 교직이론과목(14학점)
  - 교육소양과목(4학점) : 교직실무, 특수아동의 이해(영재교육 포함)
  - 교육실습(4학점) : 교육봉사활동(보조교사·방과후학교 교사 등) 2학점 이상 포함 가능
- 성적기준 : 졸업평균성적 75점 이상
  - 모든 2급 교사자격 취득 대상자(교대·사대·교육대학원 포함)
  - 교사자격을 취득하는 당해 대학의 성적표에 기재된 졸업성적만 적용
- 중복학점의 인정 및 면제
  - 전공과목 : 최대 15학점 이내로 인정 가능
  - 교직과목 : 복수전공의 경우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구분 없이 교직과목 면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가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서 추가로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 면제 가능

#### ♣ 적용 시기

- \* 2009학년도 이후 대학 및 교육대학원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적용
- \* 단,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거 위 사항 중 일부는 현 재학생에게도 적용

#### □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기준

-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대학 학부과정에서의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취득제도 폐지
- 현직교원의 부전공 연수를 통한 검정기준 : 전공과목 38학점(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통한 부전공 자격 취득기준 : 전공과목 30학점(교과교육영역 6학점, 2과목 이상 포함)

□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설치(대학 및 시·도교육청)

- 설치 대상 :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16개 시·도교육청 및 모든 대학(2년제 대학 포함)
- 설치 규모 : 시·도교육청 및 대학 전체(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총괄)에 1개의 위원회 설치
- 설치 및 운영 시기 : 2008년 2월 29일까지 설치 완료 및 2008년 3월부터 운영
- 위원 수 : 9인 내외의 교원양성에 관한 전문가(외부위원 1인 이상 반드시 포함)
  - \* 위원장 : 시·도교육청은 부교육감, 대학은 교무(또는 교직업무) 담당부서의 장
- 직능 : 교육과정의 개발·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실시,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결정 등
  - \* 현행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교원양성위원회'로 개칭 및 변경
- 조직 및 주요기능 등은 붙임의 법령 참조(「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2)

□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편(대학 및 시·도교육청)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 : 2008학년 중에 편성 완료
-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의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세부이수기준 참조
- 교직소양과목 운영계획 수립(대학) : '교직실무', '특수아동의 이해'의 교재 또는 교수요목의 마련, 주관학과, 운영방법, 담당교수 확보 등
- 대학은 교육실습 계획 수립 : 현장교육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세부계획 수립,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준 및 이수방법 등
- 시·도교육청은 의무적으로 교육실습 담당부서 지정 및 운영
- 대학 및 교육실습 협력학교와의 교류활성화 방안 수립 및 운영

[참고자료2]

▣ 2009학년도 교원자격검정 관련 주요 공문

우리의 작은관심, 국가안보의 시작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고시 개정 재통보 등

1. 관련 : 교직발전기획과-2280(2009.07.15)

2. 위호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고시를 통보하였으나, 교원양성기관별 교육과정편성·운영에 편차가 있어 ‘고시 적용시 기본 원칙’을 안내하오니 차질없이 적용·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고시 적용 시 기본원칙

가. 교직과목 적용 시

- 교직과목의 과목명은 고시에 제시된 9개 교과목명으로 개설(필수)하고,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은 9개 교과 외에 추가로 개설할 경우만 적용

- 부득이한 경우, 총장결재를 득하여 과목명 변경 가능하나 교과내용이 상이한 경우 불허

- 교육실습 면제자의 경우도 소지한 자격과 다른 새로운 자격을 취득할 경우 교육실습을 실시하도록 권고함(향후 고시 개정 예정임)

- 교육봉사활동의 경우 ‘2학점 이내’ 이수이나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학점으로 개설

나. 전공과목(교과교육영역 등) 적용 시

- ‘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전공과목의 교과교육영역 8학점에는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교육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개설하여야 하며, ‘기타 교과교육 영역’은 3개 교과 외에 추가로 개설할 경우만 해당함

- 유치원 정교사(2급)의 경우 논리 및 논술은 선택사항임

- 실기교사의 경우도 전공 50학점을 이수하여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므로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운영하여야 함(50학점 미달시 실기교사 폐지됨)

다. 전공과목의 기본이수과목 적용 시  
- 기본이수과목은 임용고사 출제과목이므로 가급적 모든 과목을 동일 과목명으로 개설하여 학생의 혼란 방지

라. 행정사항  
-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제시한 무시험검정 기준은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기준이므로 대학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운영(평가 반영 예정)  
-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결정  
- 교원자격관련 민원은 대학자격담당자가 업무를 숙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라며, 자체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학과담당자에 대한 주기적인 연수 실시

4. 교사자격증 취득 시 국사과목 필수이수에 관한 의견 조희  
- ‘국무총리실 현안조정회의’에서 ‘국사’를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이수하게 하는 방안을 권고해옴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의견을 자유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8.28(금) 까지 FAX(02-2100-647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1부.  
끝.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수신자 고등교육기관전체(ALL)

---

교육연구사

교직발전기획과 전결 08/27  
장

협 조  
자

시행 교직발전기획과-3861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 [www.mest.go.kr](http://www.mest.go.kr)

전화 02-2100-6479 전송 02-2100-6485 / [cbr5040@mest.go.kr](mailto:cbr5040@mest.go.kr) / 대국민공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교육과학기술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4년제 대학 교원양성기관 운영 관련 행정 사항 통보

1. 관련 : 교직발전기획과-5167(2009.09.23)

2. 위호와 관련하여 ‘10년도 4년제 대학 교원양성기관 정원조정 결과 통보 시 첨부한 행정사항을 정원조정 미신청교에도 송부하오니 교원양성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대학내 부서별 업무협조가 미흡하여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혼선을 초래하므로 교직담당 부서는 대학내 모든 관련 부서(학과)에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4년제 대학 교원양성과정 운영관련 행정사항 1부. 끝.

본 문서는 교원양성기관을 운영중인 대학에만 한합니다.  
기 통보를 받은 대학이나 관련이 없는 대학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수신자 공립대학교(2), 국립교육대(4), 국립대학교(5), 국립산업대(6), 기술대학설치법인, 기술대학설치법인, 사립기술교육대(10), 문화부소속학교, 사립대학교(11), 사립산업대(12)

교육연구사

교직발전기획과 전결 09/25  
장

협 조  
자

시행 교직발전기획과-5493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 [www.mest.go.kr](http://www.mest.go.kr)

전화 02-2100-6479 전송 02-2100-6485 / [cbr5040@mest.go.kr](mailto:cbr5040@mest.go.kr) / 대국민공개

[붙임]

## 4년제 대학 교원양성과정 운영 관련 행정 사항

### 1. 사범대학

- 사범계학과가 신설된 대학은 전임교원 확보계획에 따라 전임교원을 충원하되, 충원 즉시 그 결과를 우리 부(교직발전기획과)에 제출할 것
    - '08년도 이전에 전임교원 확보를 전제로 신규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에서는 충원계획에 따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임교원 미확보시 정원감축 및 학과폐지 대상임
  - 사범계학과 정원 운영 규정 관련 보완 사항
    - 입학정원의 10% 운영과 관련하여 '학번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휴학 등이 없이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경우의 학번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학년'과 동일한 의미임
- 예시) '02학번 학생이 3학년에 편입을 하고자 할 경우, 편입하고자 하는 학년에 결원이 있을 경우만 편입 가능

### 2. 교육대학원

- 신설된 전공 중 영양교육, 미용교육, 연극영화전공을 제외하고, 교사자격증과 관련 있는 모든 전공은 현직교원을 입학조건으로 함
- 교사자격증과 관련이 없는 전공의 경우 현직교원이 아닌 경우에도 입학이 가능함
- 전문상담교사(1급) 석사학위 연계과정의 경우 교육경력 3년 이상의 비현직교원도 입학이 가능함
- 전문상담교사(1급) 비학위과정은 '09년까지만 운영하며, 향후 운영이 필요할 경우 3주기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육대학원에만 개설 예정임

### 3. 교직과정

- 교직과정 이수인원이 입학정원 대비 10%를 초과하는 모든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인원은 붙임자료의 재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입학정원의 10%(소수점 이하 반올림)로 함

-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선발인원 관련규정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지속적으로 안내해온 사항으로 2008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이 증원되었을 경우 반드시 증원에 대한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하나, 정원증원에 대한 승인을 득하지 않고 운영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음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인원’ 관련 규정**

-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인원은 교직과정 설치승인 당시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입학정원이 증가되더라도 변경승인이 없으면 승인시의 입학정원에 대한 선발인원을 적용하여야 하고, 입학정원이 감소되면 감소된 입학정원에 대한 선발비율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되 반드시 감원 보고 및 재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교양 81830-574, '94. 12.15, 교양 81830-141, '95.2.23)  
- 2007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발췌 -

- 2009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인원 재승인 결과는, 신청시 대학에서 제출한 ‘2008학년도 현행이수 인원’이 교과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전제로 재승인한 것이므로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원상복구 및 행정조치 예정임
- 교직과정 운영실태 점검 예고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인원, 입학정원 증감에 따른 재승인 여부
  - 증빙서류 미비 시 미승인으로 간주(근거서류 사전 준비)
  - 운영 현황점검 예정일 : '09. 10월 중 별도 통보

만든 사람들

김관복 학교지원국장

김문희 교원정책과장

이한우 교원정책과 교육연구사

201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발행일 2011년 3월

발행처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전화 : 02)2100-6488

팩스 : 02)2100-6485

인쇄처 (주)

전화 :